

2017

신흥시장 클로즈업

카자흐스탄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기회



Kazakhstan

2017

신흥시장 클로즈업

카자흐스탄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기회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기회

CONTENTS

Kazakhstan





요약

6

Part I 국가일반 현황

- 1. 국가개황 20
- 2. 경제 및 무역 23
- 3. 농업 27
- 4. 물류 29

Part II 농식품 시장 동향

- 1. 생산동향 36
- 2. 유통동향 40
- 3. 소비동향 54
- 4. 수출입 동향 58
- 5. 식품정책 동향 66
- 6. 한국식품 동향 68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 1. 수입통관 78
- 2. 식품 검사 89
- 3. 라벨링 94
- 4. 진입장벽 99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 1. 식품관련 인증제도 102
- 2.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107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규정

- 1. 상표권 및 특허권 개요 114
- 2. 상표권 및 특허권 출원 방법 118
- 3. 분쟁사례 126

부록

128

| 요약 |



□ 국가일반현황

- (국가 개황)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하며, 인구는 1,775만 명, 272만km²의 면적
 - 2개의 특별시와 14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스타나와 알마티가 특별시
 - 카자흐인(67%), 러시아인(21%), 우즈베크인(3%) 등 약 120여개의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카자흐어와 러시아어가 주요 언어이고, 2016년 GDP는 1,280억 달러로 1인당 GDP는 7,151달러임

- (경제 및 무역) 국제 유가 하락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양의 러시아 제재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며, 현지화(팅계화)의 평가절하로 환율변동과 물가 급상승을 초래
- * 2016 경제성장률 1.0%, 물가상승률 5.5%, 환율 증감률 53.77%
 - 2015년 무역수지는 153억 달러로 흑자이며, 주요 무역대상국은 중국과 러시아 및 EEU*국가
 - * EEU는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서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 가입국이며 무관세 혜택, 러시아어권, 동일 인증 제도 등의 이유로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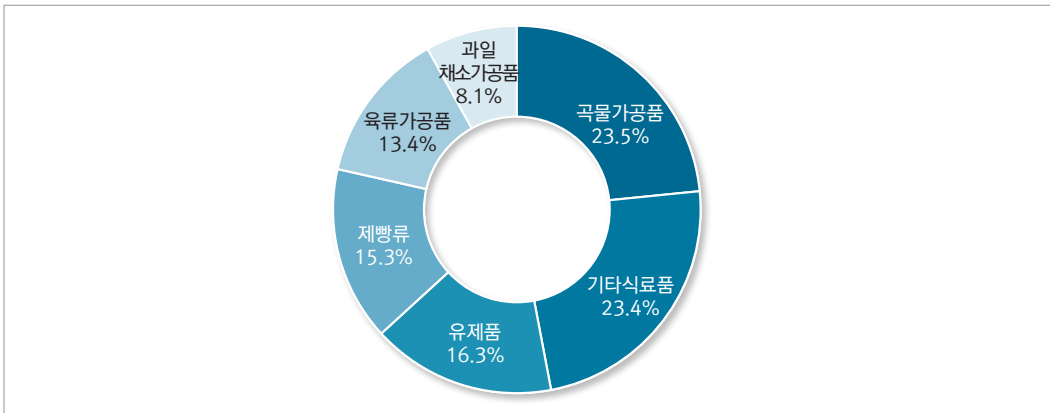
- (농업) 농업이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1%이며, 전체인구의 35%가 농업에 종사
 - 전체 곡물 생산량 중 밀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음
 - 낮은 농업 생산성*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다양한 농업정책 및 보조금 지급
 - * 주요 식재료(육류, 우유, 유지작물, 곡물, 양모용, 가금류, 원예, 설탕)의 자급률, 생산성, 수출증진을 목표

- (물류) 지정항상 해상 운송경로가 없어, 복합 내륙운송 루트를 이용하여 물류비용 부담이 과중
 -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화물 주요 노선 대부분은 해운으로 출발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TCR, TSR* 노선을 주로 이용
 - * TCR은 중국, TSR은 시베리아를 통하여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철도노선
 - 목적지에 따라 TCR노선을 선택가능하며 알라산코는 아스타나 외 북부지역, 새로 개설된 호르고스는 알마티 외 남부지역이 목적지일 때 유리한 노선임
 - 운임 비용은 TCR 이용 시 20피트 기준으로 2,850~3,200달러, 21~28일이 소요되며 TSR 이용 시 20피트 기준으로 3,920~4,100달러, 29~35일이 소요됨
 -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新실크로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은 육상 실크로드 물류의 중심국으로 성장가능

□ 농식품 시장 동향

- (생산동향) 신선농산물은 곡물과 축산물, 가공식품은 곡물가공품, 유제품 관련 가공식품 생산비중이 높음
 - 2014년 기준 신선농산물 중 곡물류는 1,710만 톤, 축산물 589만 톤, 채소류 539만 톤이 생산 됨
 - 가공기술 부족으로 인해 농산물 가공산업은 미약한 편으로서 국가에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가공식품 생산량 비중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 (www.stat.gov.kz)

- (유통동향) 유통시장은 경기악화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1년 대비 약 2배 성장
 - 주요 유통채널은 재래시장, 대형유통업체* 및 온라인시장으로 구분되며 소비자의 약 40%가 재래시장을 이용
 - * 대표적인 대형유통업체는 매그넘(Magnum), 램스토어(Ramstore), 까르푸(Carrefour) 등이 있음
 - 글로벌 유통성장지수 4위로서 유통시장의 잠재력이 높으며 전체 유통시장 중 식품 유통시장의 비중은 2016년 기준 62.8%
 - 전문공급업체를 통해 수입통관을 거쳐 판매채널로 공급하는 식품유통구조로서 외국계 대형유통매장의 진출로 유통채널의 증가와, 최근 단독 유통매장보다는 대형쇼핑몰 내 입점하여 복합 유통채널로 다변화 양상을 띠
 - * 편의점, one price shop(할인점)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 증가
 - 한국에 비해 PB상품 시장규모와 인식은 저조하지만 확대되는 추세
 - * 정부의 전통시장 현대화 정책에 따라 재래시장이 현대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

- 온라인 시장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최근 5년 동안 4.8배의 성장률을 보이며 오프라인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지만 현재까지 오프라인 시장의 선호도가 더 높은 상황

* 해외 온라인 쇼핑몰 : AliExpress(중국), eBay(미국), Amazon(미국) 등 / 현지 온라인 식품 쇼핑몰 : SATU, Anuha-Aipo, Fine-food, Arbuз 등

» 현지·수입 신선농산물

구 분	판매 정보	구 분	판매 정보
	판매처 : 매그넘(Magnum) 제품명 : Braiborn Apple 원산지 : kazakhstan 가격 : 339KZT/1kg		판매처 : 매그넘(Magnum) 제품명 : Golden Apple 원산지 : Poland 가격 : 355KZT/1kg
	판매처 : 갈마트(Galmart) 제품명 : Honey Pear 원산지 : Kazakhstan 가격 : 1055KZT/1kg		판매처 : 매그넘(Magnum) 제품명 : Saltanat Apple 원산지 : China 가격 : 419KZT/1kg

* 환율 정보(2016) 1팅게(KZT) : 3.39원

» 현지·수입 가공식품

구 분	판매 정보	구 분	판매 정보
	판매처 : 메트로(Metro) 제품명 : Chim Chim Priprava (잡채소스) 원산지 : Kazakhstan 가격 : 279KZT/60ml (부가세 별도)		판매처 : 까르프(Carrefour) 제품명 : 매기소스 원산지 : Germany 가격 : 121KZT/250ml (부가세 12%별도)
	판매처 : 메트로(Metro) 제품명 : Koreiskaya Priprava (잡채소스) 원산지 : Kazakhstan 가격 : 229KZT/80ml (부가세 별도)		판매처 : 까르프(Carrefour) 제품명 : 기꼬망(간장) 원산지 : Japan 가격 : 2450KZT/296ml (부가세 12%별도)

* 환율 정보(2016) 1팅게(KZT) : 3.39원

o (소비동향) 육식과 저장음식을 선호하며 유제품 섭취가 생활화된 식습관

* 유제품은 전체 식료품 매장에 약 17%차지

- 다민족국가로 인해 다양한 식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세계의 각국의 음식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격경쟁력이 소비결정에 주요요소이며 최근 건강식품보다 생활 필수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 2016년 식료품의 가격이 9.7%나 상승한 반면 실질소득은 2015년 대비 4.5% 감소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카자흐스탄 할랄 기준이 불분명해 할랄인증마크가 있어도 가공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가공육류 제품의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 보임
 - * 할랄식품의 경우 30%를 차지하는데, 국민의 70%가 무슬림인 것을 감안해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며, 비 무슬림의 경우 할랄 식품의 선입견은 없는 편
- (수출입 동향) 2016년 카자흐스탄의 농식품 수출은 약 20억 달러, 수입은 약 29억 달러로 약 12억 달러의 적자 상태임
- 주요 수출 농식품은 곡물, 곡물의 분과 조분말가루 전분, 채유용 종자, 인삼, 담배를 수출함
 - 주요 수입 농식품은 과일, 견과류, 당류 설탕과자, 곡물, 곡분의 조제품과 빵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은 수입함
 - 한국의 對 카자흐스탄 식품 수출 품목은 필터담배가 1,128만 달러로 비중이 가장크며 커피 프리머, 조제품 기타, 라면, 추잉껌 등 가공식품의 비중이 절대적임

» 한국 對 카자흐스탄 농식품 수출 품목

단위: USD

순위	HS코드	품목	2015	2016	연간전년대비금액 (%)
농식품 합계 *			49,029,966	34,138,593	△30
1	2402.20.1000	필터담배	14,804,003	11,286,924	△24
2	2106.90.9010	커피 프리머	5,999,861	4,145,397	△31
3	2106.90.9099	조제품 기타	2,021,574	2,547,971	26
4	1902.30.1010	라면	2,418,041	1,690,025	△30
5	1704.10.0000	추잉껌	392,841	746,427	90

* 주: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만 해당

출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I, www.kati.net)

- (식품정책 동향) 식품 가공업 및 유통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식품 수출액을 거의 절반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GMO식품 등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식품에 관한 GMO 규제와 유기농 인증제도 등 각종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국가DB에 등록된 GMO식품만 수출입이 허용이 됨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예를 들어 수입하는 모든 GE곡물과 유지는 수입하기 전 사전등록이 되어야하고,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0.9% 초과일 경우 GMO표기

-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증을 도입하였으며,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농 식품 생산시 요구사항을 제정

- (한국식품 동향) 한국식품의 판매비중이 높은 편으로 라면, 과자, 음료, 소스류 등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음
 - 물류비용 등의 요소로 가격이 높아 중상류층 이상 고소득층이 한국식품의 주 소비층이며 한인 마켓의 고객의 80%는 현지인이고, 20%가 한국 교민임
 - 수입업체가 주관하는 대형유통업체내 시식 판촉행사가 주로 이루어짐
 - 신선식품의 경우 유통기한과 물류비용의 이유로 한국산 신선식품은 판매되지 않으며, 가공식품 위주로 판매
 - 신선식품 중 검역 협상이 타결된 품목은 사과, 배, 감자 및 양배추 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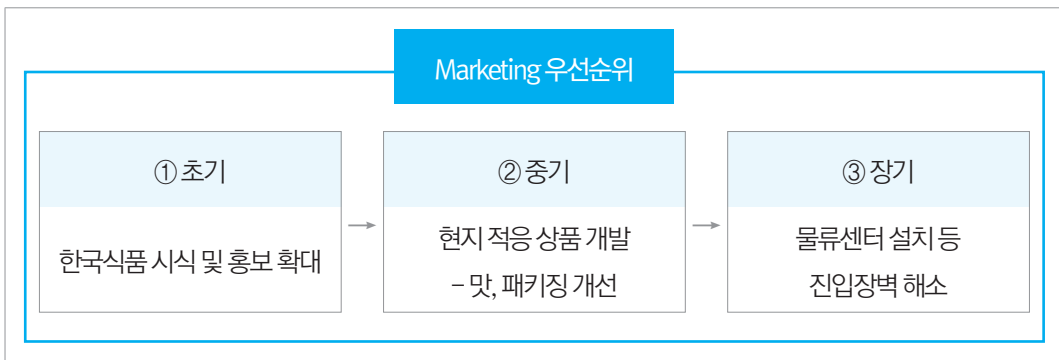
» 한국식품과 경쟁상품 비교

구분	판매 정보	구분	판매 정보
	판매처: 매그넘(Magnum) 제품명: ○라면(컵) 원산지: Korea 가격: 329KZT/65g		판매처: 매그넘(Magnum) 제품명: Roltan Noodle 원산지: Russia 가격: 153KZT/65g
	판매처: 까르프(Carrefour) 제품명: ○○○프림 원산지: Korea 가격: 675KZT/500g (부가세12%별도)		판매처: 까르프(Carrefour) 제품명: ○○○프림 원산지: Korea 가격: 751KZT/500g (부가세12%별도)
	판매처: 까르프(Carrefour) 제품명: ○○○음료 원산지: Korea 가격: 339KZT/200ml (부가세12%별도)		판매처: 까르프(Carrefour) 제품명: Gerber 원산지: Kazakhstan 가격: 215KZT/90ml (부가세12%별도)

- (SWOT) SWOT분석을 통한 최적전략
 - (WT 전략) 현지인의 수요에 맞는 패키징 등 포장 개선을 지원하고,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공동물류 센터 운영

- (ST 전략)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현지화 상품을 개발하고 중상류층 고객 대상으로 고급프리미엄 마켓 판매처를 확대
 - (SO 전략) 한국식품의 판촉전 개최 등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한국식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판로개척
 - (WO 전략) 한·EEU FTA체결 및 EEU통관조약 신규체결을 통한 무역환경을 개선하고 신선 검역 품목협상을 확대 필요
- (판매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 소비자 대상 단계별 마케팅 방안은 진출초기에는 한국식품 시식 및 홍보 확대하고, 중기에는 현지 적응 상품 개발, 장기에는 물류비용 감소 방안을 모색하는 공략을 통한 한국식품 판매 확대 전략 필요
- (초기 단계) 시식 홍보 행사 개최 확대를 통해 한국식품의 맛을 알리며, 아스타나EXPO를 활용하여 한국식품의 판촉홍보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하는 방안이 있음
 - (중기 단계) 현지인 입맛에 맞는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현지 실정에 맞는 패키징 개발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 (장기 단계) 공동물류센터 설치, 벌크 수입 후 현지 내 재포장을 위한 가공장 설치등으로 물류비 절감 방안 마련해야 함

» 판매확대를 위한 제언



□ 수입 통관 제도 및 식품 위생 제도

- (수입통관) 수입 통관 절차는 수출 전 절차, 선적/운송/환적, 수입 식품 신고, 통관 절차, 물품 반출, 총 5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HS코드에 따른 관세율 확인하고 제출할 서류*준비

* 제출서류: 위생증명서, 수의학 허가서, 생산 공장으로부터의 인체에 해가 없다는 증빙 서류 등

- 중국 또는 러시아 경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및 러시아 국경에서 환적통관이 이루어지며 나라 경유시마다 T/S면장, 검역, 환적이 필요. 또한 B/L건당 통관비가 증가

-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 및 차량은 검사가 필수적. 또한 통관 업무는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 중개사가 수입 제품과 차량의 통관을 대리

○ (식품 검사) 품목에 따라 식물검역, 동물검역, 위생검사로 나뉘어 검사를 시행

- (식물 검역) 농업부 산하 농업 검역 위원회에서 카자흐스탄 내의 식물위생 현황을 감독하고 식물 건강 상태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집행하며, 카자흐스탄은 수출국의 수출식물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며 수입된 식품은 카자흐스탄의 식물위생검역소, 또는 차량국경요차점에서 검역을 시행*

* 식물위생검역소에서 수입되거나 수송된 식품을 식물 검역 후 원격 감시하며, 두 번째는 식품이 목적지에 도착되면 수출국에 식물 위생 특성에 따라 필요 시 검사, 샘플링, 실험실 테스트를 진행

- (동물 검역) 수입쿼터제를 적용받는 육류 및 가금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들이 수의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위생 검사) 경제부 산하 소비자 권익 보호 위원회에서 식품위생을 담당하며, 법규에 위배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

○ (라벨링) 카자흐스탄 내의 식품 라벨링 제도는 러시아, 벨라루스와 동일하게 적용(TR CU 022/2011)

- 라벨링은 카자흐어, 또는 러시아어로 필수 기재되어야 하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2개의 언어*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상기 2개 언어로 표기가 불가능한 내용은 라틴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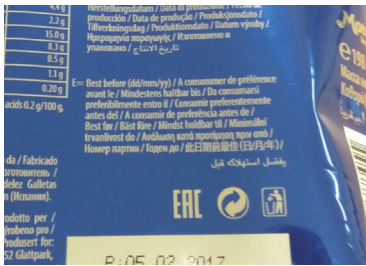
» 식품 라벨링 필수정보

① 제품명	⑦ 제조업체 정보
② 식품 성분	⑧ 권고사항/제한사항
③ 식품 용량	⑨ 영양 가치
④ 제조일자	⑩ GMO 인증
⑤ 유통기한	⑪ 인증 마크
⑥ 보관 방법	



- GMO 표기사항은 GMO 함유량이 0.9%이상인 식품에만 적용되며 명시*해야 함
- *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or "Products obtained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or "The product contains components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 (진입장벽) 통관 거부 사례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사전 대응의 어려움이 있음
 - 중국 및 러시아를 경유해야 하므로 경유국에서 컨테이너 환적 및 환적 통관절차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문제발생
 - 물류비용이 매우 비싸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함
 - 필수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인증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 통관 진행 중 서류나 물품에 이상이 없더라도 통관 기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통관 규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으므로 수시로 세관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함은 물론, 규정을 둘러싼 법적 해석과 언어의 모호성으로 인한 어려움
- (식품관련 인증제도) 필수인증으로 TR-CU인증이 있으며 EEU국가 내 공통 인증 체제임
 - TR-CU는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식의 인증이며 적합성 선언, 연방국가 등록, 위생검역으로 나눌 수 있음
 - 기존 GOST-K에서 TR-CU인증으로 변경*되었으며, 신청자, 공장심사, 소요기간 등 변경사항 인지필요
 - * 현재 34개의 TR-CU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3국의 인증 관련법이 모두 TR-CU로 개정될 예정

» TR-CU의 인증마크인 EAC인증마크와 표기 예시

인증마크	인증표기 식품
	
<p>- 공통으로 적용되는 유통마크이며 생산제품이 관세동맹의 기술규제 안전요건에 적합하다는 검증 절차를 통과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마크</p>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식품첨가물 규정) 관세동맹기술규정 TRCU 029/2012을 따르며, 본 기술규정요건과 부합하는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보조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해당 제품을 시장에 유통 불가
 - 관세동맹의 단일 관세 영역에서 유통되는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보조제에는 안정성을 확인해주는 서류와 출처를 추적 가능한 정보, 그리고 보관조건과 유통기한에 관한 정보가 첨부되어야 함
 - 판매 가능한 보충제로 산 및 산도조절제, 이스터에그를 포함한 색소, 감미료가 있음

» 허용된 식품첨가제(일부)

식품첨가물 명칭	식품첨가물 기능	사용 가능한 식품	최대 허용 수치
Amorphous silicon dioxide (E 551)	응고방지제, 운반체	초콜릿 제품 (표면처리한)을 제외한 사탕과자, 추잉껌 (E553 iii 만) 등	in accordance with technical documentation
aluminum silicate (E 559, kaolin)	응고방지제, 운반체		
potassium aluminum silicate(E 555)	응고방지제		
calcium aluminum silicate(E556)	응고방지제		
sodium aluminum silicate(E554)	응고방지제		
bentonite(E558)	응고방지제, 운반체		
calcium silicate(E552)	응고방지제, 운반체		
magnesium silicates(E553 i ,E553 ii ,E553 iii) -separate or combined	응고방지제		

- (유해물질 규정) 관세동맹기술규정 TR CU 029/2012을 따름
 - 살충제 및 농약, 혹은 동물성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원료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
 - 조류의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식수에 대한 규정을 초과하는 염소 농도가 함유된 용액의 사용 금지
 - 원료 및 식품은 보관, 운송 및 유통 시 해당 원료 및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해 포장해야 함
 - 냉동 이외의 조리된 고기, 기계로 뼈를 제거한 가금류의 고기, 조류 고기로 만든 콜라겐 원료에 대한 사용 금지

□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 (상표권 개요) 개별국 출원(IPRC),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출원(마드리드 의정서)
 - 카자흐스탄 법무부 산하의 지식재산권보호위원회(IPRC :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가 카자흐스탄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등록을 담당
 - 국내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표의 조건은 문자, 숫자, 도형, 말, 3차원 형상, 기타 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의 결합이며,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식별 가능한 것으로 함(상표법 제5조).
 - 카자흐스탄 상표권은 상표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고 10년마다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가능. 갱신 유예기간은 6개월
 - 카자흐스탄에 상표 출원 방법은 2가지로서 첫 번째는 카자흐스탄 지식재산권보호위원회(IPRC)를 통한 출원 방법(개별국 출원), 두 번째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을 통한 출원임
- (상표권 출원 방법) 카자흐스탄 개별국 출원(IPRC)
 - ① 상표 출원 전 확인
 -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문자, 소리, 입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판매하려는 상품의 상표로 출원되어 있지 않으면 출원이 가능
 - ② 신청서 접수
 - 신청서에는 출원자의 정보, 상표에 대한 명확한 표현 및 재화와 서비스 목록 등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
 - ③ 절대적 거절 이유/상대적 거절 이유 심사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에 신청서와 필요서류 간의 유효성을 확인
 - 절대적 거절 이유는 출원 상표의 식별력 여부, 상대적 거절 이유는 선출원 및 등록된 유사상표의 존재 여부에 의해 심사되며, 신청일로부터 9개월 이내 완료
 - ④ 보완 요청
 - 의견제출 통지서가 나올 경우 출원인은 3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 제출 기간은 1개월씩 총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⑤ 출원 공고
 -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상표출원은 공보에 2개월간 공고
 - ⑥ 이의신청
 - 공식적인 이의신청 제도는 없으며,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비공식적으로 심사관이 발행한 의견제출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만 가능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⑦ 등록

- 등록 결정 후 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부해야 상표가 등록됨

⑧ 심판제도

- 거절결정 불복심판, 취소심판 등 기타 취소 사유의 대한 심판제도가 있음

⑨ 양도

- 양도 대상은 출원상표 및 등록상표이며, 신청일로부터 약 5~6개월이 소요

○ (상표권 출원 방법)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

① 상표 출원 전 확인

-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출원 대상에 충족하는지 확인

② 국제사무국 출원

- 국제출원은 반드시 한국 특허청(본국관청)을 통하여 국제 사무국에 제출되어야하며, 접수일은 한국 특허청이 실제로 국제 출원서를 접수한 날이 됨

③ 국제 심사(방식심사) 및 등록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이 의정서에서 정한 형식적인 상표권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해당 국제출원을 국제 등록부에 등록

④ 지정국 관청의 심사(국내 단계)

- 지정국 관청은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제출원의 보호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WIPO 국제 사무국이 국제등록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2개월 혹은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 이유를 통지함으로써 상표 보호를 거절 가능

○ (특허권 개요) 개별국 출원(IPRC), 유라시아 특허협정(EAPO)에 의한 출원, PCT 특허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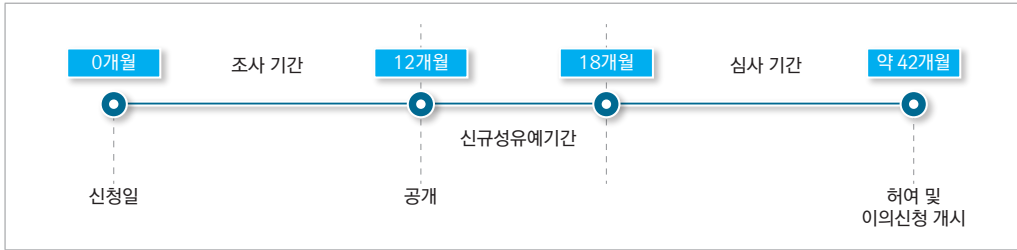
- 카자흐스탄에 특허권을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카자흐스탄 국내 특허로 출원하는 방법, 두 번째는 국제특허조약인 PCT 출원을 통한 특허 출원 후 카자흐스탄을 지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유라시아 특허조약(EAPO)*에 의한 특허출원임

* CIS 각 나라마다 효력을 미치기 위해 출원서를 9개 공화국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협약.
협정국 간에는 변리사 선임 없이 개인 출원이 가능

-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특허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발생

○ (특허권 출원 방법) 개별국 출원(IPRC)

- 직접 특허 출원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① 출원서
- ② 명세서 및 클레임 :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 번역문 제출
- ③ 필요한 도면 및 요약
- ④ 위임장 : 출원인이 서명
- ⑤ 우선권 증명서 :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 (특허권 출원 방법) 유라시아 특허협정(EAPO)에 의한 출원

- 출원 전 확인, 출원, 공개, 심사, 이의 신청, 변경 출원 등의 절차로 이루어짐
- EAPO에 의한 출원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음

- ① 신청서
- ② 명세서
- ③ 특허 청구 범위
- ④ 도면 및 발명의 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
- ⑤ 보고서
- ⑥ 출원수수료 납부증명서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특허권 출원 방법) PCT 특허 출원

- ① 수리관청인 한국 특허청을 통해 국내특허 출원 후 우선권 주장 시 12개월 이내에 한국 특허청에 PCT 출원서를 제출
- ② 출원서 작성시
 -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 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은 필요 없음
- ③ 국제조사(필수)
 - 국제조사기관 ISA는 출원 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는 국제조사를 실행. 발간된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는 출원인 및 WIPO에 배부
- ④ 국제공개
 - 국제조사 보고서와 함께 국제 출원서류가 팸플릿 형태로 국제사무국 공보에 공개
- ⑤ 국제 예비심사(옵션)
 - 국제 예비심사 기관 IPEA는 출원된 발명의 실체 심사(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실시하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출원인과 WIPO에 송부
 - 특허유무에 대한 예비적 판단을 통해 지정국내에 진입여부를 결정하므로 특허 출원의 신중을 기할 수 있음
- ⑥ 번역문 제출
 -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출원을 위해 영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카자흐스탄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
- ⑦ 지정국 등록
 - 이후 카자흐스탄을 지정국으로 등록하여 진행

◦ (분쟁사례)

- A사 라면은 러시아 공장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나 카자흐스탄 판매 딜러가 상표등록을 개인명으로 A 라면과 거의 유사하게 등록하여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3심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 A사가 승리
- A사는 갱신유예기간이 6개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연장을 방치. B업체가 이를 알고 갱신유예기간이 지난 뒤 유사상표를 등록하여 A사는 상표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됨

Part I

| 국가 일반 현황 |

01. 국가개황

02. 경제 및 무역

03. 농업

04. 물류



Kazakhstan

Part I

국가 일반 현황

01 | 국가개황



국명	카자흐스탄 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수도	아스타나(Astana)
인구	1,775만 3,184명
면적	272만km ²
기후	대륙성 기후, 평균 강우량 : 250 mm
권역구성	아스타나(Astana)·알마티(Almaty)2개의 특별시와 14개의 주
주요도시	알마티, 카라간다, 심켄트, 악퇴베, 파블로다르
민족구성	카자흐인(67.3%), 러시아인(21.0%), 우즈베크인(3.0%) 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이며, 한민족(고려인)은 약 10만 명으로 0.6%(10위)
종교	이슬람교(72.8%), 러시아정교(26.3%)
언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GDP	1,280억 달러 / 1인당 GDP 7,151달러
화폐단위	KZT(Tenge)
환율	1KZT=3.39KRW
회계연도	1월 1일~12월 31일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국가원수	대통령 : Nursultan Nazarbayev Abishevich

* 주: 2016년 기준

가. 국토 - 2개 특별시와 14개 주로 구성

1) 2개 특별시

가) 아스타나(Astana)

인구	85만 명(2016년 말)
면적	722 km ²
주요 산업	농축산물 가공업, 농기계, 수송용기계, 건설자재산업
특징	카자흐스탄의 수도

- 북부지방에 많이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의 분리주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1997년 12월 수도를 알마티에서 북부지역인 아스타나로 옮기게 되었다. 아스타나는 새로운 수도가 된 후 대규모 도시계획으로 정부청사 등 공공건물이 대거 건축되었다.
- 농업 개혁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면서 농축산물산업과 가공산업이 발달하였다.

나) 알마티(Almaty)

인구	172만 명(2016년 말)
면적	325km ²
주요 산업	공업, 광산·야금용의 발전장비, 농업용 기계공업, 포도통조림 등의 식품공업, 면공업
특징	1997년 12월 이전까지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

- 남동부에 위치하며, 1917년에는 인구 약 3만 명의 소도시였으나 중국과의 투르크시프 철도 개통으로 현재 인구는 172만 명에 이른다. 인구 급증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도시계획에 의해 도시가 잘 정비되었다. 탄산산맥 산기슭에 위치하므로 공기가 청정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 카자흐스탄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경제중심지이며, 식품공업, 기계공업 등 다양한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2) 14개의 주

주	주도	주	주도
알마티	탈디코르간	파블로다르	파블로다르
아크몰라	콕셰타우	카라간다	카라간다
악퇴베	악퇴베	코스타나이	코스타나이
아티라우	아티라우	크즐오르다	크즐오르다
서 카자흐스탄 = 바티스카자흐스탄	오랄	동 카자흐스탄 = 시기스카자흐스탄	외스케멘
남 카자흐스탄 = 웅튀스틱카자흐스탄	שמקנט	북 카자흐스탄 = 솔투스틱카자흐스탄	페트로파블
망기스타우	악타우	잠빌	타라스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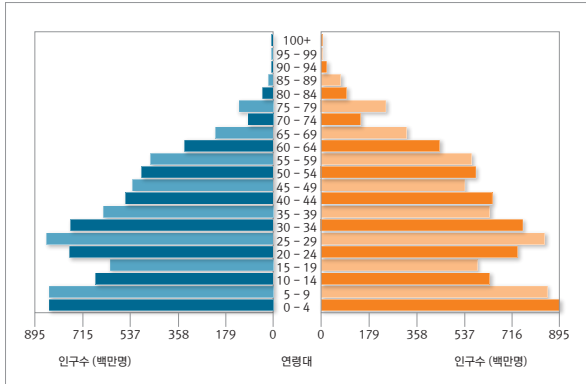
Part IV
식품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나. 인구

» 연령대별 인구



출처: 미국중앙정보부(CIA, www.cia.gov)

○ 25~54세 인구는 780만 명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하고, 중위 연령도 30.3세로서 젊은 편이므로 수입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구매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120여개 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

○ 인종 구성은 카자흐인 67%, 러시아인 21%, 우즈베크인 3%, 위구르인 1.4%, 우크라이나인 1.3%, 타타르인 1.1%, 독일인 0.6% 등 약 120여 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족 구성은 다양하지만 다른 구소련 국가처럼 민족 간 분쟁이나 내전이 없고, 여러 민족이 서로 조화되어 평화롭게 지낸다.

□ 고려인¹⁾

- 1937년 강제 이주된 한인들의 후손인 고려인이 약 10만 명 거주하고 있지만, 4세대가 지나면서 한민족의 정체성만 유지하고 카자흐스탄에 완전히 동화되었다. 이들은 현재 정부 고위직, 문화, 학계,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기업활동을 활발히 펼침으로써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2014년 12월 기준 알마티 43,700명, 카라간다 13,349명, 잠빌 9,638명, 크즐오르다 8,226명, 아스타나 5,533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 교민 수

- 2014년 12월 기준으로 고려인을 제외한 교민의 수는 약 2,213명이며, 알마티 1,546명, 아스타나에 440명, 쉘켄트에 104명이 거주한다. 교민 가운데는 파견된 기독교 선교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1) 고려인 거주현황: 우즈베키스탄 20만 명, 러시아 19만 명, 카자흐스탄 10만 명, 키르기스스탄 2만 명 등 53만 명이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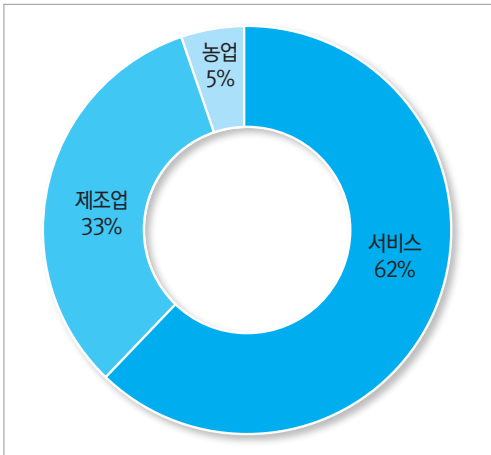
02 | 경제 및 무역

가. 경제 전반

□ 중앙아시아 경제의 중심국으로 부상

- 아시아와 유럽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러시아·중국 및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와의 교류를 수행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 CIS국가 중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장 빠르게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 산업별 GDP 구성



출처: 미국중앙정보부(CIA, www.cia.gov)

- 적은 인구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하여 경제 구조가 제조업에 비교적 취약하므로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기업이 자국에서 제조업에 진출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세동맹²⁾ 및 EEU국가³⁾는 무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

-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연합체이자 경제공동체로서, EU와 같이 역내 공동시장 형성을 목표로 한다. 2010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개국이 결성한 관세동맹이 시초이며, 2015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하여 정식 출범하였다.
- 향후 회원국을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기존 관세동맹 상품 분류체계(CU HS코드)를 보완, 변경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일상품분류 체계 (EEU HS코드)를 개발하여 전환하였다. 이에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CU HS코드가 아닌 EEU HS코드 확인이 필요하다.

2) 관세동맹 국가: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3) EEU 국가: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요약
- Part I 국가일반 현황
-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 부록

□ 유라시아경제연합 통관조약 발효 예정⁴⁾

- 2017년 4월 통관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회원국들이 내부 절차를 거쳐 회원국간의 통관 규정을 명기한 통관조약이 비준되면 현행세관코드와 기존 관세 동맹국 간의 통관 규정은 이 조약으로 대체된다.
 - 조약이 발효되면 통관과정이 자동화되고 통관문서는 모두 전자화 되어 통관접수에서 반출까지 모든 과정이 전자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므로 과거와 같은 인력 배치가 필요 없게 되고 기업과 세관의 통관 접촉이 최소화되어 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 카자흐스탄 2050전략의 촉진

» 카자흐스탄 2050전략 7대 과제

- | | |
|---------------------------|-------------------------------|
| ① 혁신 산업화트렌드 강화 | ⑤ 중소기업 발전 |
| ② 농업혁신 | ⑥ 국민 잠재력 개발을 위한 교육 강화 및 보건 지원 |
| ③ 지식경제기반 조성 | ⑦ 국가기관의 업무 개선 |
| ④ 효율적인 도시, 교통, 에너지 인프라 개발 | |

- 국제 경제질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에 치우친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 제안된 기존 2030전략을 수정하여, 2050년까지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카자흐스탄 2050 7대 과제’ 전략 하에 1) Nurly Zhol(누를리 졸) 프로젝트, 2) 5대 제도 개혁 및 100대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1) Nurly Zhol(누를리 졸)

- 경기침체를 벗어나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서 7대 목표, 즉 물류 인프라, 산업 인프라, 에너지 기반시설, 도시개발, 주택 인프라, 교육 지원, 중소기업 지원에 9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2) 5대 제도 개혁, 100대 조치

- 전문적인 국가기구 형성, 법에 의한 통치, 산업화와 경제성장, (국가)정체성과 통합, 계속 가능한 정부의 형성인 5개 제도 개혁 하에 100개의 조치 이행을 통한 경기활성화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 키릴문자 → 라틴문자로 카자흐어 표기법 변경

-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17년 말까지 라틴문자에 기초한 새로운 카자흐스탄 알파벳과 표기법 기준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 2025년까지 모든 공문서와 정기간행물, 도서 등이 라틴문자로 발간돼야 하며, 새로운 표기법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는 키릴문자도 함께 사용한다. 이는 사회·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서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분석되고 있다.

⁴⁾ 출처 : Eurasian Commission(www.eurasiancommission.org)

나. 주요 경제지표

- 2014년부터 국제 유가 하락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양의 러시아 제재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감소하였으며, 저유가 지속, 주요 교역국인 러시아 및 중국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향후에도 경제성장률이 3%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으므로 지속적인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환율이 2013년을 기점으로 악화되었다. 아울러 국민총생산액이 크게 낮아지고 1인당 GDP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국내 구매 수요도 대폭 감소하였다.

» 주요 경제지표

	2012	2013	2014	2015	2016
경제성장률(%)	4.8	6	4.2	1.2	1.0
GDP(십억 USD)	208	236	221	184	128
1인당 GDP(USD)	12,387	13,891	12,807	10,510	7,151
물가상승률(%)	5.1	5.83	6.71	5.2	5.5
실업률(%)	5.3	5.2	5.0	5.0	5.0
경상수지(백만USD)	1,057	1,187	5,957	△5,463	△6,161
대외 부채(백만USD)	137,014	150,487	157,651	154,288	159,970
외환보유액(백만USD)	28,280	24,678	29,209	27,871	30,379

* 주: 소수점 이하는 절사

출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www.eiu.com), 카자흐스탄통계청(www.stat.gov.kz), World Bank(www.worldbank.org), 국제통화기금(IMF, www.imf.org)

□ 현지화(팅게화) 평가절하로 수입시장 위축

- 2014년 카자흐스탄 외환당국의 갑작스러운 환율제도 개혁 및 평가절하 단행 등의 정책으로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함은 물론 급격한 환율변동과 물가 급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 달러/팅게 환율 동향

단위: USD 대비 KZT* 환율, %

2013		2014		2015		2016	
평균환율	전년대비 증감률	평균환율	전년대비 증감률	평균환율	전년대비 증감률	평균환율	전년대비 증감률
152.14	2.03	179.12	17.73	222.25	24.08	341.76	53.77

출처: 카자흐스탄 중앙은행(www.nationalbank.kz)

다. 무역

» 무역수지

단위: 백만 USD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57,244	88,107	88,142	84,700	79,459	45,955
수입	24,023	38,010	58,227	48,805	41,295	30,567
무역수지	33,220	50,097	29,914	35,894	38,164	15,388

출처: 국제무역센터(ITC, www.intracen.org)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수출액 감소는 원유의 유가 하락이 주원인이며, 현지화 평가절하에 따라 수입 시장도 위축되어 수입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 무역수지 감소 원인은 주요 교역국의 수요 감소와, 중국·러시아의 통화가치 하락, 경기 불안정, 수출품 가격 상승, 국제유가 하락, 광물 생산량 감소 등으로 분석된다.

» 국가별 교역 현황(2016)

단위: 천USD, %

NO	수출				수입			
	국가명	수출액	비중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국가명	수입액	비중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	이탈리아	7,474,770	20.3	△8.1	러시아	9,129,774	36.3	△13.3
2	중국	4,214,926	11.5	△23.1	중국	3,665,656	14.6	△27.9
3	러시아	3,509,161	9.5	△22.8	독일	1,443,521	5.7	△27.3
4	네덜란드	3,255,796	8.9	△34.6	미국	1,269,524	5.0	△10.0
5	스위스	2,687,769	7.3	1.2	이탈리아	834,333	3.3	△29
6	프랑스	1,798,128	4.9	△32.9	프랑스	660,821	2.6	△1.5
7	스페인	992,230	2.7	△18.6	터키	618,147	2.5	△16.3
8	우즈베키스탄	922,532	2.5	△2.1	우즈베키스탄	587,801	2.3	△19.0
9	우크라이나	911,193	2.5	△22.5	일본	552,884	2.2	△5.4
10	영국	888,047	2.4	7.1	한국	453,126	1.8	△25.3
기타	한국(29위)	223,513	0.6	△71.0				

출처: Global Trade Atlas(www.gtis.com), 카자흐스탄 통계청(www.stat.gov.kz)

-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입 대상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이다.
 - EEU로 인한 무관세 협약, 러시아어권, 동일 인증 제도 등의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다. 한편 중국과는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 주요 무역 현황(2016)

단위: 백만USD, %

NO	품목	수출		품목	수입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광물성 연료	25,934	66.4	차량 및 부품	9,632	49.6
2	철강	1,702	6.3	기계류	4,610	23.7
3	화학산업생산물	1,468	5.6	전자기기	2,410	12.4
4	동	1,516	5.8	철강제품	1,922	9.9
5	곡물	547	2.1	의료용품	1,100	5.7
6	보석, 귀금속류	540	2.0	광학, 의료기기	645	3.3
7	아연제품	397	1.5	플라스틱제품	597	3.1
8	제분공업생산물	391	1.5	식용 과일, 견과류	426	2.2
9	소금, 황	194	0.7	신발	267	1.4
10	광, 슬랙 및 회	379	1.4	비행	190	1.0

출처: Global Trade Atlas(www.gtis.com)

03 | 농업

가. 농업 개요

□ 광활한 국토를 가진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

- 영토가 방대하고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대륙성 기후가 뚜렷하며, 농업 생산에 알맞은 기후로, 대규모 밀 생산이 가능하다.
 -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1인당 경작지 이용 가능 면적(availability per inhabitant)이 1.5ha로 호주 다음으로 높다.

□ 낮은 농업 생산성

- 전체 곡물 생산량 중 밀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으며, 공산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생산성이 낮은 농업 부문의 기반이 약화되었다.
- 농산물 가공업 발달 수준이 낮아 가공업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다. 농산물 보관시설이 부족하고 대도시로의 운송 거리가 길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수송에 어려움이 많다.

□ 식량 안보

- 정부는 농·축산업의 자급률 확대와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 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곡물은 자급자족이 가능하지만 이외의 식품군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 농업 현황

1) 농업인구와 GDP

- 2015년 기준 약 6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5%가 농업에 종사한다. 전체 GDP 중 농업의 비중은 5.1%이고, 농산물 가운데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한 품목은 작물(5.6%), 육류(3%), 우유(2.4%), 달걀(10.4%)이었다.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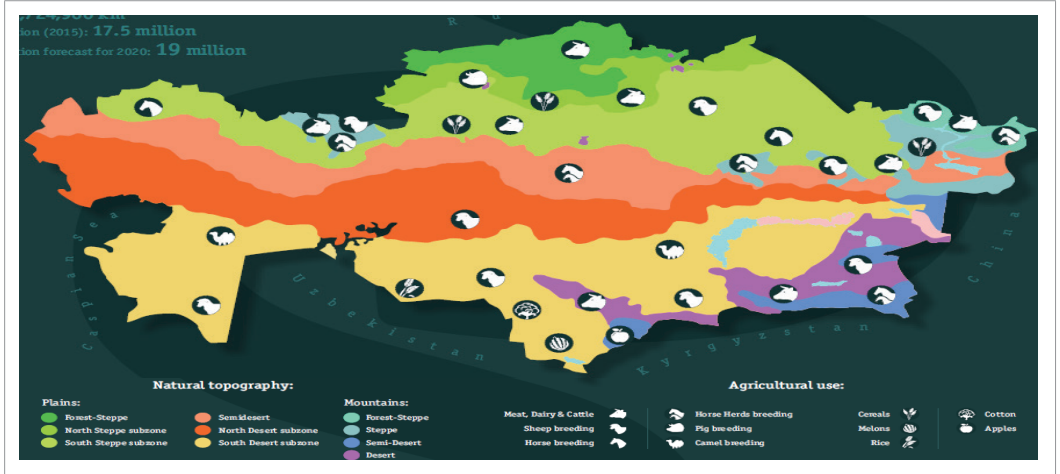
Part IV
식품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2) 농업 지역

» 지역별 농업 현황



출처: 카자흐스탄 농업부(www.mgov.kz)

- 지역에 따라 주요 농업 생산 품목이 뚜렷이 구분된다. 북부지역의 주요 농산품은 밀을 비롯한 곡물이고, 동부지역은 유지작물, 남부지역은 면화, 중부지역은 목초지와 사막이 많기 때문에 축산물이다.

3) 농업 정책

□ 8개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

- 주요 식재료(육류, 우유, 유지작물, 곡물, 양모용, 가금류, 원예, 설탕)의 자급률80% 달성, 생산성 향상, 수출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농업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 곡물 수출 인프라 개발과 가축사육센터 건설, 순종 혈통 소 구입 보조금 지급 등 농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카즈아그로⁵⁾의 농업 발전 전략

- ① 최우선 과제 선정과 투자방향 설정
- ② 국가의 농산업 투자 성과 극대화
- ③ 농산업 생산과 서비스 인프라 개발
- ④ 농산업 클러스터 설립 및 발전에 기여
- ⑤ 농산업 생산물 수출 증대
- ⑥ 지역 식품시장의 규제와 안정화
- ⑦ 협력사업 성과 증진



⁵⁾ 카자흐스탄 농업부 산하의 국영농업기업으로써 7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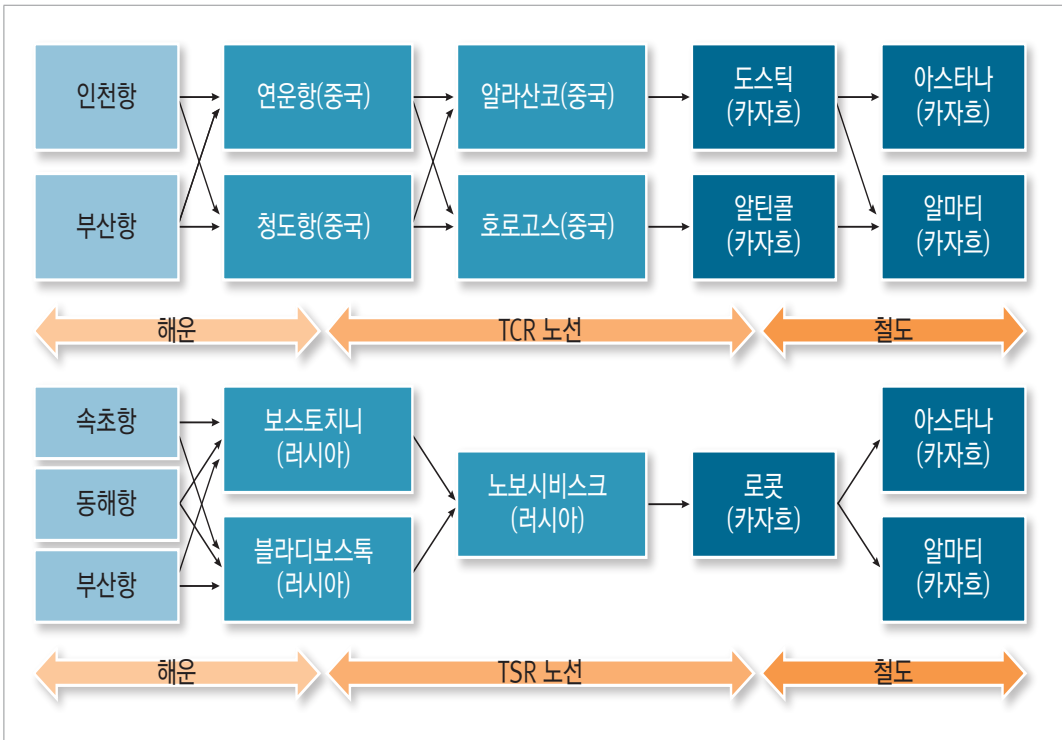
04 | 물류

가. 물류 개요

□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운송비용으로 물류 환경 매우 열악

- UN최빈국대표사무소⁶⁾의 조사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은 해상운송을 이용하지 못하는 내륙국가로서 해상, 철도, 도로, 운송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물류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운송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해운으로 출발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운송 노선을 이용한다. 운송 노선은 크게 나누어 중국을 통하는 TCR⁷⁾과, 러시아를 통하는 TSR⁸⁾의 2가지가 있다. TSR 보다는 TCR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상 유리하다.

» 한-카 화물 주요 노선



- TCR 이용 시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간의 수출입 불균형으로 인해 비용을 들여 컨테이너를 중국으로 재운송하거나, 심지어 카자흐스탄에서 공 컨테이너를 헐값에 매각하는 사례가 있다.

6)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Representative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The Development Economics of Landlockedness: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Costs of Being Landlocked, UN-OHRLLS, 2013.

7) TCR(Trans China Railway) : 중국을 통하여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철도노선

8) TSR(Trans Siberian Railway) : 시베리아를 통하여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철도노선

□ 유라시아 물류의 허브로 도약

- 카자흐스탄은 운송비용이 비싸지만 유라시아 중심부에 위치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의 허브로 발전하고 있다.

□ 중국의 新실크로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와 연계

-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一帶)와, 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一路)를 뜻하는 新실크로드 구축을 추진 중이다.
 -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 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 구성을 위하여 물류 인프라 등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2049년 완성을 목표로 1조 400억 위안(약 18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유럽 및 아시아 진출 시 카자흐스탄을 경유하게 되므로, 카자흐스탄은 육상 실크로드 물류의 중심국가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 카자흐스탄의 철도·도로·항만·항공 현황

철도	총 연장(km)	14,319
	화물수송 실적(백만 톤·km)	235,846
	여객수송 실적(백만 명·km)	18,498
도로	총 연장(km)	97,155
	도로포장률(%)	88.7
	화물수송 실적(백만 톤·km)	121,074
	여객수송 실적(백만 명·km)	163,996
항만	컨테이너(천 TEU)	-
항공	화물수송 실적(백만 톤·km)	66.9
	여객수송 실적(백만 명·km)	4.9

* 주 : 도로는 2011년, 철도와 항만은 2014년, 항공은 2013년 기준임

출처 : “TCR 대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농산물 가공수출사업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최지현 외 2인), 2015

나. 물류 경로

1) 육상

□ 지정항상 해상 운송경로가 없으며, 중국 및 러시아를 경유하는 복합 내륙운송 루트를 이용

» 한-카 TCR/TSR 물류 경쟁력 비교

	TCR	TSR
운송 기간	21~28일(타슈켄트 기준)	30~42일(타슈켄트 기준)
궤간	표준궤(중국 구간 1,435mm)/ 광궤(중앙아시아, 러시아 1,520mm)	광궤(중앙아시아, 러시아 1,520mm)
환적 ⁹⁾	환적항 : 연운항, 청도항, 상해항 환적역(Alasankou-Dostyk) 적체 가능성 있음	환적항 : 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 환적역 : 노보시비스크 적체 가능성 있음
장점	운임 및 시간 경쟁력 우위/ 다양한 대체 항만 있음	TCR에 비해 안전 수송 가능/ 궤간 차이에 의한 환적 불필요
단점	- 레일의 폭이 달라서 환적이 일어남 - 환적구간 동안 적체 및 도난 가능 -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중국 화물 우선 선적(곡물 및 전략물자 수송 시 우선권 부여) - 철도 플랫폼 부족 - 성수기 환적 지연 - 국경 내 관리문제로 인하여 중국 동부에 서의 웨이건 할당에 따른 정체	- 계속된 철도 운송로 인상과 보스토치니항에서의 화물 적체로 인해 비용과 운송시간이 불안 정적 - 보스토치니 환적 통관 시 까다로운 요구사항 (비효율적 세관 운영) - 독점 구조의 보스토치니 터미널의 과도한 보관 비용 발생 - 극동지역 발차 지연

출처 : "TCR 대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농산물 가공수출사업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최지현 외 2인), 2015



* 주 : TSR - 초록색 선, TCR - 파란색 선

출처 : 우진글로벌

9) 환적 : 운송품이 도착항에 도착되기 전에 당초에 선적되었던 운송기관에서 다른 운송기관으로 이전 및 재적되는 행위

□ 육상운임¹⁰⁾

- 운임비용은 TCR 이용 시 20피트 기준으로 2,850~3,200달러가 소요되며, TSR 이용 시 20피트 기준으로 3,920~4,100달러가 소요된다.

» TCR 이용 시운임

선적항	F/D	도착지	20FEET	40FEET
인천	연운항	알마티	\$2,950	\$4,600
부산	연운항	알마티	\$2,850	\$4,500
인천	청도항	아스타나	\$3,200	\$5,100
부산	청도항	아스타나	\$3,200	\$5,100

» TSR 이용 시운임

선적항	F/D	도착지	20FEET	40FEET
부산	블라디보스톡	알마티	\$4,100	\$4,900
부산	블라디보스톡	아스타나	\$3,920	\$4,850

□ 육상운송기간¹¹⁾

- 운송기간은 TCR 이용 시 총 21~28일, TSR 이용 시 총 29~35일 소요된다.

» TCR 이용 시 세부 운송기간

선적지	선적방법	운송루트	해상구간	중국항(T/S통관)	Ala-Shankou	Dostyk	Transit	목적지	총소요일
한국	컨테이너	BSN/ON-LYG/ HDO-F/D	2~3	5~6	6~8	1~2	1~2	5~6	21~28

* 주: 운송 루트는 인천 또는 부산~Lianyungang 또는 Huangdao ~ 목적지

» TSR 이용 시 세부 운송기간

선적지	선적방법	운송루트	해상구간	러시아항(T/S통관)	TSR철송구간	Lokot	목적지	총소요일
한국	컨테이너	BSN/SOK-VTC-F/D	2~3	14	7~8	1~2	5~8	29~35
한국	벌크	BSN/SOK-VLV-F/D	2~3	21	7~8	1~2	5~8	38~42

* 주: 운송 루트는 부산 또는 속초~Vostochny(CNTR)또는 Vladivostok(BULK)-Lokot~목적지

10) 출처: (주)월드베스트로지스틱스(www.worldbl.co.kr)

11) 출처: (주)월드베스트로지스틱스(www.worldbl.co.kr)

□ 목적지에 따라 TCR 노선 선택 가능

- 운송비용 절감을 위하여 알라산코(Alashankou)는 아스타나 외 북부지역이 목적지인 경우에 유리하고, 새로 개설된 호로그스(Horgos)는 알마티 외 남부지역이 목적지일 때 유리한 노선이다.

□ 고속도로와 철도가 주요 국제 교통로

- 고속도로는 대부분 최종 생산물 및 소비재 수송에 이용되며, 철도는 중앙아시아에서 수출되는 원료 수송이나 발틱 항구와 태평양 항구 사이의 컨테이너 수송에 주로 이용된다.

2) 해상



주요 항구	위치
약타우항	만기스타우주 약타우시
아티라우항	아트라우주 아트라우시
오스케멘항	동카자흐스탄주 외스케멘시
세메이항	동카자흐스탄주 세메이시(구 Semipalatinsk)
파블로다르항	파블로다르주 파블로다르시

- 카스피해의 동부 연안을 차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약타우항을 중심으로 해상운송이 발전하였다. 약타우항의 경우 육로, 철로 및 파이프라인이 모두 유입되는 구조로 러시아, 아르메니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이다. 반면 한-카 수출입에서는 해상 물류를 이용할 수 없다.

- 약타우항의 처리 가능 물동량은 총 1천만 톤으로, 일반 산적화물은 150만 톤, 연간 24,000TEU의 컨테이너 물동량 수용이 가능하다.

3) 항공

-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공항은 알마티, 아스타나, 아르타우시에 있다. 총 21개 공항 중 국제공항은 15개이다. 알마티 공항은 전체 항공 물동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의 최대 복합기능 국제공항이지만 아직까지 물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Part II

| 농식품시장 동향 |

01. 생산동향
02. 유통동향
03. 소비동향
04. 수출입 동향
05. 식품정책 동향
06. 한국식품 동향





01 | 생산동향¹²⁾

가. 신선농산물

□ 곡물과 축산업의 생산 비중이 높은 편

- 2014년 기준 주요 농축산물 생산량은 2010년 대비 28.7% 증가하였으며, 그중 곡물류는 41.1% 증가하였다.

» 신선농산물 생산량

단위: 천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곡물류	12,115	26,825	12,788	18,156	17,100
채소류	3,695	4,126	4,711	4,954	5,398
과실류	221	233	284	287	312
축산물	6,270	6,113	5,620	5,726	5,898

출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www.fao.org)

□ 우유는 축산물 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

- 2014년 기준 돼지고기의 생산량은 2010년 대비 51% 감소한 반면, 닭고기는 30% 증가하였다.
- 우유는 축산물 총생산량의 약 89%를 차지함으로써 비중이 가장 크지만,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우유 수입량을 점차 줄이기 위하여 낙농시설 현대화에 1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12) 카자흐스탄의 경우 주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 하지 않고 있어 생산 동향에서 제시한 수치는 최신 자료임

» 축산물 생산량

단위: 천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쇠고기	406	392	373	383	405
돼지고기	205	213	103	99	99
닭고기	102	101	123	135	134
계란	207	207	204	217	239
우유	5,347	5,197	4,815	4,890	5,020

출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www.fao.org)

□ 밀은 곡물류 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

- 밀, 보리, 옥수수, 쌀 등 여러가지의 곡물이 생산되는데 이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은 밀로서, 전체의 약 77%를 차지한다. 2014년 기준 연간 약 1,300만 톤을 생산하였다.
 - 정부는 향후 밀 생산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반면, 소규모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4년 동안 새로운 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유기농 기준을 제정하고, 밀 재배를 옥수수 및 대두로 전환하는 등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생산량을 40%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생산량은 밀 다음으로 보리, 옥수수, 쌀, 귀리 순이다.

» 곡물 생산량

단위: 천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밀	9,638	22,732	9,841	13,940	12,996
보리	1,312	2,593	1,490	2,539	2,411
옥수수	462	481	520	569	663
쌀	373	346	350	344	377
귀리	133	258	147	304	225
호밀	42	28	28	43	60

출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www.fao.org)

나. 가공식품

□ 풍부한 1차 생산물에 비해 농산물 가공산업은 미약한 편

- 밀가루를 중심으로 한 곡물제조품과 제빵류가 가공식품 생산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일·채소 가공품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이다.
- 가공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육가공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육류 수입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 2016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탈리아 Grupo Cremonini의 Inalca Eurasia와 합작으로 대형육가공 허브를 구축하여 약 2만 마리의 소를 수용할 수 있고, 일주일에 2천 마리의 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육가공 처리시설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가공식품 생산액 비중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3
곡물가공품	21.7	20.3	17.3	20.2	23.5
유제품	16.5	16.4	16.9	16.8	16.3
제빵류	-	18.3	17.3	17.0	15.3
육류가공품	10.1	11.1	11.2	11.7	13.4
과일, 채소 가공품	11.3	11.1	9.8	9.7	8.1
기타식료품	40.4	22.8	27.5	24.6	23.4

* 주: 2013년은 생산량 기준

출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www.stat.gov.kz)

- 신선 우유 생산이 정체됨에 따라 버터, 치즈 등 유제품 생산량 역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 우유 및 유제품 생산량

단위: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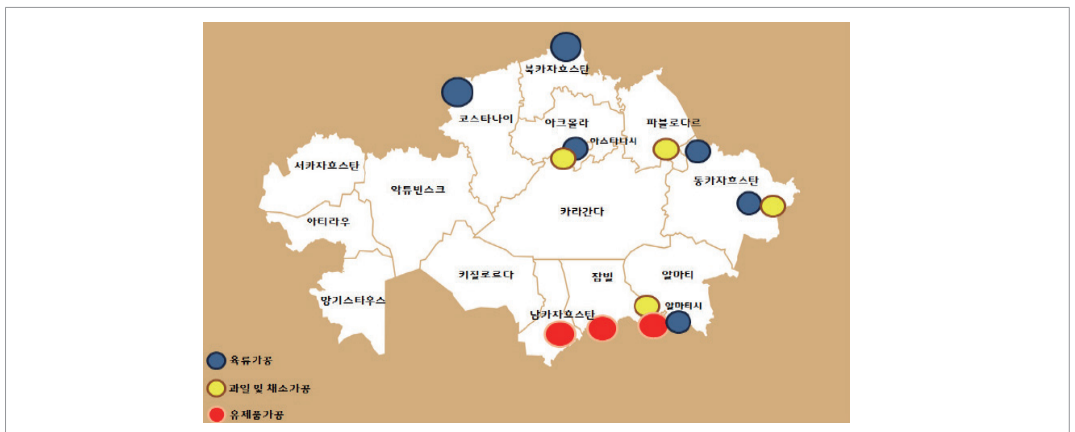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신선 우유	5,347	5,197	4,815	4,890	5,020
버터	14	14	12	14	18
치즈	16	18	19	22	22
탈지우유	385	397	348	387	387

출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www.fao.org)

□ 지역별로 분포되어있는 식품가공산업

- 곡물가공업은 곡물 생산량이 많은 아크몰린스크와 코스타나이, 북카자흐스탄 등 을 북쪽지역이 중심이며, 연간 100만 톤 이상의 곡물이 가공되고 있다.
- 육가공업은 동북쪽 지역과 알마티 지역이 중심이고, 유가공업은 남카자흐스탄, 알마티, 잠빌 등 남쪽 지역이 중심이다.
- 과일 및 채소가공업은 파블로다르, 동카자흐스탄 등 동쪽 지역이 중심을 이룬다.

» 지역별 식품 가공 생산 현황



출처: "TCR 대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농산물 가공수출사업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최지현 외 2인), 2015

» 주요 식품 생산업체

분류	생산 업체	시장 점유율	생산제품	업체정보	주요 브랜드
유가 기업	Wimm Bill Dann (АОВимБилльДанн) 	2.9	유제품	1992년 설립 2008년 매출액 : 2.82 십억 달러	Lyubimy, Agusha, Chudo, BIO MAX, Vesely Molochnik, J7
	Lactalis, Groupe (Лакталис) 	2.5	치즈, 우유 등 유제품	1933년 설립 2016년 매출액 : 17 십억 유로	Dolche, Lactel, President, okomoko, BIO-C Immun+
	Nestle SA (Нестле) 	2.5	커피, 분유, 국수, 초콜릿, 와플, 케이크, 아이스크림, 건강 식품, 동물 사료	1866년 설립 2016년 매출액 : 89.46 십억 프랑	Nescafe, NAN, KitKat, Nuts, Nesquik, Kosmostars, Maggi
	Agroprodukt Aseptik TOO (ТООАгропродукт) 	1.9	파스타, 우유, 치즈, 음료,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케첩	1996년 설립	Odari, Mumunya, Lyubimoe, Svejee, Beloe, Nashe, ABVGDeyka
	Danone, Groupe (Данон) 	1.9	낙농제품, 생수	1919년 설립 2015년 매출액 : 22.4 십억 유로	Aktivia, astishka, Danone, Prostokvashino
유지 기업	Eurasian Foods Corp AO (АОЕвразийнФудс Корпорэйшн) 	2.6	소스 및 드레싱	1971년 설립 2016년 매출액 : 180 백만 달러	Tri zhelaniya, Shedevr, Zlatye gory, Zolotye standarty
제과업	Rakhat JSC (КондитерскаяФабрикаАОРахат) 	2.7	스낵류, 초콜릿, 마시멜로우, 와플, 껌, 무가당 스낵류	1942년 설립 2013년 롯데제과가 인수 2015년 매출액 : 36.2 십억 텡게	Pepero, Chocolate Pie, Scotch Trio Candy, Dream cake
	Mars Inc (Марс) 	2.2	초콜릿, 동물사료, 껌	2014년 매출액 : 33 십억 유로	Twix, Snickers, M&M's, Milky Way, Royal Canin
	Mondelez International Inc (Мондэлис) 	1.9	초콜릿, 비스킷, 커피, 껌, 과자	1923년 설립 2016년 매출액 : 300억 달러	JACOBS, CARTE NOIRE, ALPEN GOLD, MILKA, PICNIC, ELVITA, TUC
	Bayan Sulu AO (АОБаянСулу) 	1	카리멜, 초콜릿, 와플, 과자	1974년 설립 2014년 매출액 : 19.1 십억 텡게	Michelada, Salem, Antoshka, Zoloto skifov

출처 : Euromonitor International(www.euromonitor.com), 각 업체 사이트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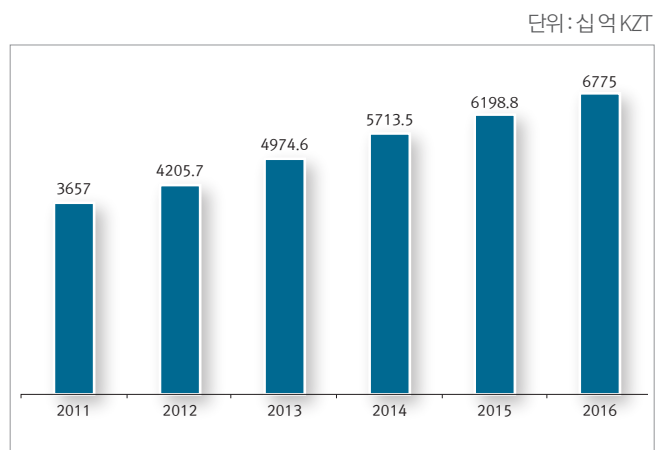
부록

가. 유통시장 개요

□ 최근 경기악화에도 유통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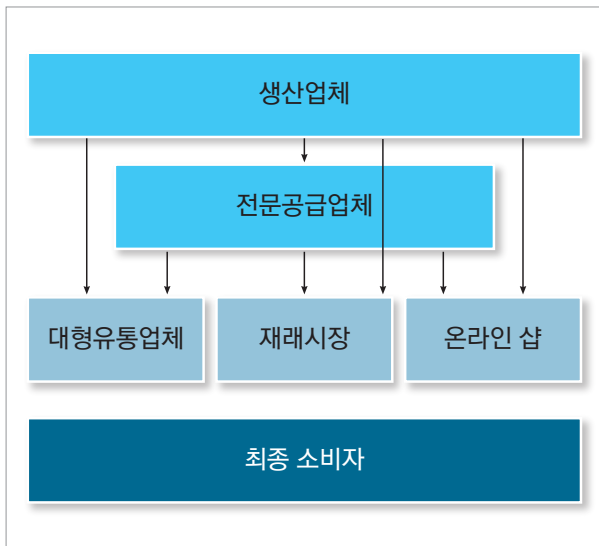
- 유통시장 규모는 2011년 약 3조 6,570억 텡게에서 2016년 6조 7,750억 텡게로 2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 카자흐스탄의 유통시장은 크게 대형 유통업체, 재래시장 및 온라인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래 시장이 전체 유통채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경제권 특유의 유통채널 방식으로 변화 중에 있는 체제 전환국이다.

» 유통시장의 매출 성장



출처: BMI(www.bmiresearch.com)

» 카자흐스탄 식품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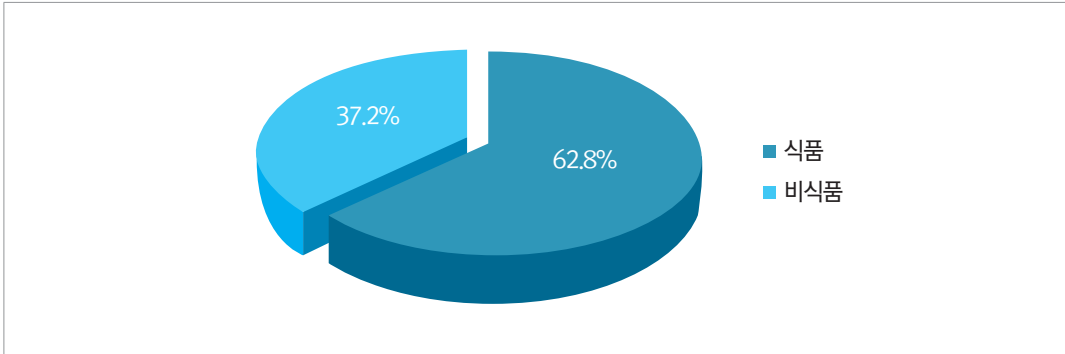
○ 전문공급업체(수입 대리상)를 통해 수입통관을 거친 후 각 유통업체 등의 판매채널로 이어 지는 단순한 구조이며, 주 판매채널이었던 재래시장은 2004년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소매 업체에 밀려 입지가 좁아지는 추세이다.

- 최근 CIS국가의 유통업체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진출함에 따라 현지 소규모 유통업체와 M&A를 통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 지역별 유통 매출액은 알마티(전체의 41%), 카라간다주(10.4%), 동카자흐스탄주(9.3%), 아스타나(5.8%)순이다.

- 카자흐스탄의 전체 유통시장 중 식품 유통시장의 비중은 2016년 기준 62.8%이다.

» 유통시장 중 식품유통시장 비율(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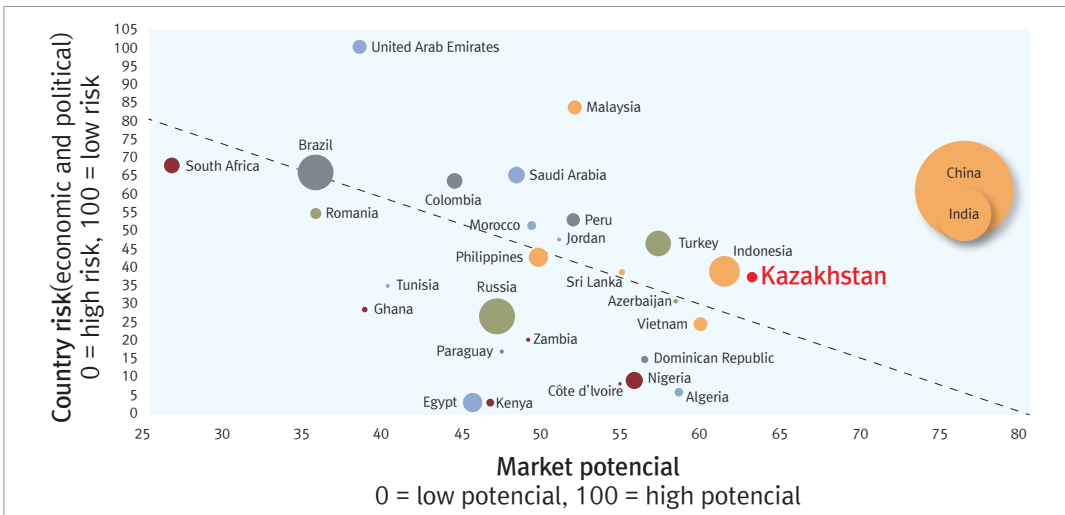


출처 : Euromonitor International(www.euromonitor.com)

□ 2016년 글로벌 유통성장지수 세계 4위 차지

-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A.T. Kearney는 4가지 변수, 즉 시장규모(market size), 국가 위험도(country risk), 시장 침투(market saturation), 시간 압박(time pressure)을 기반으로 30개 신흥 국가에 대한 글로벌 유통성장지수(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를 평가하였는데, 카자흐스탄은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의 뒤를 이어 4위를 차지하였다.

» 카자흐스탄 유통시장 잠재력



출처 : "The 2016 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 AT Kearney, 2016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 통관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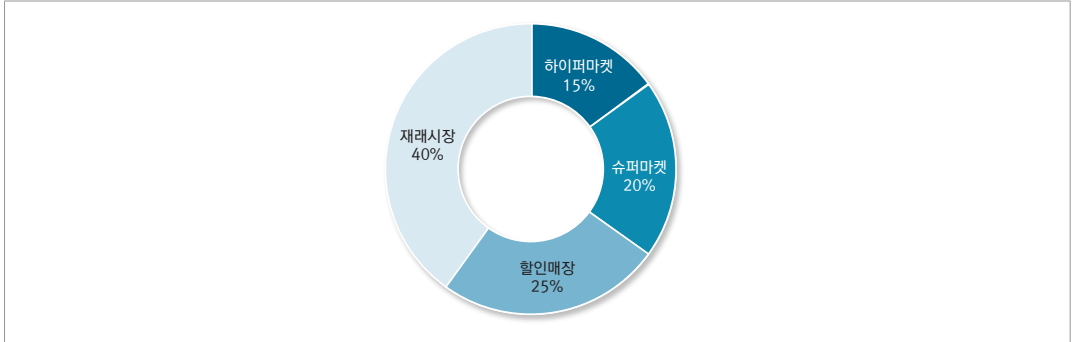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나. 주요 유통 채널

» 식료품의 유통형태별 구매 경로



출처: Almaty KBC 설문

- 소비자들의 식품 구매 경로를 살펴보면, 재래 시장(약 40%)이 가장 많고, 할인매장(25%), 슈퍼마켓 (20%)순이었다. 편리함 보다 가격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오프라인 시장

가) 전통 유통채널

- 전통유통채널에는 재래시장인 바자르(Bazaar)¹³⁾가 있으며, 현재 카자흐스탄 내의 가장 큰 소매채널이다.
- 대형 유통채널이 등장하면서 재래시장이 과거에 비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알마티, 아스타나 등 대도시에서는 성업 중이다.
 - 대표적인 바자르는 질노니, 그린 등이 있으며, 아스타나의 예브라지야 바자르의 경우 실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구축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추구하고 있다.
 - 그중 알마티에서 가장 큰 바자르였던 ‘바라홀까’는 화재로 인해 2015년 철거되었다.

» 전통 유통채널 규모

단위: 십억KZ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문 소매점	24	26	28	33	37	42
독립 소매점	868	988	1,232	1,391	1,490	1,589
기타 소매점	868	1,048	1,326	156	1,742	1,926
합계	1,760	2,063	2,588	299	3,270	3,558

* 주: 소수점 이하는 절사

출처: Euromonitor International(www.euromonitor.com)

- 영세소상인이 대부분인 바자르는 정부의 전통시장 현대화 정책¹⁴⁾에 따라 현대적인 유통채널로 바뀌고 있으며, 유럽형 푸드마켓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13) 지방이 덜인 시장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재래식 시장과 비슷하다.

14) 출처: Kazakhstan: Legendary Almaty Bazaar Going Upmarket, Eurasianet, 2014

» 유럽형 푸드 마켓 Mizam 오픈

- 2017년 2월 프랑스 Ranzhis 시장을 벤치 마킹한 유럽형 푸드마켓 Mizam 이 알마 티에서 처음 오픈했다.
- 약 2,000개의 점포가 입주하여 다양한 식품을 판매하는데, 유통단계를 줄여 시중보다 약 35% 저렴하게 공급하며, 점차 확장할 계획이다.



나) 현대 유통채널

- 현대적인 유통채널은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할인점 및 편의점으로 나뉜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슈퍼마켓(49%)이고, 이어서 하이퍼마켓(41%)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대형 유통업체는 편리한 시설과 서비스로 이용객이 늘고 있으며 공격적으로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 현대 유통채널 규모

단위: 십억 KZT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슈퍼마켓	148	186	204	215	222	247
하이퍼마켓	89	105	126	147	171	206
할인점	26	29	35	40	43	48
편의점	-	-	0.7	0.2	-	-
합계	263	322	366	402	438	502

* 주: 소수점 이하는 절사

출처: Euromonitor International(www.euromonitor.com)

□ 유통채널의 다변화

- 기존 소규모 소매업 및 재래시장으로 이루어진 소매시장에 외국계 대형 유통매장들이 진출하며 유통채널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독 유통매장보다는 영화관, 오락쇼핑센터가 있는 대형 쇼핑몰 내에 입점하여 복합 유통채널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MEGA, Dostyk plaza, Esentai mall이 대표적인 대형 쇼핑몰이다.
 - 편의점은 일본 이온그룹(AEON Group)의 미니스톱이 2013년에 개업하여 유일하게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있으며, 할인점(One Price Shop)은 2015년 말 첫 매장을 오픈하였고, 향후 2~3년 내 50여 곳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 현지 대형 마트는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서민층을 타겟으로 마케팅하며, 외국계 대형 매장은 고품질 상품으로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본사의 구매부서가 납품업체 계약과 대금결제 결정¹⁵⁾

-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본사의 구매부서가 납품 업체와 계약과 대금결제 방식을 결정한다. 이후, 지점에서 따로 납품업체에 연락하여 물품을 공급받도록 하는 구매방식이다.
 - 현지 유통업체의 경우 카자흐스탄산 제품이나 중국산 공산품의 수입 비중이 높으며, 직접구매의 형태로 공급받는다.
 - 외국계 유통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공산품을 유럽 및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인증 및 서류 절차가 복잡하여 대부분을 간접구매 형태로 공급받는다.
- 따라서 유통체인에 납품 경험이 있으면서, 한국 제품을 수입한 경험이 있는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간접 수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대형유통업체들의 선진국형 유통트렌드 벤치마킹



- Galmart의 경우 카트에 전자식 제품 설명 및 광고를 하고 있으며, 향후 상품배치도를 추가하여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아이템의 위치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Ramstore의 경우 주기적 정보제공, 포인트 적립, 사은품 증정 등의 회원제를 도입하여, 단골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PB시장의 발달은 저조하지만 확대되는 추세

- 한국,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PB시장의 발달은 저조한 편이다. 그 이유는 대형마트의 고객이 중상류 및 부유층에 한정되기에 고급 식품점의 고가·고품질 마케팅과 PB상품의 저가 마케팅 목표가 상충되며, PB상품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 증가, 경기 침체 지속, 식품제조업을 육성하는 정부정책과 맞물려 PB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 〈Metro Cash&Cary〉의 aro, Fine Life 〈Ideal〉의 Fair Price와 Fiero가 대표적인 PB브랜드이다.



▲ Metro Cash&Cary의 PB브랜드

▲ Ideal의 PB브랜드

15) 출처 : “CIS 대형유통망 현황 및 진출방안”, KOTRA, 2013

» 주요 유통업체현황(상위 13업체)

Magnum		
	설립년도/매장수	2007년/21개
	업태	창고형 할인매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최대의 유통업체 ▶ 5개 도시에 걸쳐 21개의 점포를 보유 ▶ 현지업체의 장점을 살려 직구매로 가격을 낮추며, 직구매와 수입업자를 통한 간접구매 비율은 3:7임 ▶ 2주마다 최대 50% 할인 ▶ 15,000개 이상 품목 보유 ▶ 24시간 영업
S-mall		
	설립년도/매장수	1997년/50개
	업태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대형 유통업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오래된 소매체인점으로, 협력, 안정성, 비즈니스 관계 측면에서 공급업체로부터 1위 기업으로 인정 받고 있음 ▶ 직수입 판매 및 자체 생산 ▶ 35,000개 이상 품목 보유 ▶ 주문 생산 가능(육류, 베이커리)
Anvar		
	설립년도/매장수	2014년/15개
	업태	유통 네트워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품목 ▶ 약퇴베 최대 유통업체 ▶ 아스타나, 아티라우, 악타우, 우르스크, 크릴로다, 카라간다, 우랄스크, 크즐오르다에 점포가 있음 ▶ 육제품, 베이커리, 과자류 자체 생산
Green mart		
	설립년도/매장수	2008년/40개
	업태	슈퍼마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마트 자체 브랜드 생산 ▶ 알마티와 아스타나에 40개 이상 점포 보유 ▶ 육류, 식품, 베이커리 자체 브랜드 생산 ▶ 고객충성도에 큰 관심을 둠 ▶ 낮은 가격 고품질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상품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 ▶ 2017/4 활동 중단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Ideal		
	설립년도/매장수	2012년/6개
	업태	슈퍼마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브랜드 'Fiero, Fair Price' 소유 ▶ 베이커리, 육류, 과자류, 식품의 자사 브랜드 보유 ▶ 아티라우에 6개 점포 ▶ 낮은 가격
A-store		
	설립년도/매장수	2011년/2개
	업태	하이퍼마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커리와 쿠키 자체 생산 가능 ▶ 40,000개 이상 품목 보유 ▶ 낮은 가격 ▶ 알마티와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에 점포 보유 ▶ 24시간 영업 ▶ 온라인 구매 가능
Astykzhan		
	설립년도/매장수	2008년/4개
	업태	하이퍼마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타나 3개, 코스타나이 1개 점포 보유 ▶ 온라인 구매 가능 ▶ 배달 가능 ▶ 18,000개 품목 이상 보유 ▶ 낮은 가격 ▶ 다양한 프로모션
Ramstore		
	설립년도/매장수	2000년/18개
	업태	슈퍼마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최대 슈퍼마켓으로 세계에 1,400개 점포를 보유한 터키 기업인 Migros의 소유임 ▶ Mega 같은 대형 쇼핑몰에 입점함 ▶ 각종 할인, 서비스, 프로모션, 회원제 운영
Ayan		
	설립년도/매장수	2011년/9개
	업태	슈퍼마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라간다 최대 유통업체 ▶ 베이커리, 쿠키, 유제품 자체 생산 가능 ▶ 낮은 가격

Galmart		
 	설립년도/매장수	2011년/1개
	업태	슈퍼마켓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마티에 위치 ▶ 독특하고 다양한 품목 보유 ▶ 현대식으로 매장을 배치하고, 중산층 이상을 타겟으로 운영함 ▶ 고급 서비스 ▶ 자사 브랜드 소유
Metro		
 	설립년도/매장수	1964년/7개
	업태	창고형 할인매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개국에 750개 점포를 보유한 독일계 다국적 유통업체 ▶ 온라인 구매 가능 ▶ 7개 매장 보유 ▶ B2B, B2C가 가능한 창고형 할인매장 ▶ 자사 브랜드
Carrefour		
 	설립년도/매장수	2016년/1개
	업태	대형 할인매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개국에 12,500개 점포를 보유한 프랑스계 다국적 유통업체 ▶ 30,000개 품목 이상 보유 ▶ 자사 브랜드 소유 ▶ 상품과 품목이 다양함 ▶ 매장수에 비해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편
Esentai		
 	설립년도/매장수	2012년/1개
	업태	프리미엄 슈퍼마켓(상류층)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의 1등급 대형 식료품 전문점 ▶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고급몰에 위치한 프리미엄 마켓. 주위에 고급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며, 고소득층이 주 타겟임. 이 지역에는 한인도 많이 거주하므로 다양한 한국식품을 취급함 ▶ Kazacom 은행 서비스를 도입하여 중국의 부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함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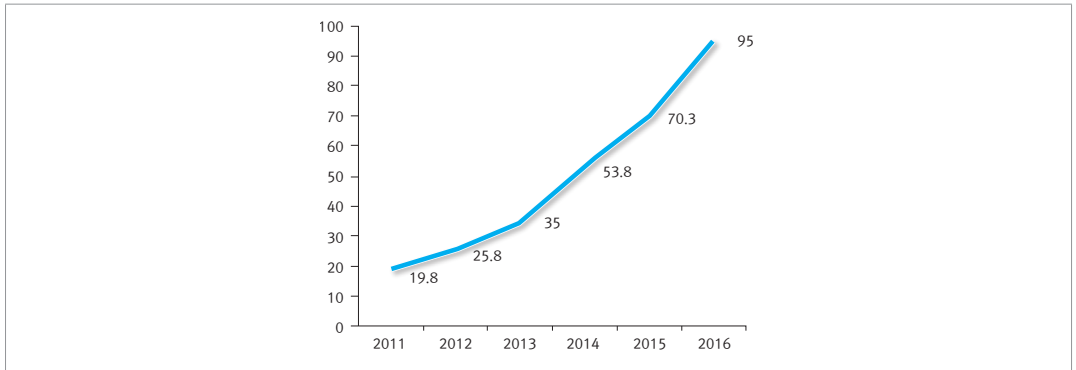
2) 온라인 시장

□ 온라인시장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품 수령 후 현금 지급 결제방식을 선호

- 전체 온라인 유통시장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최근 5년 동안 4.8배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오프라인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재까지는 오프라인의 선호도가 더 높은 편이다.
- 전체 온라인시장에서 식품의 비중은 약 20%이며, 온라인 주문 시 결제 방법은 물품 수령 후 현금 지급 결제(49.2%), 카드결제(34.6%), 계좌송금(20.1%), 모바일 결제(16.7%) 등의 순이다.
 - 소비자들이 물품 수령 후 현장결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안전하고, 제품이 마음에 안 들 경우 바로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택배 서비스는, 영토가 넓고 도로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택배업체와의 파트너십이 불가피하며, 철저한 검토를 통해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¹⁶⁾
- 대표적인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AliExpress(중국), eBay(미국), Amazon(미국) 등이 있으며, 한국의 G마켓 이용자 수도 많다. 현지 온라인 식품 쇼핑몰은 SATU, Anuha-Aipo, Fine-food, Arbuз 등이 있다.

» 온라인 시장 매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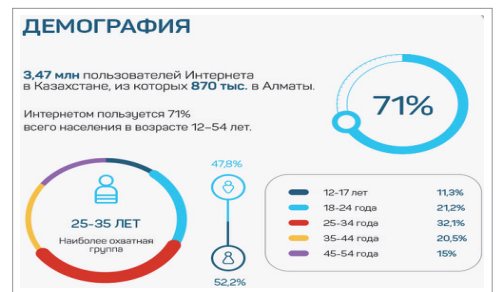
단위: 십억 KZT



출처: Euromonitor International(www.euromonitor.com)

» 카자흐스탄 인터넷 이용 인구 현황

- 카자흐스탄 12~54세 인구의 71%가 인터넷을 이용한다.
- 구매력이 높은 25~34세(32.1%)가 가장 활발히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여성(52.2%)이 남성(47.8%)에 비해 인터넷 이용률이 높다.



출처: Forbes Kazakhstan(www.forbes.kz)

¹⁶⁾ 출처: "Retailing in Kazakhstan",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7.

□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 광활한 영토에 비해 낮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국내 물류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므로 해외에서 배송되는 택배는 세관신고서 작성 등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현지 물류창고를 구비하는 것이 용이하다. 또한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매장 선호도가 높기에 온라인 단일 매장보다는 오프라인 매장도 병행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한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카자흐스탄 현지 규정에 맞는 인증과 허가를 갖추어야 함에 유의해야 하며, 현지업체 및 이미 진출한 글로벌 업체와의 차별성 있는 진입방안도 필요하다.

▶ 주요 온라인 매장

	<table border="1"> <tr> <td>이름</td> <td>SATU</td> </tr> <tr> <td>도메인</td> <td>www.satu.kz</td> </tr> <tr> <td>특징</td> <td>- 약 620만 개 제품과 약 18만 5천 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음 - 2016년 상반기 평균 주문 횟수는 6만 4,244건으로 전년 동기 4만 9,024건 대비 31% 증가</td> </tr> </table>	이름	SATU	도메인	www.satu.kz	특징	- 약 620만 개 제품과 약 18만 5천 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음 - 2016년 상반기 평균 주문 횟수는 6만 4,244건으로 전년 동기 4만 9,024건 대비 31% 증가
이름	SATU						
도메인	www.satu.kz						
특징	- 약 620만 개 제품과 약 18만 5천 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음 - 2016년 상반기 평균 주문 횟수는 6만 4,244건으로 전년 동기 4만 9,024건 대비 31% 증가						
	<table border="1"> <tr> <td>이름</td> <td>Fine Food</td> </tr> <tr> <td>도메인</td> <td>www.finefood.kz</td> </tr> <tr> <td>특징</td> <td>- 온라인식품 전문쇼핑몰로서 해외 식품을 판매하며 신선식품부터 고급식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td> </tr> </table>	이름	Fine Food	도메인	www.finefood.kz	특징	- 온라인식품 전문쇼핑몰로서 해외 식품을 판매하며 신선식품부터 고급식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
이름	Fine Food						
도메인	www.finefood.kz						
특징	- 온라인식품 전문쇼핑몰로서 해외 식품을 판매하며 신선식품부터 고급식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						
	<table border="1"> <tr> <td>이름</td> <td>OLX</td> </tr> <tr> <td>도메인</td> <td>www.OLX.kz</td> </tr> <tr> <td>특징</td> <td>- 카자흐스탄 내 2위 온라인 쇼핑몰 2016년 신규 등록 제품 110만 개, 쇼핑몰 신규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 - PC·모바일을 통한 쇼핑몰 조회 수가 20억 뷰(View)를 초과하는 기록을 세움</td> </tr> </table>	이름	OLX	도메인	www.OLX.kz	특징	- 카자흐스탄 내 2위 온라인 쇼핑몰 2016년 신규 등록 제품 110만 개, 쇼핑몰 신규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 - PC·모바일을 통한 쇼핑몰 조회 수가 20억 뷰(View)를 초과하는 기록을 세움
이름	OLX						
도메인	www.OLX.kz						
특징	- 카자흐스탄 내 2위 온라인 쇼핑몰 2016년 신규 등록 제품 110만 개, 쇼핑몰 신규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 - PC·모바일을 통한 쇼핑몰 조회 수가 20억 뷰(View)를 초과하는 기록을 세움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 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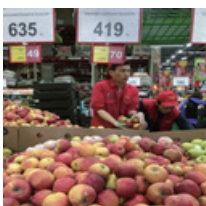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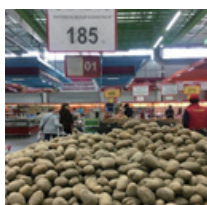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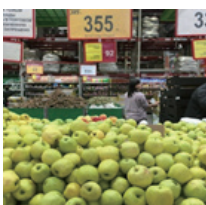
부록

다. 농식품 판매 현황

1) 신선농산물

- 카자흐스탄은 대륙성기후로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밀 등 곡물 생산량은 많으나 과일, 채소류 등 신선식품 생산량이 부족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신선야채의 경우 인근 중국과 CIS국가에서 주로 수입하고, 과일류와 고급 채소류는 독일 등 유럽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 현지·수입 신선농산물

구 분	판매 정보	구 분	판매 정보
	판매처 : 매그넘(Magnum) 제품명 : Braiborn Apple 원산지 : Kazakhstan 가격 : 339KZT/1kg		판매처 : 매그넘(Magnum) 제품명 : Aidaret Apple 원산지 : Germany 가격 : 469KZT/1kg
	판매처 : 매그넘(Magnum) 제품명 : Stajmored Apple 원산지 : Kazakhstan 가격 : 349KZT/1kg		판매처 : 매그넘(Magnum) 제품명 : Red Prince Apple 원산지 : Germany 가격 : 450KZT/1kg
	판매처 : 갈마트(Galmart) 제품명 : Honey Pear 원산지 : Kazakhstan 가격 : 1055KZT/1kg		판매처 : 매그넘(Magnum) 제품명 : Saltanat Apple 원산지 : China 가격 : 419KZT/1kg
	판매처 : 매그넘(Magnum) 제품명 : White potatoes 원산지 : Kazakhstan 가격 : 185KZT/1kg		판매처 : 매그넘(Magnum) 제품명 : Golden Apple 원산지 : Poland 가격 : 355KZT/1kg

* 환율 정보(2016) 1텡게(KZT) = 3.39원

2) 가공식품

- 식품가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카자흐스탄에서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에서 수입된 상품들이 대부분이다.
 - 다이어트, 건강 섹션이 따로 있을 정도로 최근 판매량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할랄식품의 비중은 30%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별도 섹션은 두고 있지 않다.

□ 주식으로 활용하는 베이커리 제품

- 베이커리 제품은 카자흐스탄 식품시장에서 약 10% 비중을 차지하며 오래 전부터 소비자들의 주식으로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요가 전망된다.
 - 현지 밀가루 공급이 원활하여 빵 제조 수급에는 무리가 없지만, 밀 가격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빵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최근 패스추리, 저칼로리 빵, 케이크 등 다양한 종류의 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자들 역시 품질과 디자인을 개선한 빵을 생산하는 추세이다.

□ 유아용 음료와 우유의 높은 관심도

- 유아용 식품 수요와 판매량이 높으므로 유아용 식품 섹션을 매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마련해 두고 있다.
 - 유아용 식품은 특수식품에 해당되어 인증이 까다롭다.¹⁷⁾
- 신선 우유의 품질이 좋지 않아 최근 다농 등 다국적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고 있고, 독일 등으로부터 가공 우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 유아용 음료 및 식품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 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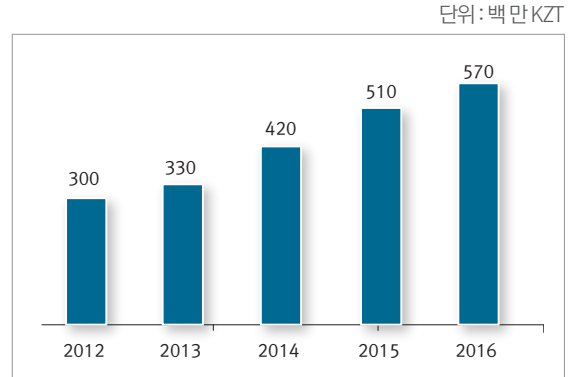
부록

17) Part IV 식품위생제도 1) 식품인증관련제도 TR-CU [연방국가등록] 참조

□ 차 문화 발달에 따른 크림의 매출 성장

- 차 문화가 발달하여 홍차, 커피 등의 수요가 굉장히 높다. 또한 크림(커피조제품)을 첨가하여 차와 함께 마시므로 크림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한국산 크림(커피조제품)은 약 71%의 판매점유율을 기록 하고 있으며 1인당 커피소비량은 한국의 4배 수준이다.

» 크림(커피조제품) 매출 성장률



출처: "Other Dairy Product in Kazakhstan",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6

□ 간장, 케첩 등의 소스류 수입 증가

- 마요네즈 및 소스의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데 러시아는 소스류 제품이 잘 발달되어 있고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며 무관세로 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간장은 중국산 제품의 판매량이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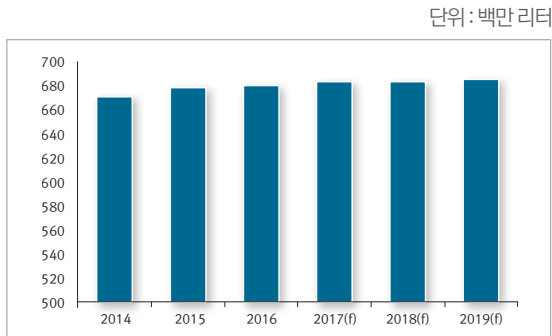
» 현지·수입 가공식품

구 분	판매 정보	구 분	판매 정보
	판매처: 까르프(Carrefour) 제품명: 매기소스 원산지: Germany 가격: 121KZT/250ml (부가세12%별도)		판매처: 까르프(Carrefour) 제품명: 피쉬소스 원산지: USA 가격: 530KZT/473ml (부가세12%별도)
	판매처: 까르프(Carrefour) 제품명: 기꼬망(간장) 원산지: Japan 가격: 2450KZT/296ml (부가세12%별도)		판매처: 까르프(Carrefour) 제품명: Soya Sauce(간장) 원산지: Russia 가격: 660KZT/900ml (부가세12%별도)
	판매처: 메트로(Metro) 제품명: Chim Chim Priprava (잡채소스) 원산지: Kazakhstan 가격: 279KZT/60ml (부가세 별도)		판매처: 메트로(Metro) 제품명: Koreiskaya Priprava (잡채소스) 원산지: Kazakhstan 가격: 229KZT/80ml (부가세 별도)

* 환율 정보(2016) 1팅게(KZT) = 3.39원

□ 주류 중 맥주 판매량이 가장 많고, 뒤이어 위스키임

» 주류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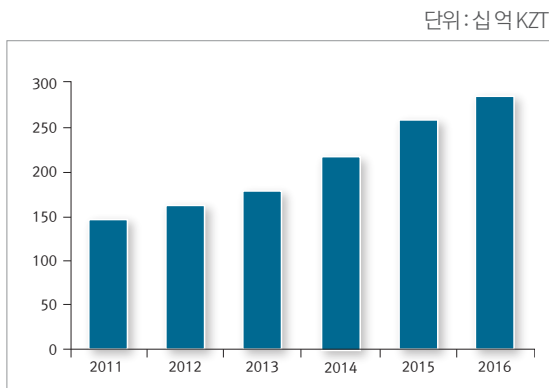
○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국가로서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 시민들이 간헐적으로 술을 소비하고 있으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주: f= BMI forecast

출처: BMI (www.bmiresearch.com)

□ 매출 효자 품목 과자류

» 과자류 매출량



○ 과자류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현지내 생산이 원활하여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한다.

- 한국 과자업체가 인수한 라하트(Rakhat)는 합작 형태이며, 카자흐스탄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자 전문회사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 최근 감자칩, 스니커즈 과자가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다이어트에 좋다는 인식이 퍼져 쌀과자 및 곡물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BMI (www.bmiresearch.com)

» 인기있는 과자류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1) 식습관

□ 육식과 저장음식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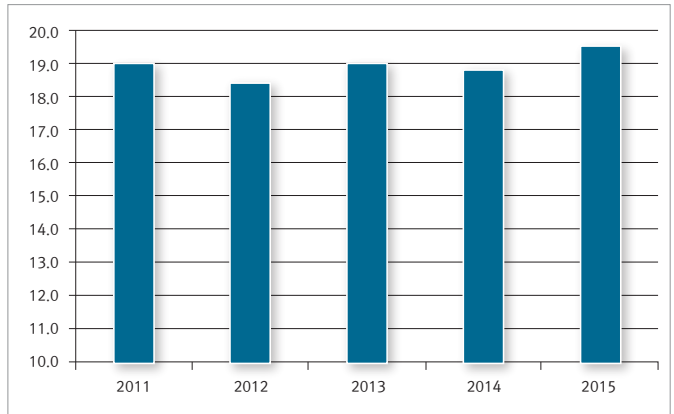
- 말, 양, 소고기를 먹거나 고기를 소금에 절여 먹는 식습관이 있으며, 오랜 유목생활로 인하여 저장하기 쉬운 발효유의 섭취량이 높다. 현대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려는 추세이다.
- 보통 밭(다차)을 가지고 있으므로, 야채와 과일을 자급자족할 뿐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한다. 수확기에 얻은 야채와 과일을 이용하여 저장음식(오이지, 과일, 잼 등)을 만들어 겨울을 나기도 한다.

□ 유제품 섭취 생활화

- 우유를 차에 섞어 마시거나 다양한 음식에 우유를 이용하므로 우유 소비가 꾸준하다. 일반적으로 식품품 매장에서 유제품 소비량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한다.
- 쿠미스¹⁸⁾는 꾸준히 인기를 끌면서 갈증을 느낄 때 물 외의 음료로 쿠미스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Focus group)가 있을 정도로 이제 어느 가게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 되었다.

»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

단위: kg/1개월



출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www.stat.gov.kz)

□ 다민족 국가로 다양한 입맛

- 카자흐스탄은 약 120여 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로서 다양한 식문화가 발달했으며, 세계 각국의 음식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러시아의 샐러드, 터키의 케밥, 우즈베키스탄의 라그만, 고려인의 국시 등이 대표적이다.

18) 말 젖을 발효시켜 만든 저알콜 성분의 발효유

3)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

- 과거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형태에서 점차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 형태로 변해가고 있으나, 가격경쟁력이 더 주요한 요소이다.
- 2016년 식료품의 가격이 9.7%나 상승한 반면 실질소득은 2015년 대비 4.5% 감소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¹⁹⁾ 소득감소로 인해 구매력이 약화되고,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식품 소비의 패턴이 바뀌었다.
- 최근에는 소득 감소 및 물가 상승에 따라 낮은 가격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는 경향이다.
- 알마티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는 약 196 천 KZT이다.²⁰⁾
- 소비자들은 주로 육류, 어류, 과일, 채소, 당류 등의 소비를 줄이는 반면 빵, 우유 및 유제품, 버터, 계란, 감자 등의 소비를 늘렸다.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에 따라 건강식품보다는 생필품 판매량이 늘고 있다.

4) 중상류층 대상 프리미엄형 제품 증가

- 2000년대에 들어서 유럽, 미국 등 자원개발 관련 투자자본의 급증과 건설 붐에 따라 소위 에너지 부자와 같은 부유층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신흥 부유층의 소비를 충족시킬 고품질, 신상품 수요가 늘고 있다.
- 상류층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맛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국적인 맛을 선호하는 추세가 높아져 2000년도 이후부터 유럽식, 선진국가의 가공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출처 : Esentai Gourmet(www.esentai-gourmet.kz)

5) 젊은 층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로 간편 음식 선호

- 젊은이들의 사회 활동 참여가 급증하면서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 이후 빠르게 업무에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바쁜 생활로 인해 편리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인 패스트푸드나 간편한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 알마티에 거주 중인 18~35세 현지인 중 20% 정도가 주 1회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하고, 25~30%의 시민들이 주 2회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 출처 : 카자흐스탄 경제통계회사 ranking.kz

20) 출처 : 알마티 통계국 / CIS국가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다.

6) 할랄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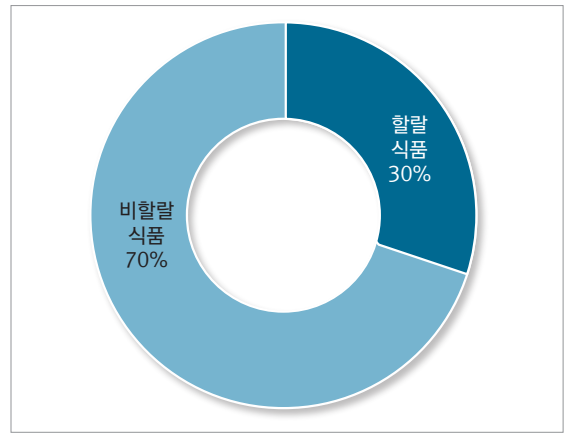
□ 할랄의 범위

- 모든 종류의 채소, 과일, 곡류 등 비 육류성 식품과 모든 종류의 해산물이 할랄에 해당되며, 과자, 빵, 주스 및 가공식품도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이 없어야 한다.
 - 육류는 주로 양, 소, 닭 등 허용된 고기로 한정되며, 허용된 고기는 ‘신의 이름으로(Bis Milah)’라는 기도문을 읊은 뒤, 단칼에 정맥을 끊어 도살하는 등 할랄 방식으로 도축된 것 만 인정한다. 돼지고기는 무조건 하람에 해당된다.

□ 할랄식품 비중

- 2014년 기준 카자흐스탄 내 할랄식품은 전체의 30% 비중을 차지하는데, 카자흐스탄의 무슬림 비율은 약 70%인 것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라 할 수 있다.

» 카자흐스탄 내의 할랄 식품 점유율



출처: www.tengrinew.kz

□ 할랄 식품 동향

- 카자흐스탄이 주로 수입하는 할랄 인증식품으로는 칼바사(소시지), 닭고기 등 육류 제품 외에 우유, 요구르트, 버터 등 유제품과 샌드위치, 만두, 생수, 초콜릿, 물이며 주로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 현재 카자흐스탄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산 식품은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한국의 이슬람교 중앙회(KMF)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라면 등이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할랄 식품은 카자흐스탄 대형마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나 별도의 할랄 식품 코너는 없다.
- 무슬림 신자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할랄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할랄 인증 마크가 있어도 가공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가공육류 제품의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며, 비 무슬림의 경우 할랄 식품의 선입견은 없는 편이다.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가. 농식품 수출입 현황

□ 농식품의 교역액 비중은 타 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

- 카자흐스탄의 2016년 농식품 수출액은 2,078백만 달러, 수입액은 2,986백만 달러로 1,261백만 달러의 적자로 나타났다.
- 농·축산물 가공산업의 기반이 취약하여 신선식품을 수출하고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교역구조로서, 매년 농식품 무역수지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 연도별 농식품 수출입 현황

단위: 천 USD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3,266,842	2,656,452	2,560,019	2,084,550	2,078,397
수입	5,418,203	4,558,854	4,281,008	3,343,575	2,986,492
무역수지	△1,548,172	△1,318,344	△1,425,012	△1,252,007	△1,261,429

* 주 : 카자흐스탄의 2015, 2016년 무역 수치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벨로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사이의 무역통계가 계상되지 않아 수치가 적게 작성되어 있음

출처 : 국제무역센터(ITC, www.intracen.org), aT한국농식품유통공사, KATI(www.kati.net)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근방의 CIS국가들로 농식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 역시 대부분 주변국가로부터 이루어진다. 신선식품은 청과물 생산의 기반이 미비하여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은 당류 및 설탕과자, 곡물제품, 조제식료품을 주로 수입한다.

1) 농식품 수출현황

- 신선식품은 곡물, 곡물가루와 밀 전분 및 채유용 종자를 가장 많이 수출하며, 가공식품 중 담배, 동식물성유지, 조제사료를 많이 수출한다.
 - 곡물의 경우 2016년 기준 수출량이 2012년 대비 약 52% 감소하였으며, 주요 농식품 품목들의 수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 연도별 농식품 수출 순위

단위: 천USD

순위	HS Code	품목	2012	2013	2014	2015	2016
1	10	곡물	1,718,670	1,338,108	1,135,007	832,543	816,968
2	11	곡물의 분과 조분말가루 전분	630,035	587,983	574,904	499,819	518,278
3	12	채유용 종자, 인삼	235,788	187,396	273,656	230,644	203,041
4	24	담배	96,927	93,275	100,508	108,369	110,964
5	15	동식물성 유지	104,902	56,648	62,871	54,058	64,194
6	07	채소	27,132	11,769	15,624	19,825	57,439
7	23	조제사료	80,570	51,148	57,256	44,180	54,417
8	22	음료, 주류 식초	54,707	49,646	53,576	46,844	44,527
9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85,595	56,361	60,538	63,693	40,330
10	17	당류 설탕과자	41,384	42,393	35,773	25,850	33,682
11	18	코코아 초콜릿	51,144	39,483	42,428	27,525	27,440
12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8,070	20,917	31,112	37,096	21,947
13	02	육과 식용 설육	4,113	8,163	25,547	23,376	18,978
14	21	기타의 조제식료품	69,078	41,718	40,208	20,985	13,158
15	09	커피, 차 향신료	9,373	7,773	7,695	8,554	9,548
16	08	과실 견과류	21,196	16,941	13,930	17,509	9,233
17	16	육, 어류 조제품	8,777	5,666	9,786	6,321	7,833
18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9,188	7,835	8,203	6,482	7,512
19	06	산수목. 꽃	1,261	27,599	2,521	1,148	6,475
20	20	채소, 과실의 조제품	4,723	3,115	3,241	3,399	5,958
21	01	산 동물	442	548	3,650	4,832	3,895
22	14	기타 식물성 생산품	2,256	1,236	1,557	950	1,708
23	13	식물성 엑스	1,511	731	428	548	872

* 주 : 카자흐스탄의 2015, 2016년 무역 수치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벨로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사이의 무역통계가 계상되지 않아 수치가 적게 작성되어 있음

출처 : 국제무역센터(ITC, www.intracen.org)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신선식품 수출 상위국가(2016)

단위: 천 USD

곡물		
순위	수출국가	수출액
전 세계		816,968
1	우즈베키스탄	208,599
2	타지키스탄	173,879
3	이란	130,695
4	러시아	76,982
5	중국	52,446

채유용 종자		
순위	수출국가	수출액
전 세계		203,041
1	벨기에	37,182
2	우즈베키스탄	35,310
3	중국	31,007
4	러시아	24,805
5	아프가니스탄	20,149

곡물의 분과 조분말가루 전분		
순위	수출국가	수출액
전 세계		518,278
1	아프가니스탄	329,780
2	우즈베키스탄	130,740
3	타지키스탄	20,576
4	투르크메니스탄	11,572
5	키르기스스탄	11,149

채소		
순위	수출국가	수출액
전 세계		57,439
1	터키	24,352
2	러시아	8,101
3	우즈베키스탄	7,251
4	아프가니스탄	5,234
5	이란	3,376

낙농품, 조란 천연꿀		
순위	수출국가	수출액
전 세계		21,947
1	러시아	14,093
2	타지키스탄	2,752
3	키르기스스탄	2,686
4	투르크메니스탄	1,172
5	아프가니스탄	550

육과 식용 설육		
순위	수출국가	수출액
전 세계		18,978
1	러시아	14,586
2	키르기스스탄	3,367
3	타지키스탄	867
4	우즈베키스탄	101
5	중국	44

출처: 국제무역센터(ITC, www.intracen.org)

- 신선식품 수출은 주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근방의 CIS국가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 EEU 가입 국가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EEU국가간 농산물 수출입 비중이 높으며, 곡물은 주로 중앙아시아로 수출하지만 남부아시아, 중국 등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중이다.
 - 최근 5년 동안 채유용 종자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였다. 채유용 종자의 주요 품목은 아마씨, 평지씨 및 해바라기씨 등이다.

» 가공식품 수출 상위국가(2016)

단위: 천USD

당류, 설탕과자		
순위	수출국가	수출액
전 세계		33,682
1	러시아	21,710
2	타지키스탄	3,480
3	키르기스스탄	3,048
4	우즈베키스탄	1,865
5	중국	1,381

동식물성 유지		
순위	수출국가	수출액
전 세계		64,194
1	중국	22,812
2	우즈베키스탄	21,406
3	키르기스스탄	9,534
4	타지키스탄	5,373
5	아프가니스탄	2,715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순위	수출국가	수출액
전 세계		40,330
1	투르크메니스탄	8,908
2	러시아	8,756
3	키르기스스탄	7,298
4	중국	4,926
5	타지키스탄	4,895

음료, 주류 식초		
순위	수출국가	수출액
전 세계		44,527
1	러시아	23,486
2	키르기스스탄	15,045
3	중국	3,557
4	타지키스탄	920
5	몽골	349

코코아 초콜릿		
순위	수출국가	수출액
전 세계		27,440
1	러시아	16,912
2	키르기스스탄	3,778
3	중국	2,373
4	타지키스탄	1,268
5	우즈베키스탄	857

조제사료		
순위	수출국가	수출액
전 세계		54,417
1	우즈베키스탄	16,303
2	이란	10,745
3	러시아	10,190
4	노르웨이	4,804
5	터키	3,518

출처: 국제무역센터(ITC, www.intracen.org)

- 가공식품 수출 역시 주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CIS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CIS국가 외 수출 대상국은 중국이다.

-가공식품의 종류는 대부분 동물성 유지와 조제사료, 곡물 관련 가공식품이다.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2) 농식품 수입현황

- 신선식품 중 과실과 견과류, 낙농품, 조란을 가장 많이 수입하며 가공식품 중에서는 당류 및 설탕과자, 곡물제품과 빵류, 기타의 조제식료품 등을 주로 수입한다.

» 연도별 농식품 수입 순위

단위: 천 USD

순위	HS Code	품목	2012	2013	2014	2015	2016
1	08	과실, 견과류	648,980	596,873	606,277	455,212	417,185
2	17	당류 설탕과자	395,328	337,500	339,086	250,185	265,962
3	19	곡물, 곡분의 조제품과 빵류	393,686	324,296	325,493	292,439	237,310
4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460,287	415,315	410,334	241,714	230,791
5	21	기타의 조제식료품	460,887	376,261	332,349	241,902	215,142
6	24	담배	253,604	230,389	208,219	202,535	209,736
7	18	코코아 초콜릿	292,210	296,718	253,473	193,230	184,272
8	15	동식물성 유지	251,497	186,840	177,843	183,548	183,585
9	22	음료, 주류 식초	417,776	307,145	282,734	182,169	167,896
10	02	육과 식용설육	445,191	307,410	252,621	200,002	160,285
11	20	채소, 과실의 조제품	352,162	244,376	243,691	197,372	157,704
12	09	커피, 차 향신료	176,900	160,598	142,213	122,986	124,718
13	07	채소	251,875	265,292	251,531	224,480	123,280
14	16	육, 어류 조제품	146,960	139,459	126,434	89,436	72,117
15	23	조제사료	83,779	86,157	82,838	63,481	62,688
16	06	산수목, 꽃	84,264	79,484	56,596	47,889	60,257
17	12	채유용 종자	110,726	63,712	59,367	53,153	52,959
18	11	곡물의 분과 조 분말가루 전분	31,041	32,293	27,929	26,335	20,019
19	01	산 동물	97,338	66,420	58,201	25,866	19,485
20	10	곡물	37,467	26,645	28,639	38,884	11,139
21	13	식물성 엑스	13,762	7,531	9,472	6,098	6,422
22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10,141	7,154	4,304	3,983	2,680
23	14	기타 식물성 생산품	2,342	986	1,364	676	860

출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www.kati.net)

» 신선식품 수입 상위국가(2016)

단위: 천USD

과실, 견과류		
순위	수입국가	수입액
전 세계		417,185
1	우즈베키스탄	227,410
2	중국	46,477
3	폴란드	30,160
4	이란	20,315
5	에콰도르	17,163

낙농품, 조란 천연꿀		
순위	수입국가	수입액
전 세계		230,791
1	러시아	100,449
2	우크라이나	37,778
3	벨라루스	30,966
4	프랑스	13,587
5	키르기스스탄	10,518

육과 식용 설육		
순위	수입국가	수입액
전 세계		160,285
1	미국	81,689
2	러시아	35,616
3	우크라이나	26,274
4	폴란드	4,243
5	벨라루스	3,728

커피, 차, 향신료		
순위	수입국가	수입액
전 세계		124,718
1	케냐	45,551
2	인도	38,989
3	러시아	24,230
4	스리랑카	2,843
5	중국	2,419

채소		
순위	수입국가	수입액
전 세계		123,280
1	우즈베키스탄	67,918
2	중국	25,661
3	타지키스탄	10,400
4	터키	5,077
5	러시아	4,685

산수목, 꽃		
순위	수입국가	수입액
전 세계		60,257
1	네덜란드	16,211
2	에콰도르	12,298
3	터키	10,527
4	우즈베키스탄	4,892
5	이탈리아	3,891

출처: 국제무역센터(ITC, www.intracen.org)

- 우유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신선우유 생산량이 부족하여 유제품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육류의 경우 가금육을 중심으로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한다.
 - 과일류의 소비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생산량이 국내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EEU 내 생산량이 적은 바나나, 토마토, 사과, 포도 등을 주로 수입한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 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가공식품 수입 상위국가(2016)

단위: 천 USD

당류 설탕과자		
순위	수입국가	수입액
전 세계		265,962
1	브라질	136,227
2	러시아	49,274
3	우크라이나	30,326
4	아제르바이잔	10,016
5	쿠바	9,688

기타의 조제식료품		
순위	수입국가	수입액
전 세계		215,142
1	러시아	125,713
2	중국	11,083
3	미국	8,496
4	말레이시아	8,372
5	독일	7,647

동식물성 유지		
순위	수입국가	수입액
전 세계		183,585
1	러시아	149,978
2	말레이시아	16,366
3	우크라이나	6,336
4	터키	1,691
5	스웨덴	1,381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순위	수입국가	수입액
전 세계		237,310
1	러시아	150,617
2	우크라이나	44,561
3	스위스	15,101
4	키르기스스탄	5,604
5	독일	3,453

코코아 초콜릿		
순위	수입국가	수입액
전 세계		184,272
1	러시아	107,608
2	가나	28,526
3	우크라이나	22,040
4	독일	9,333
5	터키	5,773

음료, 주류 식초		
순위	수입국가	수입액
전 세계		167,896
1	러시아	70,259
2	그루지아	16,591
3	영국	11,285
4	우크라이나	10,012
5	버뮤다	1

출처: 국제무역센터(ITC, www.intracen.org)

- 가공식품의 경우 무관세 혜택으로 저렴한 러시아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며, 러시아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재수입하는 경우도 있다.
 - 한편 다국적기업의 제품인 경우, 무관세 혜택이 있고 허가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이유로 러시아를 통해 수입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나. 한국對 카자흐스탄 농식품 수출 현황

» 한국對 카자흐스탄 농식품 수출 품목

단위: USD

순위	HS Code	품목	2015	2016	연간전년대비금액 (%)
1	2402.20.1000	필터담배	14,804,003	11,286,924	△24
2	2106.90.9010	커피 프리머	5,999,861	4,145,397	△31
3	2106.90.9099	조제품 기타	2,021,574	2,547,971	26
4	1902.30.1010	라면	2,418,041	1,690,025	△30
5	1704.10.0000	추잉껌	392,841	746,427	90
6	2103.90.9090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467,183	617,323	32
7	9023.01.090	인스턴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367,530	537,610	46
8	1905.90.1090	베이커리 제품	572,201	506,241	△12
9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331,215	395,177	19
10	2101.12.9010	밀크대용물함유조제품	321,009	269,596	△16
11	2922.41.3000	라신의 염과 라신에스테르의 염	0	206,595	0
12	2202.90.9000	음료	616,954	165,230	△73
13	2101.12.1000	인스턴트커피	14,048	157,841	1,024
14	2103.10.0000	간장(soya sauce)	172,134	144,858	△16
15	1703.90.9000	당밀(사탕수수 이외 추출/주정 제조용 이외 기타)	146,982	143,022	△3
16	1806.31.1000	초콜릿 및 초콜릿 과자	213,039	128,192	△40
17	1902.19.1000	국수	272,585	111,329	△59
18	1905.90.1010	식빵(bread)	0	103,310	0
19	1902.19.2000	당면	96,226	101,298	5
20	1701.99.0000	자당	163,588	86,216	△47
21	1209.91.1010	양파종자	200,000	80,468	△60
22	2101.11.1000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197,284	78,826	△60
23	2007.99.9000	과실, 견과류 퓨레, 페이스트(감귤류 이외 기타)	10,624	72,978	587
24	2103.90.1010	된장	157,879	65,774	△58
25	2208.90.4000	소주	38,544	50,529	31
*농식품 합계			49,029,966	34,138,593	△30

*주: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만 해당

출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www.kati.net)

-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필터담배가 1,128만 달러로 가장 비중이 컸으나, 커피 프리머, 조제품 기타, 라면, 추잉껌 등 신선식품이 아닌 가공식품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 신선식품 중 과일을 가장 많이 수입하나 검역 협상이 완료된 신선식품은 사과, 배, 감자 및 양배추 종자뿐이다.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가. 농식품 정책 일반사항

- 「카자흐스탄 2050전략」에 따르면 식품 가공업 및 유통업 육성이 핵심과제
 - 대부분의 곡물은 자급자족이 가능하지만, 생산이 부족한 야채, 우유 등 신선식품과 가공기술이 부족한 가공식품은 현지생산·가공품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 국가 정책적으로 식품가공업을 발전시켜 유라시아 경제연합뿐 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Made in Kazakhstan”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향후 5년 내 식품 수출액을 거의 절반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민소득 증대에 힘입어 GMO식품 등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식품에 관한 GMO 규제와 유기농 인증제도 등 각종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나. 정책 동향

1)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정책

- GMO 규제에 있어 철저한 사전예방 원칙을 두며, 국가DB에 등록된 GMO식품에 한하여 수출입을 허용
 - 정부는 유전자 조작 분야에 관한 국가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그 규정은 GMO생산과 사용, 위험도 분석, GMO 수출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카자흐스탄 내 GE²¹⁾ 작물에 대한 상업적인 생산은 없으며, 다른 국가에 수출이 가능하지 않다. 한편 GE작물 또는 제품의 수입은 허용되지만, 관세동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입하는 모든 GE곡물과 유지는 수입하기 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제품의 비중은 0.9%를 초과할 수 없다.
 - GMO식품은 라벨링에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한다.
 - GMO 표기 사항은 GMO 함유량이 0.9%이상인 식품에만 적용된다.
 - 영문 기재 사례 : 'Genetically modified food', 'Foods produced from or using GM organisms', 'Food that contains GMO components'

2) 유제품 및 육류제품에 대한 기술규제 과도기 만료

- 관세동맹의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33/2013)’와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기술규제(TR CU 034/2013)’에 적용되었던 과도기가 2015년 12월 31일 만료되었다. 이에 2016년 1월 1일부터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에서 유통되는 모든 유제품 및 육류제품은 각 규제에 의해 정립된 강제 요건들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기술규제 요건들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관세동맹 회원국들의 시장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품 유통 마크 ‘EAC’로 라벨링 표기를 해야 한다.

21) GE(Genetic Engineering : 유전 공학)

3) 유기농식품 인증 도입

□ 유기농식품 인증 도입, 'BIO'와 'ORGANIC' 등 용어 규정²²⁾

- 유기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카자흐스탄 농업부는 유기농식품인증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정하고, 유기농식품 인증 시험소를 설립하였다.
 - 식품 검역 관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 정책을 마련 중이며, 현재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는 곳은 약 30개 업체로, 대부분 코스타나이 주에 있다.

» 유기농식품 생산 요구 사항(일부)

- 가) 건강하고 안전한 재료(동물, 식물)를 사용
- 나) 유기농식품 생산과 판매 규정에서 허용되는 첨가물 이외의 합성물질, 살충제, 호르몬, 항생제 미사용
- 다) 유기농식품 생산과 판매 규정에서 허용되는 첨가물 이외의 식품 첨가물 미사용
- 라) GMO 미사용
- 마) 유기농식품 생산 인증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적합성 인증서를 받아야 함
- 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업체만 관련 식품 표시 가능
- 사) 유기농식품 생산/판매에 관한 규정이 허용되는 마크, BIO, ECO를 포함한 모든 마크들이 허용
- 아) 상표권에 따라 보호되는 표시(마크)와,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표시(마크)는 금지

» 유기농 식품 인증 마크



22)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USDA GAIN report, 12/30/2015에서 참고가능하다.

가. 한국식품의 판매동향

□ 한국 식품점 판매 동향

- 한국식품점에는 라면, 음료, 과자류, 간장 등 소스류, 유자차 등 차류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 최근 쌀과자의 수요가 높은 편이며, 떡볶이, 만두같은 즉석 조리식품의 시식판촉 시 잘 팔리는 경향이 있어 식품점내에서 시식 판촉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
- 과일 맛 우유의 경우 한국 내 가격은 약 1,000원 수준이나, 현지에서는 항공·물류비 등이 더해져 가격이 약 3,000원에 이르기 때문에 중상류층 이상에게 주로 판매되고 있다.
- 한국식품은 가격이 높아 일반 현지인은 구매가 어려우므로 현지 상위 10%의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 한국식품점의 구매고객은 대부분인 80%가 현지인이고, 20%가 한국 교민이다.
- 한국식품점은 알마티에 약 30여 개소가 있는데, 한국 교민이 약 10개, 고려인이 약 20여 개를 운영 중이다.
 - 고려인의 매장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고,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식품점은 다소 규모도 크고 제품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 수도인 아스타나에는 교민과 인구가 적어 약 4개의 한국식품점이 있다.
- 현지의 간장과 된장 등의 양념으로 기본소스를 사용하는 식생활 관습이 있어 장류에 대한 현지인의 수요가 있는 편이다.
- 영세한 한국식품점의 경우 냉동·냉장 컨테이너 수입의 경우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냉장이 필요한 제품은 수입이 거의 어려우므로 일부 품목은 최근에 주로 항공을 통해 핸드캐리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 한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한국식품



□ 현지 대형 유통업체 한국식품 판매 동향

- 한국에서 유통되는 과자, 소스, 면, 음료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라면 코너가 있을 정도로 한국 제품의 비중이 높다. 가격대는 타국 제품보다는 높은 편이며, 대기업의 제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 신선식품의 경우 유통기한과 물류비용의 문제로 한국산 신선식품은 판매되지 않으며, 가공식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 판촉행사는 대부분 수입업체가 주관하여 시식 행사, 홍보 등을 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가 주관하여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적다.
- 한국 라면의 인기가 높고, 다양한 대기업 라면이 판매되고 있다. 봉지라면과 컵라면 모두 수요가 많은 편이다.

» 대형유통매장 전면에 진열되어 있는 한국식품



» 한국식품과 경쟁상품 가격 비교(과자)

구분	판매 정보	구분	판매 정보
	판매처 : 갈마트(Galmart) 제품명 : ○○○과자 원산지 : Korea 가격 : 335KZT/100g (부가세 별도)		판매처 : 갈마트(Galmart) 제품명 : Barni 원산지 : Kazakhstan 가격 : 575KZT/105g (부가세 별도)
	판매처 : 까르프(Carrefour) 제품명 : ○○○과자 원산지 : Korea 가격 : 405KZT/80g (부가세 12% 별도)		판매처 : 메트로(Metro) 제품명 : Biskrem 원산지 : Turkey 가격 : 379KZT/185g (부가세 별도)
	판매처 : 메트로(Metro) 제품명 : ○○○과자 원산지 : Korea 가격 : 239KZT/47g (부가세 별도)		판매처 : 갈마트(Galmart) 제품명 : BeVita 원산지 : Greece 가격 : 250KZT/47g (부가세 별도)

* 환율 정보(2016) 1팅게(KZT) = 3.39원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한국식품과 경쟁상품 가격 비교(프림)

구 분	판매 정보	구 분	판매 정보
	판매처 : 까르프(Carrefour) 제품명 : ○○○프림 원산지 : Korea 가격 : 675KZT/500g (부가세 12% 별도)		판매처 : 메트로(Metro) 제품명 : 분말크림 원산지 : Turkey 가격 : 709KZT/500g (부가세 별도)
	판매처 : 까르프(Carrefour) 제품명 : ○○○○프림 원산지 : Korea 가격 : 751KZT/500g (부가세 12% 별도)		판매처 : 메트로(Metro) 제품명 : 커피크림 원산지 : Netherlands 가격 : 209KZT/100g (부가세 별도)

* 환율 정보(2016) 1팅게(KZT) = 3.39원

» 한국식품과 경쟁상품 가격 비교(음료)

구 분	판매 정보	구 분	판매 정보
	판매처 : 갈마트(GalMart) 제품명 : ○○○○음료 원산지 : Korea 가격 : 455KZT/500ml (부가세 별도)		판매처 : 메트로(Metro) 제품명 : Gracio 원산지 : Kazakhstan 가격 : 369KZT/100ml (부가세 별도)
	판매처 : 갈마트(GalMart) 제품명 : ○○○○음료 원산지 : Korea 가격 : 455KZT/500ml (부가세 별도)		판매처 : 까르프(Carrefour) 제품명 : Gerber 원산지 : Kazakhstan 가격 : 215KZT/90ml (부가세 12% 별도)
	판매처 : 갈마트(GalMart) 제품명 : ○○알로에 음료 원산지 : Korea 가격 : 455KZT/500ml (부가세 별도)		판매처 : 메트로(Metro) 제품명 : Agusha 원산지 : Kazakhstan 가격 : 159KZT/200ml (부가세 별도)
	판매처 : 갈마트(GalMart) 제품명 : ○○알로에 음료 원산지 : Korea 가격 : 540KZT/500ml (부가세 별도)		판매처 : 메트로(Metro) 제품명 : Fuse-tea(딸기맛) 원산지 : Kazakhstan 가격 : 129KZT/500ml (부가세 별도)
	판매처 : 까르프(Carrefour) 제품명 : ○○○음료 원산지 : Korea 가격 : 339KZT/200ml (부가세 12% 별도)		판매처 : 메트로(Metro) 제품명 : Fuse-tea(녹차맛) 원산지 : Kazakhstan 가격 : 259KZT/1000ml (부가세 별도)

* 환율 정보(2016) 1팅게(KZT) = 3.39원

» 한국식품과 경쟁상품 가격 비교(라면)

구분	판매 정보	구분	판매 정보
	판매처 : 매그넘(Magnum) 제품명 : ○라면 원산지 : Korea 가격 : 285KZT/120g		판매처 : 매그넘(Magnum) 제품명 : Rolton Noodle 원산지 : Russia 가격 : 153KZT/65g
	판매처 : 매그넘(Magnum) 제품명 : ○라면(컵) 원산지 : Korea 가격 : 329KZT/65g		판매처 : 매그넘(Magnum) 제품명 : Big Bon Chicken Noodle 원산지 : Russia 가격 : 197KZT/85g
	판매처 : 갈마트(Galmart) 제품명 : ○○○○라면 원산지 : Korea 가격 : 400KZT/120g		판매처 : 매그넘(Magnum) 제품명 : Zolotistaya zhatva Noodle 원산지 : Russia 가격 : 49KZT/65g
	판매처 : 갈마트(Galmart) 제품명 : ○라면(컵) 원산지 : Korea 가격 : 390KZT/62g		판매처 : 매그넘(Magnum) 제품명 : Maggi Spice 원산지 : Russia 가격 : 249KZT/30g

* 환율 정보(2016) 1텡게(KZT) = 3.39원

□ 한국식품 수입 동향

- 2013~2014년 호경기에는 한국식품 수입량이 많았으나, 최근 3~4년간은 유가 하락과 환율 약세로 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가 급속히 줄어들어 수입물량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이다.
- 중국산 제품은 저렴한 물류비·제조비용으로 수입가격대가 낮으므로, 최근 소득 감소에 따라 가격을 중요시하는 현지인의 소비 경향에 맞추어 수입량이 많은 편이다.
- 수입업체는 물류운송기간이 길고 통관기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유통기한이 긴 식품이나 단일품목으로 대량 수입하는 식품을 선호한다.
-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수입액이 가장 높았던 농식품 품목은 단백질 농축물(HS CODE 2106.10)로 조사되었다. 한국산 수입액 2위를 차지한 제품은 기타 조제 식료품(HS CODE 2106.90)으로 해당 품목에는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콜라베이스, 당시럽, 인삼제품류, 백삼제품류, 홍삼제품류, 김 등이다.
- 이 외에도 수입액이 높았던 품목 중에서는 인스턴트 면류, 비스킷,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인삼음료, 과실주스 음료, 식혜 등을 포함될 수 있어 한국산 스낵 및 음료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나. 판매확대 방안²³⁾

1) SWOT 분석을 통한 최적 전략

□ SWOT

기회(Opportunity)	강점(Streng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 ▶ 한국기업 및 고려인 등 긍정적요인에 의한 한국상품에 대한 관심 증대 ▶ 제조업 기반이 약해 자체 총당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수입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낮음 ▶ 고품질, 웰빙 등에 대한 소비성향 확대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식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고품질이라는 이미지가 있음 ▶ 현지마켓에서 다양한 한국식품을 쉽게 접할수 있음(접근성 유리) ▶ 선두기업들의 시장정책으로 한국상품 이미지 상승 ▶ 고려인을 활용한 현지시장 진출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
위협(Threat)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저가 상품과 무관세 혜택을 받는 러시아 상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불리 ▶ 저유가 및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식품 수요감소 ▶ 현지 OEM 생산에 따른 수출기회 감소 ▶ 유럽의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치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기간 장기소요 및 물류비용 부담 과중(냉동, 냉장) ▶ 수입통관 시 인증절차복잡 및 추가 비용 요구 ▶ 적은 인구로 시장 규모가 작음

□ 최적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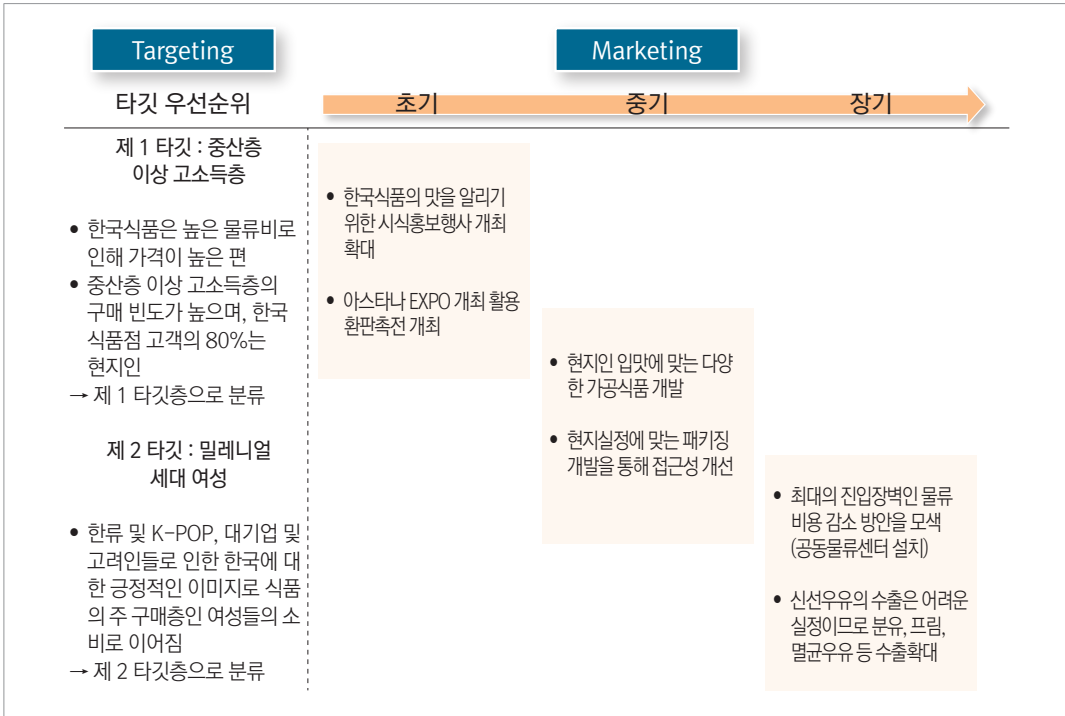
WT전략(약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인의 수요에 맞는 패키징 등 포장 개선 지원 ▶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공동물류 센터 운영
ST전략(강점-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인 입맛에 맞는 현지화상품개발 ▶ 중상류층 고객 대상 고급프리미엄 마켓 판매처 확대
SO전략(강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식품의 판촉전 개최 등 프로모션 확대 ▶ 한국식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판로개척
WO전략(약점-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EU FTA체결 및 EEU통관조약 신규체결을 통한 무역환경 개선 ▶ 신선 검역 품목협상 확대

Key Word(핵심단어)

현지화	접근성	한국에 대한 인지도	가격경쟁력	중상류층
-----	-----	------------	-------	------

23) 상기 제시된 판매확대 방안은 현지 수입업체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방안으로 국가의 지역적 특성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님

» 판매확대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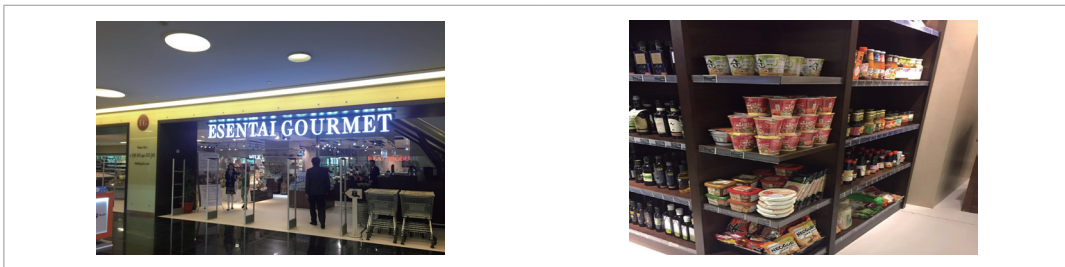
2) Targeting



① 제 1타겟: 중산층이상 고소득층

- 한국식품은 높은 물류비로 인해 가격이 높은 편으로, 주로 고급 식품점 및 대형 마트에서 많이 판매된다. 한국식품의 경우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구매빈도가 높은 편이며, 한국식품점 고객의 80%가 현지인이다.

» 프리미엄 마켓 「ESENTAI GOURMET」 에 입점된 한국식품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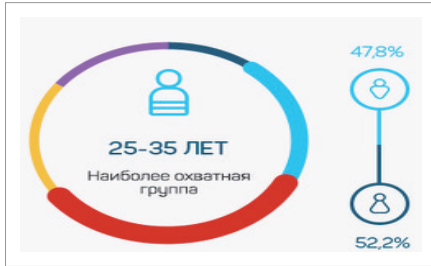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② 제2타겟: 밀레니얼²⁴⁾ 세대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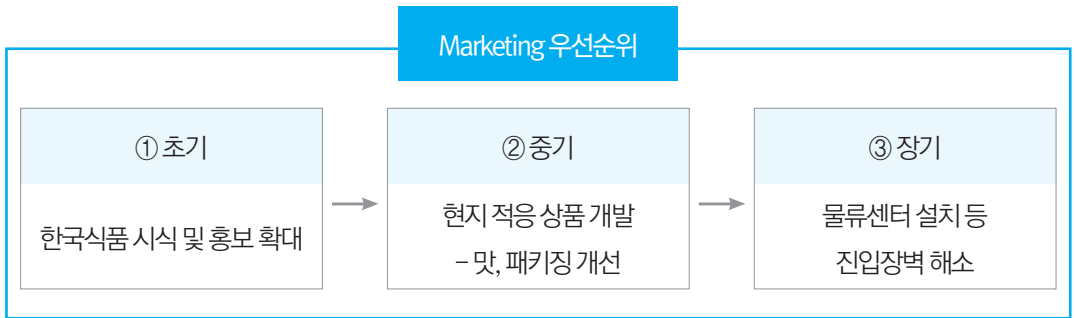


출처: www.forbes.kz

-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K-pop과 한국 드라마로 인해 한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기업 및 고려인들로 인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식품의 주 구매층인 주부 및 젊은 여성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한국 식품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 온라인 이용률이 높은 연령으로, 한류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을 수 있는 20~30대 여성을 타겟으로 선정

3) Marketing 제언



① 초기: 한국식품 판촉전 개최 확대

- 한국식품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시식판촉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식품의 맛을 알리고 입소문마케팅 홍보 (떡볶이, 만두 등 즉석 조리식품)
- 한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현지인용 메뉴 레시피(라면, 찌개)를 더욱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개발 후 홍보한다. (간장, 된장 등을 양념의 기본 베이스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고품질, 프리미엄 한국 간장의 수요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2017년 6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아스타나엑스포가 개최(115개국 참가, 93일간)된다. 글로벌 교류의 장이 될 아스타나엑스포를 한국식품의 판촉홍보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24) 밀레니얼(1980-2000년에 태어난 인구)

② 중기: 현지 적응 상품 개발

- 초콜릿, 케이크, 과자류를 즐겨 먹는 카자흐스탄 식문화를 활용하여 건강에 좋은 쌀과자, 김스넵 등이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현지화 된 상품을 개발 필요
- 육류 수요가 많은 현지 특성을 활용하여 현지인 입맛에 맞는 불고기 소스 등 진입품목 개발
- 만두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냉동식품에 대한 물류비용 부담이 과중하므로 현지인이 좋아하는 고소하고 느끼한 맛을 내기 위해 콩으로 만든 식재료로 고기 맛을 보완하는 등의 진출 방안 고려
- 가정에서 14kg규격의 상업용 된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단계부터 현지인의 수요에 맞는 포장 및 패키지 개선
- P사 도시락라면의 사각형 용기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안정성이 뛰어나 현지인으로부터 인기가 높다는 사례를 활용하여 현지인의 취향에 적합한 맞춤형 포장 개발

③ 장기: 최대의 진입장벽인 물류비용 감소 방안을 모색

- 벌크 수입하여 현지내 재포장을 위한 가공장 및 수입업체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설치 등 다양한 물류비 절감 방안을 마련
- 카자흐스탄은 유제품에 관심이 많지만 현지 우유의 품질이 낮아 다국적기업이 많이 진출. 유통기한 및 냉장 컨테이너 확보 등의 문제 때문에 신선우유의 수출은 어려운 실정으므로 분유·프림·멸균우유 등의 수출 확대를 모색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 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Part III

| 수입통관 제도 |

01. 수입통관

02. 식품 검사

03. 라벨링

04. 진입장벽



Kazakhs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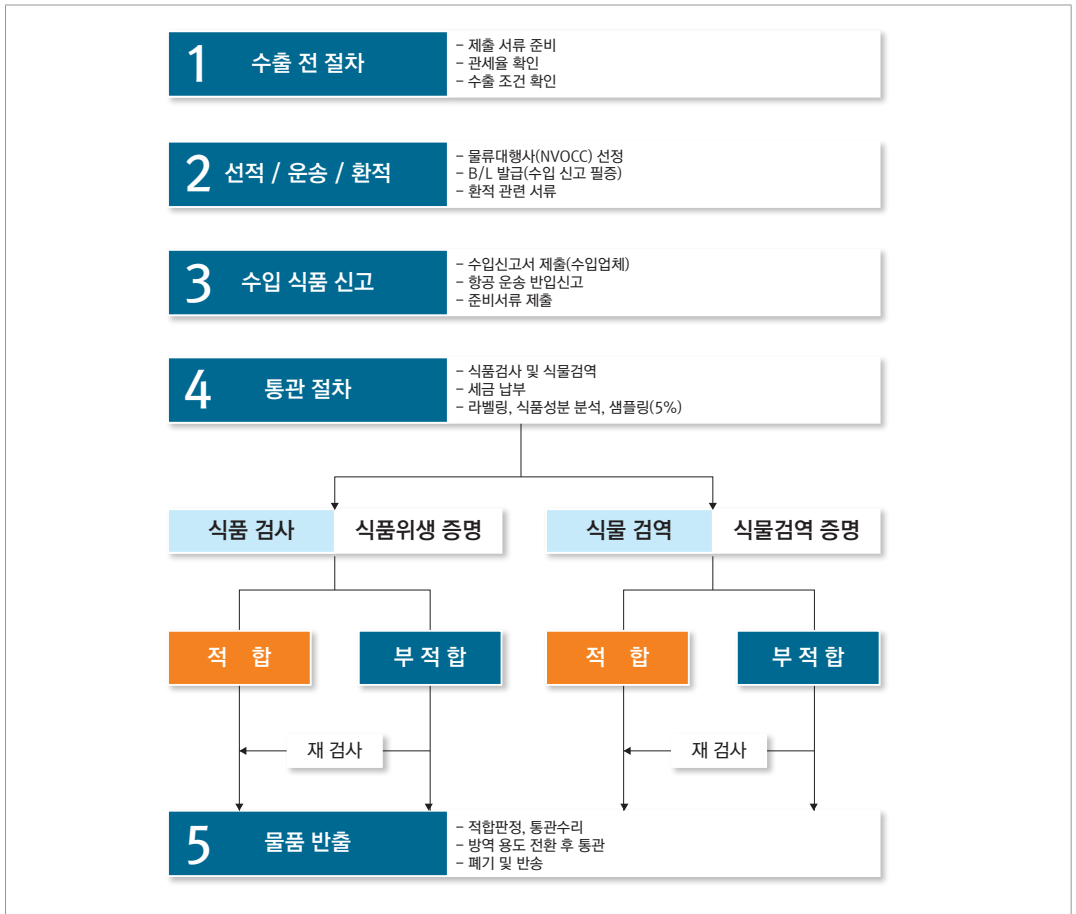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01 | 수입통관

가. 수입통관 개요

» 수입통관 절차



- 러시아, 벨라루스와 2010년 관세동맹 이후 단일 통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서류를 구비한 수입업체나 통관 브로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전에는 모든 세관 절차는 브로커(중개인)를 통해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EEU 법에 의거하여 브로커 개입 없이 관세청 및 소속기관을 통해 세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고서에 기입된 정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고자에 있으며, 통관은 도착지에서 보통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2~4일 소요된다. 수입물품들은 세관신고 신청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에 반출된다.

□ 식품 수입 관련 유의사항

- 2015년 말 WTO 가입 후 국제 기준에 따라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는 중이다. 유라시아 경제연합(EEU)의 회원국으로서 EEU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SPS(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를 OIE(국제 수역 사무국), IPPC(국제 식물보호협약), Codex(국제식품규격)과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 아직까지는 전자면장을 포함한 EDI가 구축되지 않았기에 통관을 위해서는 B/L 건당 인력이 필요하다. 통관 창구마다 세관원을 접촉해야 하므로 통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한다.
 - 수입면장에 간이 수입인증 도장을 대체 사용하여서 30일 이내 해당 증명서를 발급 받아 세관에 제출을 해야 하며 다시 완전 수입통관 도장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간이 수입기간과 완전 수입기간 사이에는 제품의 사용과 판매가 불가능하다.
- 육가공식품이 주식인데, 정부차원에서 생활물가 안정화 차원에서 국민의 주식으로 취급되는 제품은 수입 제품이라도 수입관세를 낮게 책정한다.
 - 가공식품은 경우 제1순위 수입통관 제품으로써, 주말·연휴에 상관없이 도착 후 세관 냉동창고로 이전되며, 인증서 발급 절차 선행 후 통관 시 해당 인증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 통관법상 육류, 육가공 제품, 유가공 제품은 반드시 100% 화물 실질검사를 실시하며, 소시지의 경우 관세 5~30%, 또는 0.2유로/kg~0.79유로/kg, 부가세 12%가 부과된다. 통관 완료 전 선 픽업을 위해 중앙세관으로부터 선택업허가서를 발급 받아 지역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 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수입 식품에 대한 카자흐스탄 규제 기구

규제 기구 명칭	주요업무
The Committee of Veterinary Control and Surveill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카자흐스탄 내의 수의 현황을 감독하고, 동물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집행함
The Agricultural State Inspec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카자흐스탄 내의 식물 위생 현황을 감독하고, 식물 건강 상태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집행함
The Committee on Consumer Rights Protec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식품 위생을 담당함. 법규에 위배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함
The Committee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투자 발전국에 속한 부서로 제품 평가, 공정, 서비스 등을 관리하며, 해당 물품이 카자흐스탄의 국가 기준, 인증 표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함
The Committee of State Revenue	재무부에 속하며, 관세 시스템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의 영리활동을 규제하며 세관 업무를 담당함
The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대외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비관세 규정을 담당하며 수입 라이선스, 수입 할당량 등을 결정함

출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Narrative", USDA, 2017

나. 수입 통관 절차

- 내륙 국가라는 특성상 수입식품은 해상운송을 이용하여 중국, 혹은 러시아까지 이동한 후에 내륙운송이나 항공운송으로 환적하므로 카자흐스탄까지는 복합운송을 이용한다.

1) 수입신고 전

가) 수출자/수입자 필요서류

수출자	- 수출자 측 위생증명서 - 수출자 측 수의학 허가서 - 생산 공장에서부터의 인체에 해가 없다는 증빙 서류
수입자	- 제품 위생증명서(수도 아스타나 위생청 발급) - 포장재에 대한 위생증명서(수도 아스타나 위생청 발급) - 수의학 허가서 - 방사&방역&항균 허가서(통관세관에서 바로 발행) - 수입회사의 육가공 식품 판매 허가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품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상이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제출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 연방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 수의검역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 - 제조업체로부터 GMO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서류
--

① TR-CU(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 품목에 따라 적합성 DoC, 연방 국가등록, 위생검역증으로 나뉘며, 식품의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다음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상품이 국제협약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국제협약에 의해 관세가 낮게 부과된 경우)
- 카자흐스탄 정부가 서명 동의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경우
-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을 할 때 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 원산지의 기준은 그 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된 생산 기준과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 상품의 원산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최소허용기준에 따라 제품의 가공 또는 제조가 이뤄진 국가로 한다.

- 상품의 처리 결과로 인해 상품의 HS코드 4자리 중 한 자리가 변경된 경우
- 상품에 대해 특정 국가의 특화 산업, 기술이 행해진 경우
- 상품의 가격이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③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 : 카자흐스탄은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을 요하고 있다.

④ 수의인증서(Veterinary certificates) : 육류 및 가공류 식품의 수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수의인증서가 요구된다.

나) 관세율 확인

① HS코드에 따른 관세율 확인

- 카자흐스탄은 관세법 개정 절차를 세계 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국제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코드체계 (Harmonized Tariff system)에 맞추었다. 이 관세율에는 상품별 관세율은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카자흐스탄 국고수입위원회(www.kgd.gov.kz/trned)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존 CU HS코드를 보완·변경하여, 통일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를 개발하여 전환하므로, HS코드 확인에 유의해야 한다.

» 카자흐스탄 수입 부대조건

	서류준비	통관수속	항만, 터미널 처리	내륙운송
소요기간(일)	21	9	4	33
소요금액(USD)	310	425	330	4,200

출처 : "Doing Bussiness 2015", World Bank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HS코드에 따른 관세율 확인방법

Информационно-Поисковая Система ТН ВЭД Онлайн - Казахстан, ТС, ЕАЭС Комит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оход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од ТН ВЭД или текст: Искать ▶ ▲ актуальный (2017) Настройки Справка

Дерево ТН ВЭД 2017

I	01-05	Живые животные; продукты животн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II	06-14	Продукты растительн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III	15	Жиры и масла животного или растительн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и продукты их расщепления; готовые пищевые жиры; воски животного или растительн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IV	16-24	Готовые пищевые продукты; алкогольные и безалкогольные напитки и уксус; табак и его заменители
V	25-27	Минеральные продукты
VI	28-38	Продукция химической и связанных с ней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VII	39-40	Пластмассы и изделия из них; каучук, резина и изделия из них
VIII	41-43	Необработанные шкуры, выделанная кожа, натуральный мех и изделия из них; шорно-седельные изделия и упряжь; дорожные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дамские сумки и аналогичные им товары; изделия из кишок животных (кроме волокна из фиброина шелкопряда)
IX	44-46	Древесина и изделия из нее; древесный уголь; пробка и изделия из нее; изделия из соломы, альфы или из прочих материалов для плетения; корзиночные и другие плетеные изделия
X	47-49	Масса из древесины или из других волокнистых целлюлоз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егенерируемые бумага или картон (макулатура или отходы); бумага или картон и изделия из них
XI	50-63	Тексти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и текстильные изделия
XII	64-67	Обувь, головные уборы, зонты, солнцезащитные зонты, трости, трости-сиденья, хлысты, кнуты и их части; обработанные перья и изделия из них; изделия из человеческого волоса
XIII	68-70	Изделия из камня, гипса, цемента, асбеста, слюды или аналогичных материалов; керамические изделия; стекло и изделия из него
XIV	71	Жемчуг природный или культивированный, драгоценные или полудрагоценные камни, драгоценные металлы, металлы, плакированные драгоценными металлами, и изделия из них; бижутерия; монеты
XV	72-83	Недрагоценные металлы и изделия из них
XVI	84-85	Машины,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механизмы; электротехниче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х части; звукозаписывающая и звуковоспроизводящая аппаратура, аппаратура для записи и воспроизведения телевизионного изображения и звука, их части и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XVII	86-89	Средства назем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летательные аппараты, плавучие средства и относящиеся к транспорту устройства и оборудование
XVIII	90-92	Инструменты и аппараты оптические, фотографические,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ие, измерительные, контрольные, прецизион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или хирургические; часы всех видов,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их части и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XIX	93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их части и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XX	94-96	Разные промышленные товары
XXI	97	Произведения искусства, предметы коллекционирования и антиквариат

* 상위 HS CODE칸에 해당 식품의 카자흐스탄 HS CODE를 입력

1902309000 Прочие :: Прочие макаронные изделия

Наименование товара	Прочие макаронные изделия	с 01.01.17
Импордная пошлина	основная: 13%, но не менее 0.05 Евро / Килограмм ▶ Согласно документу ▶ Импортные пошлины с истекшим или не наступившим сроком [3]	с 01.01.17
Ввозные пошлины по странам:		
Вьетнам	основная: 10.9%, но не менее 0.044 Евро / Килограмм ▶ Примечание по стране ▶ пошлины с истекшим или не наступившим сроком [8]	с 01.01.17 по 31.12.17

▼ Развернуть разделы
 ▼ Развернуть МНР
 ▼ Примечания
 ▶ Свернуть всё

** 입력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품목의 관세율을 확인 가능

② 통관 비용(관세 등)

- 카자흐스탄의 통관관련 비용은 1) 관세, 2) 부가가치세, 3) 소비세, 4) 세관수속비가 있다.
 - 이 중 관세는 HS 품목별로 0%, 5%, 10%, 15% 등으로 일반화되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평균 수입관세는 약 9%이다.
 -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12%가 적용된다.
 - 소비세는 주류 등 특수품목일 경우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 세관수속비는 신고서 첫 번째 장은 1개 품목에 60유로, 두 번째 장부터 매 장에 3개씩 기재 가능하며 매 장마다 25유로가 소요된다.

③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방식

- 다음의 경우 수입관세율은 관세동맹의 관세위원회에서 정한다.
 - 수입제품의 서류상 기재 금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국가세)
 - 수입제품의 한 고정단위에 기초해서 특별하게 부과되는 경우(종량세)
 - 위의 두 경우를 혼합해서 세율을 정하는 경우

□ 수입통관 최소 요건

- ① 수취인이 목적지에 있어야 한다.
- ② 외국인의 경우, 수취인은 카자흐스탄에 등록된 회사에 고용인이어야 한다.
- ③ 수취인의 카자흐스탄 비자는 발송일 현재 유효해야 한다.
- ④ 각 품목에 대한 물품의 정확한 정보를 명시한 상세한 포장리스트가 있어야 한다.
- ⑤ 세부 목록은 각 품목의 관세 값을 명시해야 한다.
- ⑥ 보험 증서는 선적서류와 함께 보내야 한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 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2) 선적/운송/환적

가) 선적

- 중국, 또는 러시아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및 러시아 국경에서 환적통관이 이루어지며, 나라 경유 시마다 T/S면장, 검역, 환적이 필요하다. 또한 B/L 건당 통관비가 증가한다.

나)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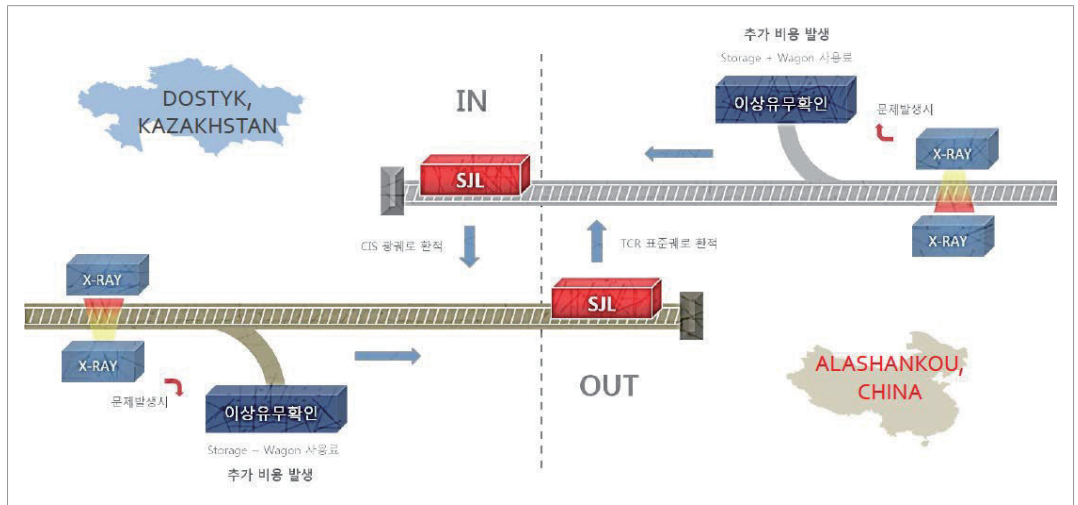
- 운송업자가 선하증권상 목적지까지 책임지며, 인코텀스2010(INCOTERMS)²⁵⁾ 조건에 따라 수출자나 수입자가 포워딩 업체를 지정한다. 운송을 의뢰받은 포워딩 업체는 해상운송 및 내륙운송을 통해 목적지까지 운송 전 과정, 혹은 일부 과정을 책임진다.

다) 환적(Transit)

□ TCR 레일 폭이 다르므로 환적 필수

- TCR 이용 시 철도의 레일 폭에 따라 표준궤와 광궤²⁶⁾로 구분되므로 이에 따라 환적이 반드시 필요하며, 환적 통관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즉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출 시 2번의 통관 절차를 거치는 셈이다.

» TCR 환적 구간(도스틱)



- 알라산코에서 도스틱으로 진입 시 카자흐스탄의 철도청이 웨건 상차 및 서류를 확인하고, 세관심사 후 출발하며, 이후에 웨건 공급 및 도착지별 출발을 허가해주는 절차를 따른다.
- X-ray 검사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 발견 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보관료 및 화물 사용료는 화주가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운송업체가 자동 정산한 후 화주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수출 시 HS코드 및 수출 제한 품목 리스트²⁷⁾ 확인에 유의해야 한다.

25)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각국의 무역용어를 조사하여 작성한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규칙

26) 레일의 폭에 따라 표준궤(1,435mm)와 광궤(1,520mm)로 구분된다. 중국, 한국, 일본 등은 표준궤이며 CIS 국가 및 러시아는 광궤이다.

27) 군사용품 및 위험물, 중고타이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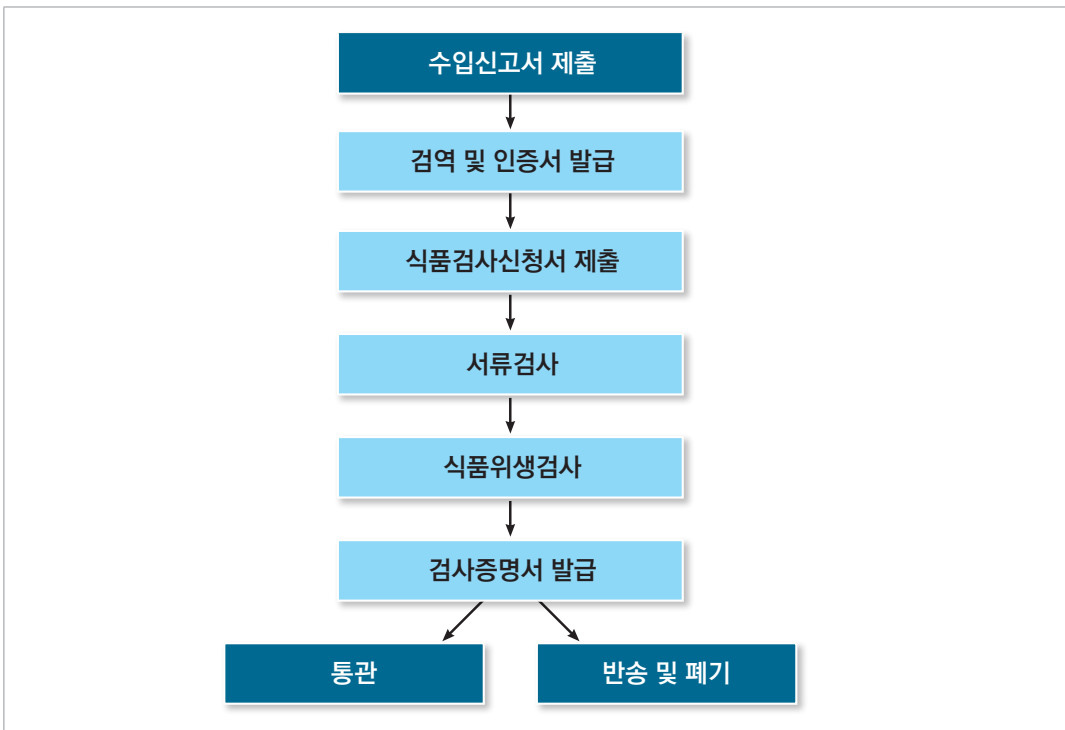
- 중국 철도 규정 변경으로 아이템당 무게가 500kg 이상인 경우, 컨테이너 작업도면을 작성하여 중국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보세창고로 물품의 이동 신고

- 물품이 국경에 도착하고 24시간 이내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물품을 임시 보관 창고에 배치한 후에 물품도착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시 보관이나 도착 후 보관 장소 이동 시에는 통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다. 보관 기간은 2개월이며,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근 상품의 임시보관 기간이 4개월까지 늘어났다.

3) 수입식품 신고

» 수입식품 검사 절차



-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 및 차량은 검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통관 업무는 카자흐스탄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통관 중개사가 수입 제품과 차량의 통관을 대리할 수 있다.
- 수입업체는 카자흐스탄 국경에 도착하기 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서와 수입신고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 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운송장(B/L), 상업송장, 포장리스트 첨부 제출
- 이 서류들에는 출하원산지, 용량, 도착일, 가격을 표시한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서, 각각의 물건이 저장될 장소, 가공공장이나 도매업자가 물건을 수령할 장소, 포장목록, 선적 방법을 표시한 화물운송 계획(팔레트 등), 세관에 화물 가격을 표시하는 신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통관 절차

가) 관세 납부

- 검사가 완료된 경우는 물품 반출을 위한 제반 절차를 취한다.

나) AEO 제도 활용

- 수출입안정 우수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지위는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하도록 한다. 카자흐스탄 관세법에 의거 수출입안정 우수인증업체 선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90일 이내에 결정한다.
-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수출입안정 우수인증업체 지위 부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 한-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본격 협상을 위해 2017년 4월 아스타나에서 액션플랜에 서명하였다. 액션플랜은 2015년 9월 약정 추진에 합의한 후 2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AEO 협상 시작을 의미한다. 약정이 체결되면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 기업은 카자흐스탄 세관 통관 과정에서 검사를 축소, 우선 통관, 세관 연락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AEO 지위 획득을 위한 필수 요구조건(관세법 63조, 총7개의 조건)

- 하기 조건의 부합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무작위 출하 세관검사가 실시되며, 동 검사 일환으로 국가기관(세무당국, 검찰당국)에서 정보를 요청한다. AEO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법인은 관세기관에 신청서,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공증증명 사본, 세관기관 지정양식에 맞춰 작성한 신청서, 관세 및 세금 지불 일반보증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세 및 세금 납부 보장 ② 2년 이상 대외무역활동 수행 ③ 관세 및 세금 채무 부재 ④ 조세 채무 부재 ⑤ 법적 기록(체납 및 벌금 등) 부재 ⑥ 행정제재 부과(Imposition of administrative sanctions) 기록 부재 ⑦ 물품검사 시스템 보유 |
|--|

5) 물품 반출

- 수입신고 검역 절차, 세금 납부 등이 모두 완료되면 모든 서류 사본은 카자흐스탄 관세청으로 송부되며, 이곳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며 물품이 반출되고 통관이 완료된다.
 - 만약 수입식품이 부적합 판정된 경우는 반송, 폐기, 재처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

□ 통관제도 정책 동향

① 2017년 적용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기존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를 보완, 변경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일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를 개발, 전환 중에 있다.
 - 현재 EEU HS코드 0302 99와 0303 99의 하부품목 10자리를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② 일부 농산품 수입관세율 변경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일부 농산품에 대한 유라시아경제연합 공통 수입관세율을 특정 기간 동안 변경할 예정이다.

③ 유라시아경제연합(EEU) 통관조약 발효 예정

- EEU 통관조약(2017.4 체결)이 발효되면 통관 과정이 자동화되고 통관문서는 모두 전자화되어 통관 접수에서 반출까지 모든 과정이 전자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므로 과거와 같은 인력 배치가 필요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과 세관의 통관 접촉이 최소화되어 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④ 통관 절차 간소화를 지향하여 의무적인 사전통지 제도 도입

- 2004년부터 통관 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세관신고 검사 기간을 3일로 줄이고 물품에 대한 사전 세관 신고 후 나중에 해당 물품을 들여올 수 있게 바뀌었다.
-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각국 세관 임원회의를 통해 2012년 6월 17일부터 관세동맹의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상품들에 대해 '의무적인 사전통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 해당 조치는 통관 절차의 신속화와 간소화를 지향하며, 대외경제활동을 원활하게 구현하는 데 유리한 조건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 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⑤ 항공운송 반입 상품 의무적인 사전통지제도 도입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No.158('15.12.1) '항공운송 반입 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사전통지'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터 항공운송 반입 상품에 대한 사전통지가 의무화되었다. 상품 반입을 이행하는 운송인, 혹은 운송인의 대리인이 상품 도착지 세관기관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필수 기재 정보

<p>가) 항공기 및 비행경로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국적마크 및 등록마크 - 항공기 운행사 명칭 - 출발 항공편 번호 - 출발 지점 및 출발 공항 명칭 - 도착지 공항 이전 공항의 실제 출발 시간 - 도착 지점 및 목적지 공항 명칭 - 예정된 도착 시간 - 중간 착륙지점 명칭(있는 경우에 한함) - 항공기 내에 EEU 관세영역으로 반입 금지, 또는 제한되는 상품, 무기, 탄약 존재 유무에 관한 정보, 항공기 내에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존재 유무에 관한 정보(있는 경우에 한함) 	<p>나) 운송서류 기재 반입 상품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번호 - 상품명 - 상품 선적 지점 및 하역 지점 명칭 - 수량(quantity of places) - 상품 총중량(kg) - 상품 순중량(kg), 또는 부피(정보가 있을 시에) - EEU HS코드에 따른 첫 6자리 이상의 제품 코드 (정보가 있을 시에) - 상품 발송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	--

- 사전정보를 전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구조·양식·특정기술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사전정보 심사 수락 거부에 관한 전자 메시지가 정보제공자에게 발송된다.
 - 사전정보 심사 수락 거부 사항 보완 후 세관기관에 다시 사전정보 제공가능하다.
- 세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운송 고유식별번호가 기재된 사전정보와 운송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사전정보 제공자가 발견할 경우, 사전정보 제공자는 항공기 도착 전에 사전정보를 세관기관에 다시 제공해야 한다.
 - 기재된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다시 제공된 사전정보는 새로운 운송 고유식별번호를 받게 된다.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권고 No.5('16.4.12) '항공운송 반입 상품 사전정보 제공 시, 전자 상호작용'에 의하여 항공운송 반입 상품에 대한 사전정보 구조 및 양식이 정해진다.

02 | 식품 검사

가. 식물검역

1) 식물 검역 개요

- 농업부 산하 농업 검역 위원회(The Agricultural State Inspec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에서 카자흐스탄 내의 식물 위생 현황을 감독하고, 식물 건강 상태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집행한다.
- 카자흐스탄은 수출국의 수출식물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 국내법에서도 한국에서 수출하는 식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식물 검역절차를 거쳐야 수출이 가능하다.

2) 식물검역 관련 개정사항

가) 국내 검역 신청

-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식물 검역 후 검역확인서 및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카자흐스탄 세관당국에 사전 제출
 - 수출식물 등의 검사(식물방역법 제28조)
 - 식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 검역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한다.
 - 검사신청은 인터넷, 우편, FAX, 방문접수, 전화로 가능하다(수출검사합격증명서 작성에 지장이 없을 경우).
 - 검사인력 가동이 가능하고 검사장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출자가 원하는 일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 결과 수입국의 요구조건에 부합할 경우 검사합격증(식물위생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발급한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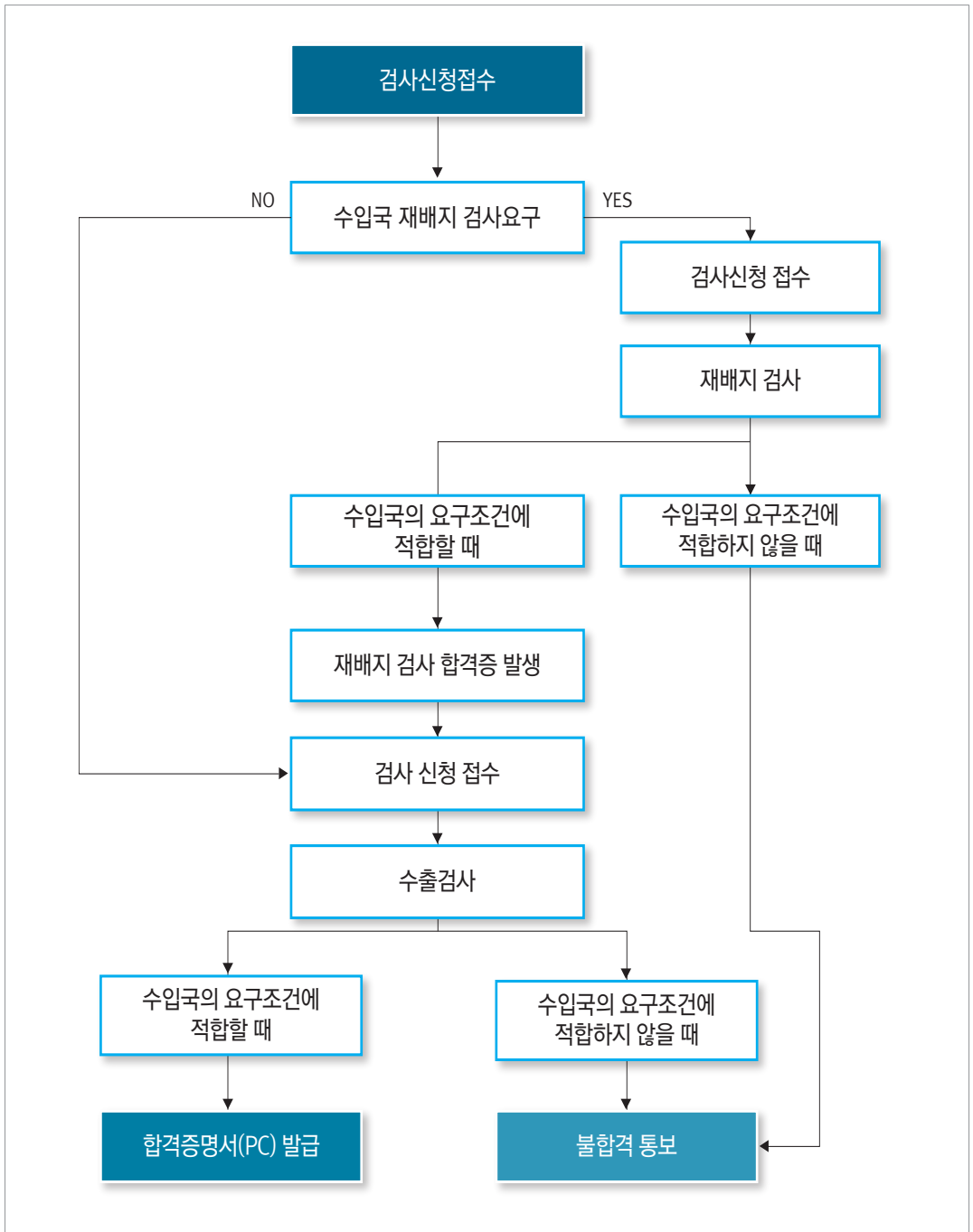
Part III
수입 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국내 식물 검역 절차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www.qli.go.kr)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3.23)

수출식물 검역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기관	처리기간	5일
수출자 (보내는 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수입자 (받는 자)	성명	상호		
	주소			
운송수단		선적항		
출항일		도착항		
품목수	품목명	단위	수량	학명
원산지	포장의 수와 종류		수입국(수출상대국)	
검역 희망일시	검역장소		식별표시(Distinguishing Marks)	
신청인 요구사항				

「식물방역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 사무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2. 수출국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만 첨부하며, 신청인이 되돌려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 후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 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4. 수입국의 요구사항(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기재사항은 영문으로 적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위 서식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나) 카자흐스탄 수출 가능 품목

- 카자흐스탄과 검역 협상이 타결된 품목은 신선식품 중 사과, 배, 감자 및 양배추 종자이다.

다) 검역 실시

① 식물 검역에 관한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운송

- 검역을 위한 수입식품은 콜드차량, 등온차량, 봉인된 컨테이너, 밀봉 포장된 상태 등으로 수송해야 한다.

② 수입된 식품은 카자흐스탄의 식물위생검역소, 또는 차량국경교차점에서 검역을 시행한다.

- 처음으로 식물위생검역소에서 수입되거나 수송된 식품을 식물 검역 후 원격 감시하며, 두 번째는 식품이 목적지에 도착되면 수출국에 식물 위생 특성에 따라 필요 시 검사, 샘플링, 실험실 테스트를 진행한다.

③ 식물검역증명서는 No4-4/66('15.01.30)에 따라 카자흐스탄 농업부에서 관련절차에 따라 최종 승인된다.

④ 2013년 10월부터 식물검역증명서는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수출국이거나 카자흐스탄 영토에 진입하여 화물을 내려놓는 순간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 대체가 허용된다.

라) 식물 검역 관련 개정사항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 검역식물위생 요건

- 제20항은 토양을 함유하는 영양 혼합물 및 토양 덩어리가 있는 식물, 토양 기질이 있는 화분식물 반입 및 영토 내 이동은 검역 대상 무발생 생산지역, 생산 장소, 또는 생산포장에서부터 허용된다는 조항이다(2018.1.1. 발효 예정).

나. 동물 검역²⁸⁾

- 농업부 산하 수의 통제 및 감시 위원회(The Committee of Veterinary Control and Surveill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에서 카자흐스탄 내의 수의 현황을 감독하고, 동물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집행한다.
- 카자흐스탄에서는 수입쿼터제를 적용받는 육류 및 가금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들이 수의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입쿼터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생고기뿐만 아니라 냉장, 냉동된 육류 및 가금류 수입에 대해 관세 할당제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수의인증서 제출 대상은 대부분 동물성 식품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28)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USDA GAIN report, 12/30/2015

- 모든 종류의 동물
- 고기 통조림, 소시지 등 가공육류
 - 수출국 위생검사기관의 상시 통제를 받고 허가를 득한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에 한해 카자흐스탄에서 수입 가능하다.
 - 건강한 가축을 도살한 제품으로 제조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된 사료로 사육되지 않은 가축이어야 한다.
 - 질병이 없는 가축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 우유 및 유제품
 - 동물 전염병이 없는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
 - 수출국 위생검사기관의 통제를 받고 허가를 득한 제조업체의 제품
- 동물이 원료인 기타 제품
- 동물 사료
- 동물 의약품 등

다. 위생검사

- 경제부 산하 소비자 권익 보호 위원회(The Committee on Consumer Rights Protec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Economy)에서 식품위생을 담당하며, 법규에 위배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 수입신고서류 등 제출서류가 기재사항의 HS물품번호와 규정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물품이 신고서류 내용과 일치하는지 샘플을 추출하여 검사한다.

» 식품위생 검사 대상

- 미네랄 워터(일반, 치료용 모두)
- 어린이용 식품(모유 대용품, 시리얼, 우유,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등으로 제조된 제품, 유아용 식품, 유아용 허브차, 임산부 및 모유를 먹이는 여성용 식품 등 포함)
- 식이요법 제품
- 유제품
- 육류 및 육류 가공품(영양이 첨가된 제품 포함)
- 식품첨가물
- 생물학적 활성 식품첨가물
- 유전자 변형 제품으로 제조된 식품
- 신기술로 제조된 식품(식품 원자재 포함)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가. 라벨링 개요

□ 카자흐스탄 내의 식품 라벨링 제도는 러시아, 벨라루스와 동일하게 적용(TR CU 022/2011)

- 라벨은 카자흐어, 또는 러시아어로 필수 기재되어야 하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라벨에 2개의 언어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상기 2개 언어로 표기가 불가능한 내용은 라틴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라벨링 기본 표시사항

① 제품명	
② 식품 성분	
③ 식품 용량	
④ 제조일자	
⑤ 유통기한	
⑥ 보관 방법	
⑦ 제조업체 정보	
⑧ 권고사항/제한사항	
⑨ 영양 가치	
⑩ GMO 인증	
⑪ 인증 마크	

나. 라벨링 규정

1) 제품명

- 제품은 다른 제품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되 식품의 성분을 명칭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 특수가공(훈제, 절임, 분쇄, 동결건조 등)한 식품인 경우,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에 포함하거나 되도록 가까운 이름을 명명해야 한다.
- 식품의 향미증진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향미증진제(flavoring agent)라고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제 초콜릿이 아닌 초콜릿 향료나 첨가물이 들어간 과자라면 초콜릿 과자가 아닌, 초콜릿 향·맛 과자라고 표기해야 한다.

2) 식품 성분

- 식품 성분 기재 시 질량의 비율에 따라 가장 많은 양부터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
- 복합성분이 포함되었을 경우, 복합되어 있는 모든 성분은 괄호 안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복합성분이 2% 이하일 경우, 식품첨가물, 향미증진제를 제외하고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식품첨가물의 효능을 명시해야 한다.
- 다음과 관련하여 식품 성분 목록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 딸기를 포함한 신선과일과 감자를 포함한 채소
 - 다른 재료 첨가 없이 하나의 식품에서 얻은 식초
 -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 정보를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아스파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페닐알라닌의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해야 한다.

» 식품 유형의 이름으로 대체될 수 있는 식품 성분 유형

성분 유형	식품 유형의 이름
Refined oils of fats	Oil or fat with indication of origin : vegetable or animal
Compressed, extracted or refined cacao butter	Cacao butter
Fruit mixture whose mass fraction constitutes not more than 10% of food products	Fruits
Berries mixture constituting not more than 10%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Berries
Candied fruits constituting not more than 10%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Succade
Vegetables mixture constituting nor more than 10%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Vegetables
Natural honey of any kind	Honey
Flour mixture of two or more grain types	Flour with the indication of grain types of which it is produced, depending on the mass fraction thereof, highest to lowest
Starch and starch modified by physical aids or ferments	Starch*
Fish of any type	Fish
Edible cooking salt (sodium chloride)	Salt
Cheese or cheese mixture	Cheese
Milk protein, caseins, caseinates, whey protein and their mixtures	Milk protein
Vegetable herbs constituting nor more than 2%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Vegetable herbs or vegetable herbs
Spices constituting not more than 2%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Spices or mixtures of spices
Source substances used for the production of chewing gum	Rubber basis
Sucrose of any type	Sugar
Anhydrous glucose or glucose monohydrate	Glucose
Treacle of any type	Treacle or glucose syrup
Grape wines	Wine
Cereal of any type	Cereal
Soya protein (isolates, concentrates)	Soya protein
Egg products of any type	Egg products

* 성분의 특별한 출처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문구를 이용한다. - example, - from potato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 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3) 식품 용량

- 부피, 질량, 개수의 경우 약어를 사용하여 식품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란, 과일, 채소 등 한 개 단위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질량이나 양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 액체인 경우 질량을 명시
- 점성이 있고 끈적이는 반죽의 경우 부피, 또는 질량을 명시
- 고체 및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 경우 질량을 명시
- 또한 두 가지 값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ex) 질량과 개수, 질량과 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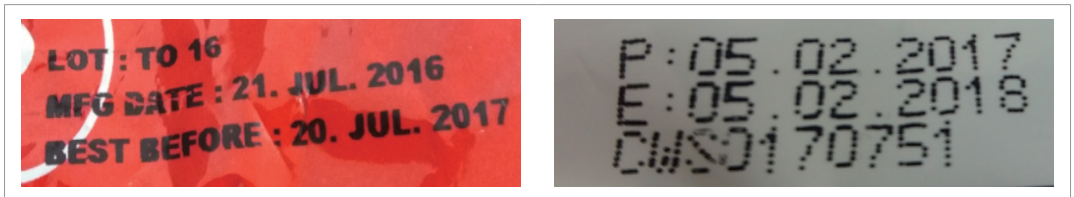
4) 제조일자

- 유통기한이 72시간 미만인 경우, Manufacture date : 시간, 일, 월
- 유통기한이 72시간에서 3개월일 때는 Manufacture date : 일, 월, 연도
-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일 경우 Manufacture date : 월, 년, 또는 일, 월, 연도
- 설탕일 경우에는 제조년도만 명시한다.
- 제조일자는 생산일자, 또는 유사한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

5) 유통기한

- 유통기한이 72시간 미만인 경우, Best before : 시간, 일, 월
 - 유통기한이 72시간에서 3개월 미만일 경우, Best before : 일, 월, 연도
 -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일 경우, Best before : 일, 월, 연도 및 Best before the end of : 월, 연도
 - Best before이나 Best before the end of는 "Shelf life", "Consume before" 또는 유사한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
- ※ 현재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함께 표기 되어야 한다(2017년 4월 기준).

»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함께 표기 된 라벨링



6) 보관방법

- 모든 특수한 보관 조건, 또는 사용 조건을 표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7) 제조업체 정보

- 제조업체의 공식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제3국에서 제공되는 식품일 경우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 역시 기재해야 한다.



8) 권고사항/제한사항

- 권고사항이나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섭취가 어렵거나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때, 또는 식품의 특성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나 제한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150mg/L를 초과하는 양의 카페인을 함유한 무알코올 음료나 약용 식물 및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충분한 양에 해당하는 성분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권장하지 않으며 임신 및 수유중인 사람에게서는 권장하지 않음” 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9) 영양 정보

- 에너지값(칼로리 함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양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 식품의 영양값은 100g, 100ml 또는 1개당 가치로 표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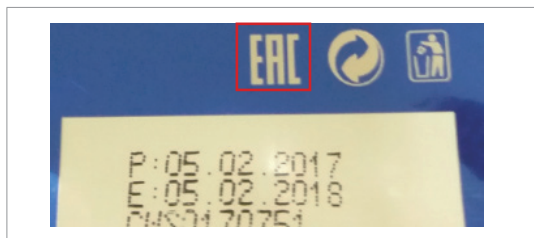
10) GMO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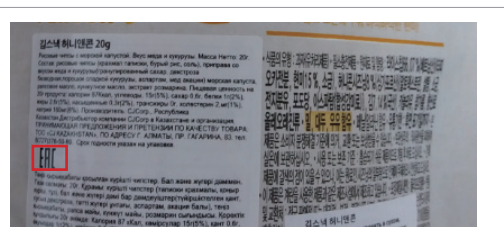
- GMO 표기사항은 GMO 함유량이 0.9%이상인 식품에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한다. -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or "Products obtained from genetically odified organisms" or "The product contains components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11) 인증마크

» 포장지에 인쇄된 EAC마크



» 스티커로 부착된 EAC마크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라벨링 규정 추가 요건

□ 식품첨가물, 향료, 가공보조제 및 이들이 함유된 식품에는 반드시 관세동맹의 “식품 라벨링 관련” 기술규정에 명시된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이 적용된다.

- ① 본 기술규정의 부록2에 의거하여 식품첨가제 명칭에 “식품보조제”(복합식품보조제) 단어, 식품보조제, 또는 첨가물 등급, 식품과 첨가물 명칭, 또는 국제디지털시스템(INS)이나 유럽디지털시스템(EAN)에 의거한 식품첨가제 색인이 들어가야 한다.
- ② 향료의 명칭에는 “향료”(또는 “향”이나 “착향 전처리”, 또는 훈제향, 또는 Thermal Technology 착향, 또는 “예비향”)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 ③ 향료에 천연원료에서 추출된 착향제 및(또는) 천연 향료만 함유된 경우 “천연” 단어를 향료에 부가할 수 있다. 발명된 천연향료의 명칭을 식품 및 향미료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천연향료에 천연착향료만 함유되어 있고 특정 식품과 구별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 ④ 본 기술규정의 부록 21-27에 의거하여 보조수단의 기술적 명칭에는 “가공보조제”라는 단어와 보조공정의 명칭이 들어갈 수 있다.
- ⑤ 효소 전처리 라벨에는 요소 형태의 미생물 활동 유형, 원료 등에 대한 추가 표시가 들어가야 한다.
- ⑥ 효소 전 처리 과정이 개입된 식품의 경우 미생물 활동, 종류 및 이러한 약제 생산자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소매용이 아닌 식품첨가물, 향료, 가공 보조제의 경우 라벨에 반드시 “소매용이 아님”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 ⑧ 식탁용 감미료의 경우 일일 안전 소비량을 명시해야 한다.
- ⑨ 착색제가 함유된 식품의 경우 라벨에 약물의 종류(엑기스, 에센셜 오일, maslosmoly 등) 또는 “천연향료” 단어를 명시해야 한다.
- ⑩ 착향제가 함유된 식품의 경우 향료를 구성하는 착향물질, 또는 착향제를 생략할 수 있다.
- ⑪ 이산화황 함유량이 10mg/kg 미만인 식품의 경우 이산화황 보존제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 ⑫ 소매용이 아닌 식품첨가물, 향료, 가공보조제의 라벨 전달 방법은 반드시 납품용기에 부착되는 식품 라벨링과 관련한 관세동맹의 “식품 마킹 관련” 기술 규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출처 : Eurasian Commission(www.eurasiancommission.org)

04 | 진입장벽

1) 통관 시스템 문제

- 통관 거부 사례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사전 대응이 어렵다. 아직까지는 전자면장을 포함한 EDI가 구축되지 않고 있기에 통관을 위해서는 B/L 건당 인력이 필요하다. 통관 창구마다 세관원을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통관비용도 발생하고, 러시아 문화와 관료주의식 일처리로 인해 통관에 어려움이 있다.

2) 물류 인프라 문제

-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해야 하므로 경유국에서 컨테이너 환적 및 환적 통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 중국과의 접경지역이 많고, 운송 도중 도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물품을 수령하여 자체 창고에 보관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 물류비용이 매우 비싸 가격 경쟁력이 낮고, 냉장·냉동 컨테이너의 경우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

3) 까다로운 증명서(Certification) 발급 절차와 비용 발생

- 필수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인증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
- 카자흐스탄 관세청은 수입품의 HS Code와 상품가를 모두 저장하고 있어 기존 데이터와 수입신고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면 통관이 지연된다.
 - 그러므로 기준 상품가에 미달될 경우 강제로 관세와 부가세를 징수하여 기준 상품가 이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
- 컨테이너 도착 전에 수입업체에 써티²⁹⁾가 무조건 발급이 된 상태여야 통관이 진행되며, 품목당 서티를 받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써티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여러 품목보다는 단일 품목을 대량 수입하는 것을 선호한다.

29) 증명서(Certification)를 줄여서 일컫는 말로서 카자흐스탄 수입업체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단어

4) 메뉴얼화 되지 않은 통관 지연사례 빈번

- 실제 통관 제품과 서류 내역이 조금만 불일치하여도 반송 조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통관 진행 중에 서류나 물품에 이상이 없더라도 통관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세관원들의 월급이 월 500달러 정도인 매우 적은 급료로서 통관시 추가적인 비용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경우, 관세동맹국이므로 무관세인데도 불구하고 씨티를 다시 요구하여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나는 사례도 있으며,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규정이 다를 경우 사유로 세관에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다.

5) 잦은 규정변경

- 통관 규정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아 수시로 세관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며, 법적해석과 언어의 모호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6) 대금결제의 지연

- 매입대금의 결제조건은 매우 좋지 않아 물품 공급 후 40일 이상 경과 후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 한국식품 수입업체A에 따르면 납품을 했음에도 대금결제를 몇 달 씩 연체한 경우가 있으며,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어 돈을 받기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PartIV

| 식품 위생 제도 |

01. 식품관련 인증제도

02.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Kazakhstan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01 | 식품관련 인증제도

가. 식품 인증 개요

- 카자흐스탄의 식품 인증은 TR-CU 인증, 할랄인증 등이 있으며, 오직 TR-CU 인증만이 필수이다. 그 밖의 인증은 선택사항으로, 하나의 마케팅 인증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식품 인증 종류

1) TR-CU (Technical Regulations of Customs Union) - 필수 인증

가) TR-CU란 무엇인가?

- 2010년 1월 1일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이 출범하면서 2013년 2월 15일 TR-CU(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법령이 개정되어 기존의 국가표준규격(GOST-K)이 TR-CU로 변경되었다.
- TR-CU는 기존의 관세동맹 3국의 인증제도(카자흐스탄-GOST-K, 러시아GOST-R, TR, RTN 사용허가인증, 벨라루스-STB)를 모두 통합한 것으로, 현재 순차적으로 법령이 개정 중에 있으며, 향후 모두 규정이 TR-CU로 대체될 예정이다.
 -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2015년 1월 1일에 정식 출범한 이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하여 공통 인증 체제를 도입하였다.
 - TR-CU가 발효된 분야에서는 2014년 2월 15일 이후부터 GOST-K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TR-CU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이미 인증받은 GOST-K는 2015년 3월 15일 이후부터는 TR-CU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나) TR-CU 인증 방식

- TR CU 021/2011 "On food safety"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받게 되며, ① 적합성 선언 ② 연방 국가등록 ③ 위생검역의 3가지 방식이 있다.

①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 DoC)

- 해당되는 제품으로는 ② 연방 국가등록 ③ 위생검역 대상 외 모든 식품이다.
- 필요서류로는 신청서, 성분표, 시험성적서, 제품설명서 및 카탈로그, 수출계약서, 선적서류, 또는 선하증권, 카자흐스탄 내의 사업자등록증이다. 보통 취득 소요기간은 3개월이다.
- 카자흐스탄 내 위치한 법인이 신청자여야 하며, 현지 법인이 DoC 서류 내에 명시가 된다. 즉 DoC는 현지법인이 한국 제조사의 제품이 CU기술규정에 만족한다고 선언하는 형식으로 작성이 된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제품 통관에 대한 권한을 가지므로 신청자 선정 시 유의해야 한다.
- 인증 절차는 제조사의 자료를 제출 후, 제조사의 자체 시험 진행 및 CU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이 진행된다. 그 후에 CU 인증기관이 자료를 검토한 뒤에 DoC에 등록된다.

② 연방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 해당되는 제품은 아동용, 임산부용, 운동선수용, 치료용 식품 등 특수식품이다.
- Certification of Conformity (CoC)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 국가기관에서 시험 및 자료 평가를 받아야 하며, 연방 국가등록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을 두고 사후심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 필요서류로는 신청서, 성분표, 방부제 등 원료에 대한 정보, 나노 물질에 대한 정보, 유전자 변형(GMO) 원료에 대한 정보, 제품설명서 및 카탈로그, HACCP 인증서, 또는 HACCP 원칙 준수에 관한 선언서, 제품 용기의 안전성 증빙 자료, 제품 라벨 초안이다. 보통 취득 소요기간은 6개월이다.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인증 절차는 제조사의 자료를 제출 후, 러시아소비자보호청(ROSPOTREBNADZOR) 및 The National Center of Accreditation of KZ에서 시험 진행 및 자료가 평가되며, 연방등록증(Certificate of state registration)이 발행된다.

③ 위생검역(Veterinary-sanitary exam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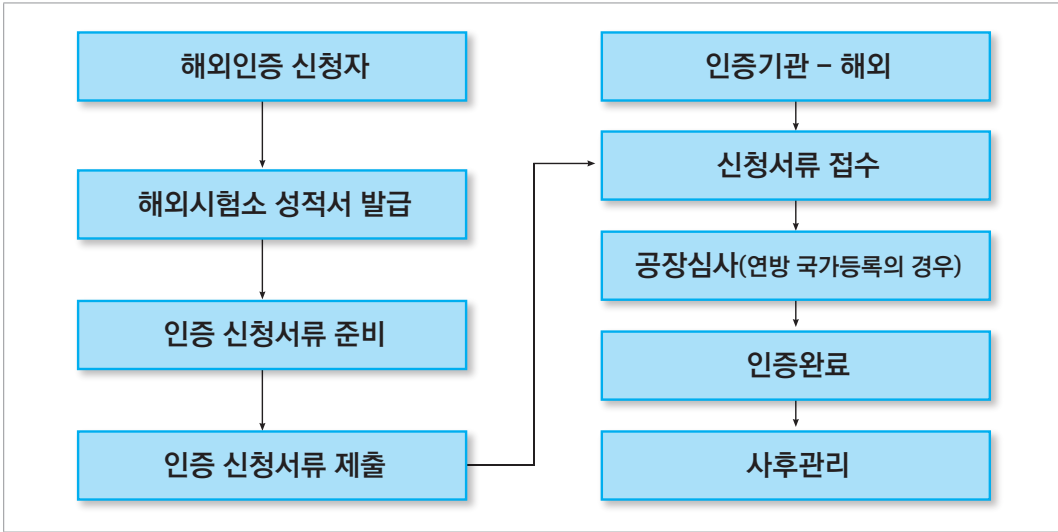
- 해당되는 제품은 비가공 육류, 생선, 계란이다.
- 식품에 적용되는 CU 기술규정은 총 7개이며, 다음과 같다.
 - TR CU 021/2011 "On food safety"
 - TR CU 022/2011 "On Food Labeling"
 - TR CU 023/2011 "Technical Regulation on Juice Products from Fruits and Vegetables"
 - TR CU 024/2011 "Technical Regulation on Oils and Fats"
 - TR CU 029/2011 "Safety Requirements for Food Additives, Flavorings, and Technological Aids"
 - TR CU 033/2013 "On Safety of Milk and Dairy Products"
 - TR CU 034/2013 "On Safety of Meat and Meat Products"
- TR CU 021/2011와 TR CU 022/2011는 모든 종류의 식품에 적용되는 기술규정이며, 이 외에는 특정 식품에 대한 기술규정이다.
 - 알코올 음료, 식수, 가공류 식품에 대한 기술규정은 현재 개발 중이다.
- 주요 변경 내용은 인증명 및 인증 마크(EAC), 인증비용, 공장심사 부분이며, 카자흐스탄 바이어 및 카자흐스탄 지사와의 계약서가 있어야만 TR-CU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의 GOST-K 마크는 TR-CU 인증서에서 '유라시아연합'을 뜻하는 러시아어 약자인 EAC(Е в р а з и й с к и й С о ю з) 마크로 변경되었다.



〈EAC 인증마크〉

- 사각형의 형태로 밝거나 대조가 뚜렷한 배경에 3개의 철자 'E', 'A', 'C'를 합하여 'EAC'로 표시한다.
 - 'EAC'는 '유라시아 적합성(Eurasian Conformity)'을 의미 한다.
 - 공통으로 적용되는 유통 마크는 생산제품이 관세동맹의 기술규제에 정립되어 있는 안전요건에 적합하다는 검증 절차를 통과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 TR-CU 인증 절차



라) 유효기간에 따른 인증 방법

- 문서에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컨테이너 도착 날짜보다 문서 유효기간이 더 길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유효기간	특징	비용
1회	관세동맹국 내 등록된 현지법인, 지사, 수입업자와 실질적 수출업자 (제조업체) 간 계약서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일회성 인증서이므로 인증 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발성 인증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만큼 그리고 계약 이행기간까지 유효하다.	약 19,500KZT (부가세 미포함)
1~5년	계속적인 수출이 예상되거나 다수의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적합하고,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일정기간 동안의 인증이다. 해당 제조업체의 QMS (e.g., ISO certificate)와 사후공장심사가 요구되며, 사후 공장심사 중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서는 취소된다.	약 27,230KZT (부가세 미포함)

* 주: 1회성 인증에 비해 1~5년 인증은 많은 서류가 요구되며, 두 인증 간의 비용 차이가 적다.

마) 특이사항

- TR-CU 인증에 대한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다.
 - 신청자: 관세동맹국 내 등록된 현지법인, 지사, 수입업자, 딜러
 - 공장심사: 연속 인증의 경우 샘플 테스트, 또는 공장심사 필수
 - 소요기간: 전체 필요서류 제출 및 공장심사 후 2주(제품 특성 및 사양에 따라 상이)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바) 기존 GOST-K와 변경된 TR-CU

변경사항	GOST-K	TR-CU
신청자	제조사 or 수출자 or 수입자	수입자 or 현지 지사
준비서류	부분적 영문서류 가능	러시아어 문서
공장심사 (1년 인증 이상)	제품에 따라 서류심사로 대체	필수+샘플테스트
발급소요기간 (약 1~2개월)	약 5~10일	공장심사 후 약 3주
유효기간	단일 선적 인증, 연속 인증(1년, 3년)	단일 선적 인증, 연속 인증(1년, 3년, 5년)

- 현재 34개의 TR-CU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3국의 인증 관련법이 모두 TR-CU로 개정될 예정이다.

사) 카자흐스탄 식품인증서 발급기관

- 카자흐스탄 인증기관은 시험소/인증기관과 인증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시험소 및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NAEC(National Center for Expertise and Certification)로 공식 정부기관이며, 인증 기능만 하는 기관으로는 "Center on certification of Kazakhstan"LLP, "Kazakhstani center of certification"LLP, Center of certification "InterCert"LLP 등이 있다.

아) 국내 인증 대행기관

-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은 없으나 공인된 여러 인증 대행 발급기관을 두어 시험 및 인증 발급을 일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인증 대행기관은 하기와 같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	
글로벌본부 해외사업팀	T : 02-2164-0026 F : 02-2634-0035
성리사 선임연구원	lisasung@ktr.or.kr

2) 할랄인증 - 선택 인증

□ 카자흐스탄의 할랄 식품 시장은 시작 단계

- 정부 공식 인증기관이나 규정은 아직 없으며, 현재 1) 카자흐스탄 할랄산업협회 (Kazakhstan Halal Industry Association - AHIK), 2) 할랄 다무(Halal Damu / Spiritual Administration of Muslims of Kazakhstan 산하기업)에서 운영 중이며, 두 할랄인증 발급기관 시스템 역시 체계적이지 않다.
- 한국에서 받은 할랄인증으로 현지에 진출하기에는 큰 장벽이 없으나, 해외 할랄인증 신뢰도 자체가 낮은 상황이다.

02 |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가. 식품첨가물 규정

- 카자흐스탄의 식품첨가물 규정은 관세동맹기술규정 TR CU 029/2012을 따르며, 2010년 11월 18일자 카자흐스탄, 러시아연방 및 벨라루스공화국의 공동원칙 및 기술규정에 관한 합의에 따라 제정한다.
- 본 기술규정 요건과 부합하는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보조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품에 출시 마크를 부착할 수 없고,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해당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없다.
- 관세동맹의 단일 관세 영역에서 유통되는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보조제에는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서류와 출처를 추적 가능한 정보, 그리고 보관조건과 유통기한에 관한 정보가 첨부되어야 한다.

» 색소가 허용되지 않는 식품

1. 미가공식품	12. 꿀
2. 우유, 멸균 또는 살균 밀크 초콜릿 착향	13. 코코아제품, 초콜릿과 자성분 및 기타제품
3. 착향 되지 않은 유제품, 버터밀크	14. 파스타
4. 착향 되지 않은 보존 또는 농축우유, 크림	15. 볶은 커피, 치커리, 차액기스; 수용성차, 과일차 및 약물
5. 신선, 건조, 또는 캔입아채(올리브제외), 과일, 버섯, 생선 (튀레와 페이스트포함)	16. 맥아 및 맥아음료
6. 달걀 및 달걀제품 (부활절계란착색의 경우 본 기술규정부록 11에 수록 된 색소로만 겹칠착색가능)	17. 고추 및 고추혼합물
7. 다른양념을 첨가하지 않은 원상태의 육류, 가금류, 생선, 갑각류 또는 그 일부	18. 소금, 소금대체물
8. 밀가루, 곡물, 전분	19. 생수
9. 신선, 건조, 또는 통조림아채, 과일, 버섯, 생선(튀레와 페이스트포함); 즙 제품 (주스, 드링크 제외), 파스타, 으갠 감자	20. 와인, 과일주, 식초
10. 토마토페이스트와 소스, 통조림감자	21. 오일과 동물지방, 식물성기름 및 냉동압착식품
11. 포도당, 과락, 락토스	22. 숙성 및 미숙성치즈 향착
	23. 빵
	24. 3세미만의 유아에게 공급하기 위한 특별식

» 허용되는 향료

1) 본 기술규정의 부록 19에의 거한 착향물질로 이루어질것
2) 천연원료로 생산된 착색제 및 착색물질로 이루어질것
3) 혼연향
4) 열처리착향
5) 향전구물질로 구성
6) 본 부속향의 기타향(상기부속절 1), 2), 3), 4), 5)에 추가로 구성요소포함
7) 상기향의 혼합물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허용된 식품첨가제(일부)³⁰⁾

식품첨가물 명칭	식품첨가물 기능	사용 가능한 식품	최대 허용 수치
Amorphous silicon dioxide (E 551)	응고방지제, 운반체	초콜릿 제품 (표면처리한)을 제외한 사탕과자, 츄잉껌 (E553 iii 만) 등	in accordance with technical documentation
aluminum silicate(E 559, kaolin)	응고방지제, 운반체		
potassium aluminum silicate(E 555)	응고방지제		
calcium aluminum silicate(E556)	응고방지제		
sodium aluminum silicate(E554)	응고방지제		
bentonite(E558)	응고방지제, 운반체		
calcium silicate(E552)	응고방지제, 운반체		
magnesium silicates(E553 i, E553 ii, E553 iii)–separate or combined	응고방지제		
Castor oil(E 1503)	광택제, 안정제	코코아 제품, 초콜릿 제품	350mg/kg
		사탕 과자	500mg/kg
		츄잉껌	2.1g/kg
Polydimethylsiloxane(E900)	소포제	츄잉껌	100mg/kg
		압축기술로 생산한 곡물제품	10mg/kg
Butyl hydroxy anisole (E320, BHA)	산화방지제	양념 및 향신료	BHA–200mg/kg, Gallates–200mg/kg (per product fat)
Buthyl hydroxytoluene (E321, IonoI, BHT)	산화방지제		
tert-Butylhydroquinone (E319, TBHQ)	산화방지제		
Guaiac resin(E314)	산화방지제	츄잉껌	1.5g/kg
Quercetin, dihydroquercetin –separate or combined	산화방지제	농축크림, 분유, 가공치즈, 초콜릿	200mg/kg (per product fat)
Rosemary extracts(E392), in terms of the total of camosol and camosic acid	산화방지제	양념과 향신료, 가공 된 견과류	200mg/kg (per product fat)

30) 발취기준 :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주로 수출하는 식품 위주로 발취

» 금지되어 있는 착향 물질

아가리신산(agaric acid), 베타아사론(beta-asarone), 하이퍼리신(hypericin), 캡사이신(capsaicin), 바신, 쿠와 신(quassin), 쿠마린(coumarine), 멘토포란(menthofuran), 메틸 오이 게놀(4-allyl-1, 2-dimethoxybenzene), 플레곤(pulegone), 사프롤(1-allyl-3, 4- methylenedioxybenzene), 청산(hydrocyanic acid), 투우존(alpha& beta), teukrin A, 에스트라골(1-allyl-4-methoxybenzene)

» 판매 가능한 보충제

1) 산 및 산도조절제	탄산수소나트륨(E500ii, 베이킹소다), 구연산(E330), 이산화탄소(E290)
2) 이스터에그를 포함한 색소	azorubin(E122), anthocyanins(E163), yellow "sunset" FCF(E110), quinoline yellow(E104), Green S(E142), indigo car mine(E132), cammine(E120), carotene, tsderivatives(E160), Ponce4R(E124), brilliantblueFCF(E133), atentedblueV(E131), tartrazine(E102)
3) 감미료	aspartame(E951), acesulfame potassium(E950), aspartame, acesulfame-salt(E962), isomalt(E953), xylitol(E967), lactitol(E966), maltitol(E965),mannitol(E421), neogisperidin dihydrochalcone(E959), saccharin , its sodium, potassium, calcium(E950), sorbitol(E420), stevia , stevioside(E960), sucralose(E955), thaumatin(E957), cyclamic acid , its sodium salt, calcium(E952) erythritol(E968)

» 음료류 주요 식품첨가물 기준치

분류	성분	기준
방부제	이소프로필 구연산염(Isopbopyl citrates)	200mg/kg
	EDTA 칼슘2나트륨 (Calcium disodium ethylenediamine tetraacetate)	200mg/ l
광택제	백색 및 황색 밀랍(White and yellow beeswax)	0.2g/kg
	셀락(shellac)	0.2g/kg
보존제	소르빈산(Sorbic acid)	150mg/kg
	벤조산(Benzoic acid)	150mg/kg
	벤조산 칼륨(Potassium benzoate)	100mg/ l
	포름산(Formic acid)	300mg/ l

* 주 : 카자흐스탄의 식품첨가물 규정은 관세동맹기술규정 TR CU 029/2012을 따르며, 유라시아경제연합 사이트(www.eurasiancommission.org)에서 전문 확인 가능하다.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나. 유해물질 규정

» 라면류 유해물질 기준치

번호	물질명	함량 정보
1	aflatoxin b1	0.005mg/kg
2	arsenic(as)	0.2mg/kg
3	cadmium	0.1mg/kg
4	coliforms	0.001g
5	deoxynivalenol	0.7mg/kg(밀), 1.0mg/kg(보리)
6	lead(pb)	0.5mg/kg
7	mercury(hg)	0.02mg/kg
8	mold(곰팡이)	100cfu/g(식물성 기반), 200 cfu/g(무단백질)
9	radioactivity 137cs(cesium 137)	60Bq/kg
10	salmonella spp.	25g
11	staphylococcus aureus	0.1g
12	strontium-90	금지
13	t-2 독소	0.1mg/kg
14	yeast	100g
15	zearalenone	0.2mg/kg(밀, 옥수수, 보리)

» 과자류 유해물질 기준치

번호	물질명	함량 정보
1	aflatoxin b1	0.005mg/kg
2	arsenic(as)	0.3mg/kg
3	cadmium	0.1mg/kg
4	coliforms	종류마다 다름
5	deoxynivalenol	0.7mg/kg(밀가루 과자류)
6	lead(pb)	0.5mg/kg(밀가루 과자류)
7	mercury(hg)	0.02mg/kg(밀가루 과자류)
8	mold(곰팡이)	100cfu/g(웨이퍼, 비스킷)
9	salmonella spp.	25g(웨이퍼, 비스킷)
10	staphylococcus aureus	0.1g(크림층이 있는 비스킷)
11	yeast	50g(웨이퍼, 비스킷)

» 유해물질 일반 규정(일부)

- 1) 식물성 원료에는 작농 및 방역을 하거나 유해 성분으로부터 해당 원료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 및 농약에 대한 정보(혹은 살충제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정보)가 필요하다.
- 2) 동물성 원료에는 가축 및 조류의 체외 기생충이나 질병 퇴치, 가축 및 조류 사육 공간, 물고기의 양식을 위한 공간에 대한 방역을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및 농약과 가축, 조류의 질병 퇴치, 치료 및 예방과 동물성 의약품으로 기재된 조류의 먹이, 양식장 내의 물고기의 질병 퇴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3) 살충제 및 농약, 혹은 동물성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혹은 미사용에 대해 기재된 정보)가 없는 식물성 및 동물성 원료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다.
- 4) 조류의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식수에 대한 규정을 초과하는 염소 농도가 함유된 용액의 사용을 금지한다.
- 5) 원료 및 식품은 보관, 운송 및 유통 시 해당 원료 및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해 포장해야 한다.
- 6) 냉동 이외의 조리된 고기, 기계로 뼈를 제거한 가금류의 고기, 조류 고기로 만든 콜라겐 원료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이는 어린이 영양식품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집단 어린이 그룹을 포함한 전 연령의 그룹도 해당) 다이어트 (치료 및 예방 차원) 영양식품, 임산부를 위한 특화된 제품, 조류로 된 고기로 만든 조제 제품(파스트라미, 소시지 훈제식품)에 해당한다. 열가공 처리를 안 거친 조류 고기로 만든 식품과 조류 고기로 된 천연 반가공 냉동 식품 제조 시에는 냉동된 상태를 제외한 조류 고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 주: 카자흐스탄의 유해물질 규정은 관세동맹기술규정 TR CU 029/2012을 따르며, 유라시아경제연합 사이트(www.eurasiancommission.org)에서 전문 확인 가능하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Part V

| 상표출원 및 특허규정 |

01. 상표권 및 특허권 개요

02. 상표권 및 특허권 출원 방법

03. 분쟁사례



Kazakhstan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규정

01 | 상표권 및 특허권 개요

- 카자흐스탄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등록은 IPRC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 카자흐스탄 법무부 산하의 지식재산권보호위원회)가 담당한다.
- 카자흐스탄 법령에 의하면 IP는 지적창작물의 결과의 대한 개인 및 회사의 독점권, 회사의 개인적인 수단, 개인 및 회사의 생산품, 수행된 작업물, 서비스 모두 포함한다.
 - 현지 시장에 위조 상품이 많아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 카자흐스탄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자 우대 원칙에 따라 IPRC에 가능한 빨리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 중앙아시아 국가 중 출원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 및 국제협약

구분	명칭	발효 및 가입
카자흐스탄 국내법	저작권 및 관련법	1999.06.10
	상표권, 서비스 마크, 원산지 표기 관련법	1999.07.26
	특허법	1999.07.16
국제협약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199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991.12.25
	마드리드 협약	1991.12.25
	마드리드 의정서	2000.12.08
	특허협력조약(PCT)	1991.12.25

가. 상표권

카자흐스탄에서 상표권 출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카자흐스탄 지식재산권보호위원회(IPRC)를 통한 출원 방법(개별국 출원), 두 번째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을 통한 출원 방법이다.

1) 카자흐스탄 지식재산권보호위원회(IPRC)를 통한 상표출원

- 카자흐스탄 상표권은 상표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고 10년마다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가능하다. 갱신 유예기간은 6개월이다.
- 국내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표의 조건은 문자, 숫자, 도형, 말, 3차원 형상, 기타 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 과 색채의 결합이며,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식별 가능한 것으로 한다.(상표법 제5조)

2)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마드리드 시스템은 두 조약,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된다.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적재산기구)³¹⁾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며, 국제상표등록 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 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된 지 8년 후 파리협약 제 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다.
 -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 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로, 1989년 6월에 채택, 199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은 자국에 등록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에서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세계 각국에서 등록 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마드리드 협정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카자흐스탄은 마드리드 의정서 및 협정에 공동 가입했으며,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이 주로 사용된다.

31)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한 파리협약(1883), 저작권 문제를 위한 베른조약(1886), 특허협력조약 및 특허법조약 등을 관리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세계 지식기구 설립조약에 따라 설립되어 1974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 비교

구분	마드리드 협정	마드리드 의정서
성격	국제 상표 조약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어로 출원, 방식 심사(무심사주의)만 하고 등록 - 상표등록만을 기초로 상표출원 가능 - 무심사주의 국가의 경우 우선권 주장 기간(6개월)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나, 심사주의 국가에는 불리함 - 거절 통지 기간: 1년 -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본국 관청의 기초등록이 무효, 취소, 포기, 존속기간 경과 등으로 실효되면 국제등록도 실효되며, 그 결과 본국에서 기초등록이 실효되면 지정국 전체에서 상실 - 개별 수수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또는 불어로 출원, 실체심사(심사주의) 후 등록 - 마드리드 협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표의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약 - 거절 통지 기간: 1년 6개월 - 국내의 상표등록뿐만 아니라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서도 국제출원 가능 - 제출원이 소멸한 경우에도 각국에서 출원인이 국내출원으로 전환 가능 - 개별 수수료 있음

출처: 특허청(www.kipo.go.kr)

나. 특허권

카자흐스탄에 특허권을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카자흐스탄 국내 특허로 출원하는 방법, 두 번째는 국제특허조약인 PCT 출원을 통한 특허 출원 후 카자흐스탄을 지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유라시아 특허조약(EAPO)에 의한 특허출원이다.

1) 카자흐스탄 국내 직접 특허출원

- 특허권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특허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발생된다.
- 특허출원서와 기타 문서는 카자흐어, 러시아어, 또는 기타 언어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언어 시 카자흐어, 또는 러시아어 번역이 요구된다.
 - 이 경우 번역은 출원서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에 번역본이 제출되지 않을 시 출원서 또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2개월 이상의 연장은 불가하다.
- 신청인의 청원 및 허가, 또는 기소기관 및 법원의 요청 시를 제외하고 권한 있는 기관 및 특허청은 출원서에 관한 정보가 게시되기 전까지 제3자에게 출원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신청인의 청원 및 허가 또는 기소기관 및 법원의 요청 시를 제외하고 권한 있는 기관 및 특허청은 출원서에 관한 정보가 게시되기 전까지 제3자에게 출원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국제특허조약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 한국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지정 대상국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 대상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유라시아 특허협정(EAPO)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 CIS 각 나라마다 효력을 미치기 위해 출원서를 9개 공화국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약되었으며, 유라시아 특허협정(EAPO)을 통해 카자흐스탄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 현재 유라시아 특허협정에 가입된 나라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이다.
- 협정국 간에는 변리사 선임 없이 개인 출원이 가능하다. 특허수수료는 내국인 대우를 하며 내국인은 내국 화폐, 외국인은 미국 달러화를 사용한다. 공식 언어는 러시아어이며, 직접 출원시 영어 또는 러시아어, 회원국 경우 시에는 회원국 언어 또는 러시아어를 사용해야 한다.
- 러시아에 특허청을 두며 가입 국가는 각국의 주권에 따라 자국의 발명보호기구에 일부 설치한다.
- 우선권 제도는 특허청에 최초 출원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조약우선권과 국내우선권이 있다. 조약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 출원이 가능하며, 국내우선권은 보정서의 요지 변경으로 채택할 수 없을 경우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별도로 출원하면 보정서 접수일을 우선일로 결정한다.
- 회원국가를 경유하여 제출한 출원은 회원국가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유라시아 특허청에서 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유라시아 특허청에 직접출원하는 경우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유라시아 특허권 존속 기간은 개별국 출원과 마찬가지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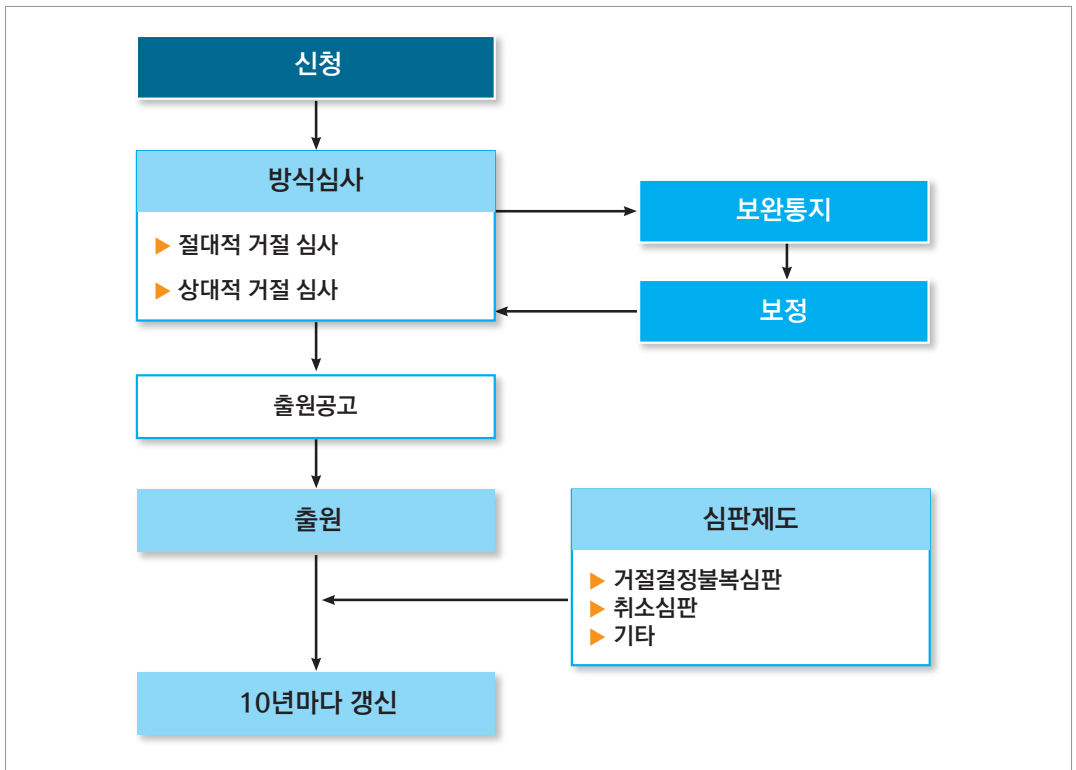
부록

02 | 상표권 및 특허권의 출원 방법

가. 상표권

1) 카자흐스탄 지식재산권보호위원회(IPRC)를 통한 출원 절차(개별국 출원)

» 국내 상표출원 절차



» 정규상표 출원시 구비서류

- ① 출원서: 출원인의 주소, 성명, 상품 및 서비스 기재
 - ② 상표 견본
 - ③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증명서
 - ④ 위임장: 공증 인증이 필요하지 않음
- * 단체 상표의 경우: 해당 단체의 정관 필요

① 상표 출원 전 확인

-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문자, 소리, 입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판매하려는 상품의 상표로 출원되어 있지 않으면 출원이 가능하다.

② 신청서 접수

- 신청서에는 출원자의 정보, 상표에 대한 명확한 표현 및 재화와 서비스 목록 등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한다.

③ 절대적 거절 이유/상대적 거절 이유 심사

- 신청서가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필요서류 간의 유효성을 확인하며, 예비심사 통지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자가 알 수 있다.
- 절대적 거절 이유는 출원 상표의 식별력 여부, 상대적 거절 이유는 선출원 및 등록된 유사상표의 존재 여부에 의해 심사되며, 신청일로부터 9개월 이내 완료된다.
- 출원상표에 지정상품에 관련하여 식별력이 부족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단어에 대해 권리 불요구 선언을 요청, 출원상표와 동일하며 유사한 출원인의 선출원 및 등록상표가 있을 경우 이들 상표를 연합상표로 보정할 것을 요청, 상표의 의미/음역을 요청하는 3가지의 의견제출 통지서가 나온다.

④ 보완 요청

- 의견제출 통지서가 나올 경우 출원인은 3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 제출 기간은 1개월씩 총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판단 하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⑤ 출원 공고

- 심사 기간 중 절대적 및 상대적 거절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상표출원은 공보에 2개월간 공고된다.

⑥ 이의신청

- 공식적인 이의신청 제도는 없으며,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비공식적으로 심사관이 발행한 의견제출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만 가능하다.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⑦ 등록

- 상표가 등록 결정을 받게 되면 등록료를 등록 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부해야 상표가 등록되며 등록 증명서가 발급된다.
- 상표는 10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 한 번에 10년씩 갱신 할 수 있다.

⑧ 심판제도

- 거절결정 불복심판
 - 출원상표가 거절되면 출원인은 거절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복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 취소심판
 - 등록일로부터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불사용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은 불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취소 심결까지 소요기간은 약 4~8개월이다.
- 기타 취소사유
 - 조약 당사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그 대리인에 의해 등록된 상표, 절대 및 상대적 거절 이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이들 상표에 대해 등록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절대 및 상대적 거절 이유가 있음에도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도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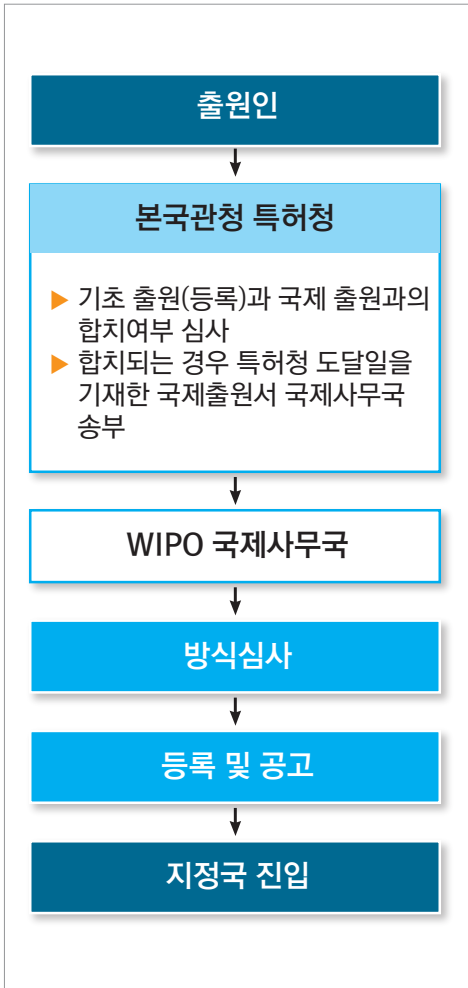
- 양도 대상은 출원상표 및 등록상표이며, 필요서류는 양도증, 양수인 및 양도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5~6개월이 소요된다.

» 상표출원에 필요한 대략적인 소요비용

상표출원 종류	비용
신청서 접수 및 검사비용(같은 class 3개까지)	175\$
3개 class 초과일 경우 각 추가요금	30\$
상표등록과 해당되는 정보 공표	75\$
등록결정 후 등록증명서 발급	15\$

2)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절차

»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 절차



출처: 특허청(www.kipo.go.kr)

① 상표출원 전 확인

-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출원 대상에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표장은 기초출원(등록)의 표장과 엄격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 또한 국제출원에서 지정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업은 기초 출원(등록)의 지정 상품과 서비스의 동일, 또는 그 범위 이내여야 한다.
 - 예상 수수료는 WIPO 국제사무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 www.wipo.int/madrid/en/fees/calculator.jsp

- 국제출원의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하나이며, 한국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에는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

② 국제사무국 출원

- 국제출원은 반드시 한국 특허청(본국관청)을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접수일은 한국 특허청이 실제로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이 된다. 또한,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한국 특허청에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접수한 경우에는 한국 특허청이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로서 인정된다.

③ 국제심사(방식심사) 및 등록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이 의정서에서 정한 형식적인 상표권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 해당 국제출원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한다.
 -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과 동시에 당해 국제등록 사실을 지정국 관청에 통지함과 동시에 한국 특허청(본국관청)에 통지하고 출원인에게는 국제 등록 증명서를 송부한다.
-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추가 10년의 갱신이 가능하며, 국제사무국에 한 번의 갱신 신청으로 복수의 지정국에 대하여 모두 갱신이 가능하다.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④ 지정국 관청의 심사(국내 단계)

- 지정국 관청은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제출원의 보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거절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WIPO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2개월, 혹은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 이유를 통지함으로써 상표 보호를 거절할 수 있다.
 - 이때 지정국 관청으로부터 송부 받는 거절통지서에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각 체약국 관청이 선택한 언어가 사용된다(한국 특허청의 경우는 영어이다).

나. 특허권

1) 카자흐스탄 국내 직접 출원 절차



- 신청일로부터 약 1년의 조사기간을 거친 후 정보공개를 하고 6개월 동안 신규성 유예기간을 가진다. 후에 구비서류 첨부 여부 심사와 실체심사가 이루어지며 특허의 실질적 심사기간은 약 2년이다. 특허가 허여되면 등록료가 결정되며 3개월 이내로 납부해야 한다.

» 정규 특허 출원 시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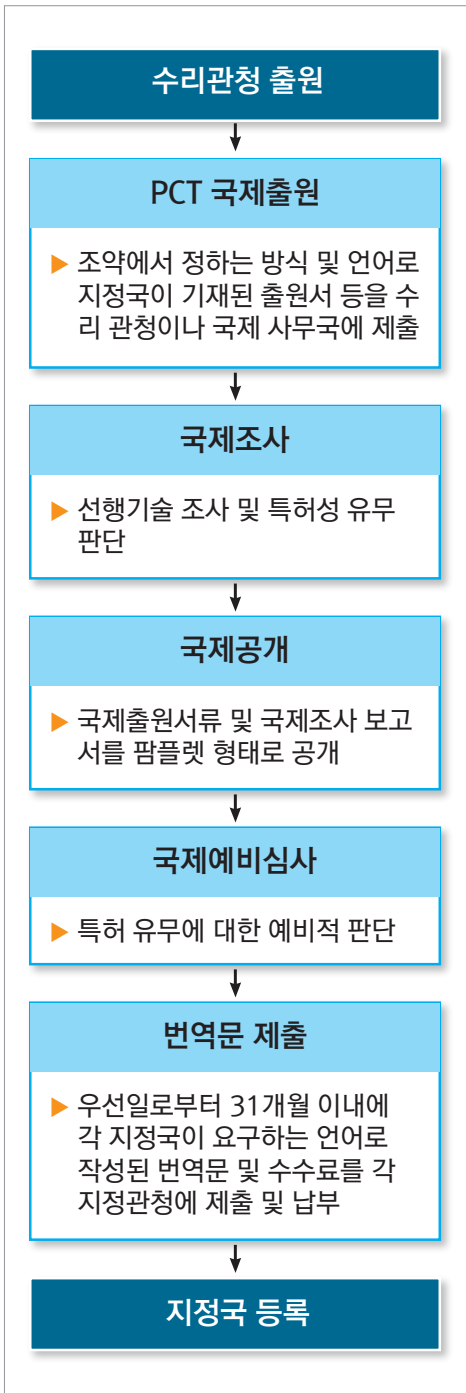
- ① 출원서
- ② 명세서 및クレ임
- ③ 필요한 도면 및 요약
- ④ 위임장
- ⑤ 우선권 증명서

- ① 출원서: 출원인의 명칭, 발명자의 이름, 현지 대리인의 성명, 우선권 주장의 경우에는 그 정보 등을 기재하며 현지 대리인이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명세서 및 클레임: 출원 시에는 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카자흐스탄어, 또는 러시아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필요한 도면 및 요약
- ④ 위임장: 출원인이 서명한다.
- ⑤ 우선권 증명서: 우선권 인증서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2) 국제특허조약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절차

- PCT 특허출원 절차를 따라 지정국 출원을 하는 절차는,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국내 특허를 출원한 다음 PCT 국제 특허 절차에 따라 지정국 내 특허 절차를 밟는다.

» PCT 특허출원 절차



- ① 수리관청인 한국 특허청을 통해 국내특허 출원 후 우선권 주장 시 12개월 이내에 한국 특허청에 PCT 출원서를 제출한다.
- ② 출원서 작성시
 -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개별 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은 필요 없다.
- ③ 국제조사(필수)
 - 국제조사기관 ISA은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 여부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는 국제조사를 실행한다. 발간된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는 출원인 및 WIPO에 배부된다.
- ④ 국제공개
 -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국제출원 서류가 팸플릿 형태로 국제사무국 공보에 공개된다.
- ⑤ 국제예비심사(선택)
 - 국제예비심사기관 IPEA는 출원된 발명의 실제심사(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를 실시하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출원인과 WIPO에 송부한다.
 - 특허 유무에 대한 예비적 판단을 통해 지정국 내에 진입 여부를 결정하여 특허출원의 신중을 기할 수 있다.

출처: 특허청(www.kipo.go.kr)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⑥ 번역문 제출

-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아래 서류를 카자흐어, 또는 러시아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 PCT 출원 국내 단계 진입을 위한 서류

- 명세서, 청구 범위, 요약 및 도면의 설명
- 19조 보정이 된 경우 번역문
- 34조 보정이 된 경우 번역문

⑦ 지정국 등록

- 이후 카자흐스탄을 지정하여 지정국 내로 진입하는데, 만약 신청인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이 필요하다.

3) 유라시아 특허협정(EAPO)에 의한 출원 절차

» EAPO 출원 시 구비서류

- ① 신청서
- ② 명세서
- ③ 특허 청구 범위
- ④ 도면 및 발명의 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
- ⑤ 보고서
- ⑥ 출원수수료 납부증명서

① 신청서: 발명자 및 출원인 정보

② 명세서: 발명의 명칭, 당해 기술분야 선행기술, 발명의 목적, 발명의 요지의 특징, 실시 예를 전문가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③ 특허 청구 범위: 발명의 기술적 요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며, 단항 또는 다항으로 기재 가능

④ 도면 및 발명의 요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

⑤ 보고서

⑥ 출원수수료 납부증명서

① 출원 전 확인

- 유라시아 특허협정(EAPO)을 통한 특허 취득 시 유라시아 전역에서 특허 효력이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특허출원 절차를 일원화하여 비용 및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 EAPO의 특허 판단 기준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성, 특허 대상이다. 이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

② 출원

- 회원국가 경유일 경우 지정기간 내에 구비서류 첨부심사를 한 후에 유라시아 특허청에 출원서류가 이관되며, 출원인이 회원국가에 주소지가 없을 경우 회원국가 특허청, 또는 유라시아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③ 공개

-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심사보고서와 함께 공개되며, 출원인의 사정으로 조기 공개가 가능하다.
- 공개 내용으로는 발명과 설명, 주소 및 국적, 출원인, 우선권 주장일자(필요시), 국제분류, 대리인 성명, 주소 및 국적, 보고서, 특허 청구 범위, 도면 및 기타서류, 심사평가서이며, 러시아어로 공개되고, 러시아어가 아닌 경우 번역하여 공개된다.

④ 심사

- 심사는 구비서류 첨부 여부 심사와 실체심사로 이루어지며, 출원서와 심사보고서가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 구비서류 첨부 여부 심사는 출원서 구비서류 확인, 발명의 대상 여부, 보정서 제출 시 요지 변경 여부, 우선권 주장이 있을 시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수수료, 기타 방식에 관한 사항이 기준이 된다. 실체심사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성, 특허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 유라시아 특허는 특허사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전 회원국가 지역에 효력이 발생된다.

⑤ 이의신청

- 거절 사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거절사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3인 합의제에 의해 심사된다.

⑥ 변경 출원

- 유라시아 특허출원에서 회원국가의 특허출원서로 변경 출원이 가능하며, 거절사정 통지서, 또는 이의신청에 의한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하면 된다.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위생
제도

Part V
상표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가. 라면 사례

- A사 라면은 러시아 공장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나 카자흐스탄 판매 딜러가 상표등록을 개인명으로 A라면과 거의 유사하게 등록하여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1심에서는 A사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딜러가 최초로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명되어 A사가 패소하였으며, 2016년 최종 3심에서 A사가 승리한 사례가 있다.

나. Moskovskaya, Stolichnay 보드카 사례

- Maximus LLP는 보드카를 생산하는 증류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Moskovskaya, Stolichnay 보드카의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상표 취소를 신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여 1년간의 준비와 4개월간의 소송 끝에 승소한 사례이다.

다. 상표권 미연장 사례

- 상표권은 상표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고 10년마다 연장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A사는 갱신 유예기간이 6개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연장을 방치하였다. B업체가 이를 알고 갱신 유예기간이 지난 뒤 유사상표를 등록하여 A사는 상표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상표권 유효기간 만료 시 연장 여부를 알려주는 신뢰성 있는 변리사 선정이 중요하다. 만기 연장은 대부분 단순 연장에 해당하므로 수입료가 무료인 경우도 있다.

| 부록 |

01. 관련 기관 및 협회

02. 박람회 정보

03. 현지 전문가 인터뷰 리스트

04. 참고문헌 및 사이트

Kazakhstan

Part VI

부록

01 | 관련 기관 및 협회

가. 국내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비고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농업관련 정책 업무
외교부	www.mofa.go.kr	외교관련 정책 업무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산업, 무역 관련 정책 업무
통계청	www.kostat.go.kr	국가 통계 업무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 세율 정보 표시 및 업무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www.at.or.kr	농식품 유통 및 수출 지원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	www.kotra.or.kr	세계 무역관련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식품, 의약품의 안전성 업무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동식물의 검역 업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농산물의 품질 관리 및 개량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무역 관련 업무 및 정보 제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농업 관련 각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경제, 무역 관련 각종 연구
aT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	농수산물 수출 관련 정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FTA 종합 포털	www.fta.go.kr	FTA 관련 정보 제공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	www.unipass.customs.go.kr	해외 품목 분류, 관세 정보 제공
통합무역정보서비스 Trade NAVI	www.tradenavi.or.kr	각종 무역관련 정보 제공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 FTA 콜센터 1380	www.okfta.kita.net	FTA, 무역관련 정보 제공, 애로사항상담
GEP 글로벌 전시포털	www.gep.or.kr	세계 전시회 정보 제공
KOTRA 해외시장뉴스	www.news.kotra.or.kr	국제 시장 정보 제공

나. 카자흐스탄 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비고
카자흐스탄 정부	www.government.kz	정부 홈페이지, 카자흐스탄 각종 정보 제공
관세청	www.keden.kz	통관 및 관세 정보 제공
통계청	www.stat.gov.kz	통계 정보 제공
농업부	www.mgov.kz/en	농업 관련 정보 제공
외무부	www.mfa.gov.kz	외교관련 정책 제공
행정부	www.mvd.gov.kz	국가 행정관련 정보 제공
중앙은행	www.nationalbank.kz	경제 및 투자 등의 정보 제공
투자진흥공사	www.kazninvest.kz/en	경제 및 투자 등의 정보 제공
상공회의소	www.cci.kz	기업 간 네트워크 및 정보 제공
표준인증규격위원회	www.memst.kz	농산물 및 식품을 포함 다양한 인증 품목의 규격 개발 및 규정에 관한 정보 제공
한인회	www.cistoday.com	카자흐스탄 한인 정보 제공 사이트

다. 범국가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비고
UN 무역통계자료 UN Comtrade Database	www.comtrade.un.org	UN(국제연합)이 제공하는 무역통계 정보 사이트
국제무역센터 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www.intracen.org	무역 진흥을 통한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는 무역개발솔루션 제공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www.fao.org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능력 증진,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ww.imf.org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자원개발에 기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ww.oecd.org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각국의 경제사회발전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및 세계무역 확대 촉진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www.wto.org	국제무역확대, 회원국 간의 통상 분쟁 해결 및 교역/통상에 관한 연구 실시
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www.worldbank.org	국제 무역 확대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 및 기술 원조 실시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www.ifoam.bio	유기농업 운동을 선도·통합·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유기농산물 인증 제도를 운용 중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ww.wipo.int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조약의 제정을 추진하는 기구
유라시아경제연합 EEU (Eurasian Economic Union)	www.eurasiancommission.org	카자흐스탄,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의 5개국이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한 경제공동체. 공동체 내에서 상품, 자본, 노동,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함
유라시아특허기구 EAPO (Eurasian Patent Organization)	www.eapo.org	유라시아 국가 8개국이 설립한 공동 특허기구로 특허 출원에 관련된 업무를 실시함

요약

Part I
국가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통관
제도

Part IV
식품위생
제도

Part V
상품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02 | 박람회 정보

□ 2017 국제 농업 박람회(AGRITEK : 2017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Agriculture)

	개최기간	2017.03(3일간)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아스타나
	산업분야	농업, 임업, 축산
	홈페이지	www.agriastana.kz/index.php?lang=en

□ 2017 아스타나 식품전시회(InterFood Astana 2017)

	개최기간	2017.05(3일간)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아스타나
	산업분야	식품, 음료
	홈페이지	www.interfoodastana.kz/en/

□ 2017 아스타나 엑스포(2017 ASTANA EXPO)

	개최기간	2017.06(3개월간)
	개최주기	금년
	개최도시	아스타나
	산업분야	미래 에너지
	홈페이지	www.expo2017astana.com/en/

□ 2017 카자흐스탄 쉴켄트 농업 전시회(2017 AgroProm Shymkent)

	개최기간	2017.09(2일간)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아스타나
	산업분야	식품, 음료, 농업, 임업, 축산
	홈페이지	www.agropromexpo.kz/en/

□ 2017 카자흐스탄 알마티 식품박람회(World Food Kazakhstan 2017)

	개최기간	2017.11(3일간)
	개최주기	매년
	개최도시	알마티
	산업분야	식품, 음료, 농업, 임업, 축산
	홈페이지	www.worldfood.kz/en/

03 | 현지 전문가 인터뷰 리스트

□ 조사목적

- 카자흐스탄 식품시장 현황 파악과 주요 수출품목, 현지 식품 수출입 제도, 상표권 제도 등의 현지 정보 수집과 의견 수렴을 통하여 향후 수출 및 판매 전략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실시

□ 조사내용

- 농식품 시장 현황, 식품 트렌드, 유통 및 소비동향
- 한국산 유통동향 및 경쟁국 동향 파악
- 식품 수입 절차, 통관·검역·수입 식품위생제도, 수출입 동향
- 식품과 관련된 상표권, 지적 재산권, 특허

□ 조사대상

» 현지 전문가 인터뷰 리스트

NO	구분	회사명 / 직위	소개
1	수입	S사 / 대표	한국의 N사와 C사의 제품을 수입하며,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 주로 공급
2		D사 / 대표	한국식품 수입뿐만 아니라 한국음식 점등 운영하며, 대형마트 부터 소매 점포까지 공급
3		K사 / 대표	대기업의 한국식품을 주로 수입하는 식품 전문 수입업체
4		K사 / 대표	카자흐스탄 내 유일한 태국식품 수입업체
5	통관	S사 / 대표	통관업체
6	상표	L사 / 변리사	상표권 및 특허 컨설팅 업체, CIS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전개
7	유통	C사 / 부장	2016년 설립된 다국적 대형유통업체
8		G사 / 디렉터	고급 대형유통업체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 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가. 참고문헌

- TCR대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농산물 가공수출사업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 CIS 대형유통망 현황 및 진출방안, KOTRA, 2013
- Retailing in Kazakhstan,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7
- Grocery Retailers in Kazakhstan,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7
- Packaged Food in Kazakhstan,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7
- Other Dairy in Kazakhstan,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6
- Income and Expenditure : Kazakhstan,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6
- FIDI Customs Guide-Kazakhstan, 2016
-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Representative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The Development Economics of Landlockedness: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Costs of Being Landlocked, UN-OHRLLS, 2013
-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USDA GAIN report, 2015
- The 2016 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 AT Kearney, 2016
- Kazakhstan:Legendary Almaty Bazaar Going Upmarket, Eurasianet, 2014
- Doing Business kazakhstan, world bank group, 2015
- Kazakhstan Food & Drink Report, BMI Research, 2017
- Customs Union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s, 2013
- Modernizing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o Facilitate Trade in Agricultural and Food Products, Asian Development Bank, 2013
- Customs Union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Safety, 2012
- Kazakhstan Customs guide, Deloitte, 2016
- Kazakhsta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USTR, 2015
- Regulatory and procedural barriers to the Kazakhstan, ITC, UN, 2014
- Food Security in the Kazakhstan in the conditions of the customs union ,USDA GAIN report, 2016
- National food safety system of the Kazakhstan, CCEURO SESSION, 2014
- import and certification, SCHNEIDER GROUP, 2017
- Требова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пищевых добавок, ароматизаторов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вспомогательных средств, Т Р Т С 029/2012
- Kazakhstan's Food Market: Conditions, Problems and Suggested Solutions,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MCSER Publishing, 2015

나. 참고사이트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 aT KATI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특허청(www.kipo.go.kr)
- (주)월드베스트로지스틱스(www.worldbl.co.kr)
- 카자흐스탄 통계청(www.stat.gov.kz)
-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CIS news service(www.ca-news.org)
- Economy ranking kazakhstan(www.ranking.kz)
- Euromonitor International(www.portal.euromonitor.com)
- Tengri News(www.tengrinew.kz)
- Forbes Kazakhstan(www.forbes.kz)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ww.wipo.int)
- SATU(www.satu.kz)
- Fine Food(www.finefood.kz)
- OLX(www.OLX.kz)
- METRO Cash&Carry(www.metro.com.kz)
- Esentai Gourmet(www.esentai-gourmet.kz)
- CIA World Factbook, 2016(www.cia.gov)
- USDA report (gain.fas.usda.gov)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www.eiu.com)
- Global Trade Atlas(www.gtis.com)
- World Bank(www.worldbank.org)
- The Ministry of Agriculture of Kazakhstan(www.mgov.kz)

요약

Part I
국가 일반
현황

Part II
농식품시장
동향

Part III
수입 통관
제도

Part IV
식품 위생
제도

Part V
상표 출원
및 특허권
규정

부록



2017 신흥시장 클로즈업 카자흐스탄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 (사)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발행일 2017.05

발행처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61-931-1114 <http://www.at.or.kr>

자료문의 aT 농수산물식품기업지원센터 수출정보부
02-6300-1678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특성을 모두 대변한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

카자흐스탄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기회

국가 일반 현황

농식품 시장 동향

수입 통관 제도

식품 위생 제도

상표 출원 및 특허 규정

